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740-01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 - 대안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 Patent Examination Period reflecting
applicant's demand and Analysis of the Effects - Research on alternatives

연구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범태



제 출 문

귀 위원회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본 보고서를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히 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대안 마련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연구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특허심사정책포럼위원: 오준병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석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변리사)

김성규 (특허법인 화우 대표변리사)

김지원 (녹십자 부장/변리사)

박근호 (SK텔레콤 기술전략팀 Manager)

조세훈 (한화정밀기계 부장)

김경수 (코오롱인더스트리 팀장)

정한순 (아모레퍼시픽 특허팀 팀장/변리사)

이성원 (Welsscare(웰스케어) 대표)

곽철수 (KMW(케이엠더블유) 부장)

김영록 (주성엔지니어링/수석부장)

박정훈 (마크로젠 임상진단사업부문 이사)

박현배 (VUNO(뷰노))

설문조사업체: ㈜리서치뱅크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19
제2장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수요자별 인식	21
제1절 학계의 인식	21
1. 법학적 관점의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비용에 대한 고찰	21
2. 우선심사청구대상	22
3. 심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23
4.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8
5. 심사처리 기간	32
6. 우선심사 비율	33
제2절 변리사적 관점의 인식	35
1. 변리사 I : 특허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의견 및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	35
2. 변리사 II : 특허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의견 및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	38
제3절 산업별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인식	43
1-1 바이오산업: 대기업(녹십자)	43
1-2 바이오산업: 중소기업(웰스케어)	48
2-1 통신, 반도체 산업: 대기업(SK텔레콤)	52
2-2 통신, 반도체 산업: 중소기업 심사처리기간과 중소중견 기업 제품 개발 및 판매 관계	54
3-1 기계 산업: 대기업(한화정밀기계)	58
3-2 기계 산업: 중소기업((주)주성엔지니어링)	61
4-1 화공 산업: 대기업(아모레퍼시픽)	67
4-2 화공 산업: 중소기업(마크로젠)	68

제3장 심사프로세스에 대한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71
제1절 기업일반 현황	71
1. 기업유형	71
2. 응답자유형	72
3. 업 종	73
4. 산업별 특허출원현황	73
5. 기업유형별 특허출원현황	74
제2절 특허심사과정 만족도	75
1. 심사대기기간	75
2. 심사결과의 정확도	77
3. 심사관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	79
4. 출원청구 수수료	81
제3절 특허심사품질	84
1. 적정특허심사 대기기간	84
2. 심사 중 불만족 요소	86
3. 특허 심사업무량에 대한 심사대기기간 적정성	88
4. 빠른 심사가 필요한 이유	90
5.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지불의사	92
6. 심사대기기간 단축 필요성	95
7. 특허권 행사의 어려움	97

Contents 목차



제4장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수요자 설문 조사 분석	101
1. 우선심사를 이용한 경험	101
2.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	102
3.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	106
4. 기대하는 우선심사 심사착수 기간	108
5. 빠른 심사처리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110
6.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2
7. 우선심사 제도의 필요성	115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우선심사에 대한 의견	117
9. 전체 심사 청구 우선심사 신청 비율	118
10. 우선심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용 가능한 방안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1
부록 1 설문조사표	125
부록 2 특허청 출원인 설문조사 통계표	134

Table Index 표 목차



[표 1-1] 연간 특허심사처리기간	38
[표 1-2] 연간 우선심사 신청건수	41
[표 3-1] 기업유형별, 특허출원건수별 현황	74

Picture Index 그림 목차



[그림 3-1] 기업유형별 분포	71
[그림 3-2] 응답자유형별 분포	72
[그림 3-3] 업종별 분포	73
[그림 3-4] 업종별, 특허출원건수별 현황	73
[그림 3-5] 심사대기기간 만족도	75
[그림 3-6] 산업유형별 심사대기기간 만족도	76
[그림 3-7] 심사결과 정확성 만족도	77
[그림 3-7] 심사결과 정확성 만족도	78
[그림 3-9] 고객소통 만족도	79
[그림 3-10] 산업유형별 고객소통 만족도	80
[그림 3-11] 출원청구 수수료 만족도	81
[그림 3-12] 산업유형별 출원청구 수수료 만족도	82
[그림 3-13] 적정 심사대기기간	84
[그림 3-14] 기업유형별 적정 심사대기기간	85
[그림 3-15] 심사과정 불만족 요소	86
[그림 3-16] 기업유형별 심사과정 불만족 요소	87
[그림 3-17] 심사품질과 심사업무량의 조화	89
[그림 3-18] 빠른 특허심사의 필요성	90
[그림 3-19] 기업유형별 빠른 특허심사의 필요성	91
[그림 3-20] 일반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에 대한 지불가능 금액	92
[그림 3-21] 기업유형별 일반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에 대한 지불가능 금액	94
[그림 3-22] 우선심사와 일반심사대기기간 단축의 대체성	95
[그림 3-23] 기업유형별 우선심사와 일반심사대기기간 단축의 대체성	96
[그림 3-24]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	97
[그림 3-25] 기업유형별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	98
[그림 4-1] 우선심사제도 이용 여부	101
[그림 4-2] 우선심사 신청 요건	102
[그림 4-3] 기업유형별 우선심사 신청 요건	103

[그림 4-4] 특허출원건수별 우선심사 신청 요건	105
[그림 4-5]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	106
[그림 4-6] 기업유형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	107
[그림 4-7] 기대하는 우선심사 착수기간	108
[그림 4-8] 기업유형별 기대하는 우선심사 착수기간	109
[그림 4-9] 우선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110
[그림 4-10] 기업유형별 우선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	111
[그림 4-11]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2
[그림 4-12] 기업유형별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4
[그림 4-13]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115
[그림 4-14] 산업별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116
[그림 4-15]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우선심사	117
[그림 4-16] 적정 우선심사 신청비율	118
[그림 4-17] 우선심사 신청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용 가능한 정책방안	119

요약문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 - 대안 마련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 심사 청구량이 최근 견조히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심사품질과 처리 기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허출원심사기간이 2017년 3월부터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출원된 발명에 대한 조속한 권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사 청구량은 증가하고 있음.
 -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출원인이 매년 증가(17.7%, '18)하고 있고 그 비율은 다른 주요 IP선진국*들 보다 매우 높은 현상 속에 일반심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심사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주요국 우선심사 비율:일본 9.7%('16), 유럽 6.0%('16), 미국 3.0%('17)
- 특허청은 2015년 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대로 달성시킨 이후 안정적으로 10개월 대를 유지중이고 외부고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 (한계) 심사처리기간을 특허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출원인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출원인의 규모별, 기술 분야별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제2장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 정책에 대한 수요자별 인식

□ 법학적 관점의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 비율에 대한 고찰

- 적정 심사대기기간이란 독점기간의 크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심사자(특허청), 출원인(권리자) 및 제3자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재산이 적절하게 보호 되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함.

- 제3자의 측면; 특허법은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7년 3월부터 5년-)3년)

- 심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1) 외부 기관의 활용

- 특허심사의 첫 단계는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라고 할 수 있음.

(2) 국제협력 강화

- 공동조사 및 심사에 관한 IP5 파일럿 프로그램(PCT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협력 심사), 특허심사협력조사, 특허심사하이웨이(PPH)

(3) 심사관 증원

□ 경제학적 관점의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 비율에 대한 고찰

- 특허의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발명자들에게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해 준다는 장점 이외에도, 금융 시장 및 생산물 시장에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감소시키고, 경쟁 기업에 대한 전략적 행위를 줄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존재함.

- 심사관의 충분한 보충 없이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심사관들의 업무로드(workload)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심사관의 심사 오류(Type I & II error) 증가 (김이경, 오준병(2017))

- Type I error: 특허를 부여하여야 할 발명에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
- Type II error: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
- 현실적으로 심사관증원이 어려우므로 특허심사 인력의 충원이나 제도적 개선 없이는, 현재의 특허심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우선심사 비율) 우선 심사의 대상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심사관의 보통 심사에 대한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니며, 궁극적으로 특허심사 품질 전반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우선 심사 제도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차별화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

□ 변리사 관점의 인식

- 심사대기기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일반 출원인들의 경우, FA와 최종 심사결정기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심사절차에 대한 표준 안내문을 쉽게 작성하여 출원관련 서류의 송달 시 출원인에게 송부할 필요
- FA 이후 중간심사 처리기간 또한 심사관별로 차이가 있음.
 - 심사관별로 상이한 FA 이후 중간심사기간을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절차상의 대기기간을 줄여 전체적인 심사종결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포지티브(Positive) 심사의 확대
 - 유럽특허청의 경우, 신규사항 추가, 진보성 극복을 위해 심사관이 적극적으로 OA 통지서에 보정 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포지티브 심사는 심사관의 업무 로드를 과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심사관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하도록 포지티브 심사에 의한 보정안 안내 시 적절한 수준의 심사 포인트를 부여함이 바람직함
- 우선심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는 일반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 장기적인 우선심사 계획에 대한 로드맵 구축 필요

- 우선심사 활용이 매우 낮은 조항은 삭제 또는 대체 필요
- 우선심사 허용에 대한 (내부적) 최대 비율 설정

□ 기업인 관점의 인식

○ 빠른 권리화

- 유사기술을 적용한 선도 상품/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회피 기술의 권리화 결정이 빨리 이뤄진다면 상품/서비스 출시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 시장 선점에 큰 도움

○ 변동성이 낮은 심사대기기간

- 출원시 예상 처리기간을 명확히 산정해 변동성 낮은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
- 우선심사의 확대가 일반심사 처리기간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다면 자원 할당의 여유가 적은 부서,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심사단계 및 기간의 가시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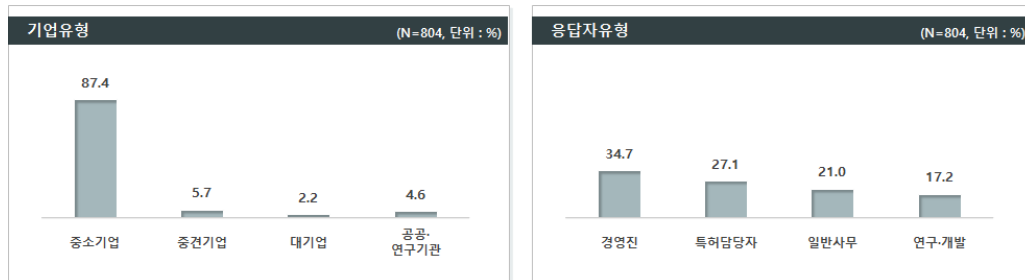
- 사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서, 단순히 지식재산권 확보를 넘어,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정부/지자체 사업수행 등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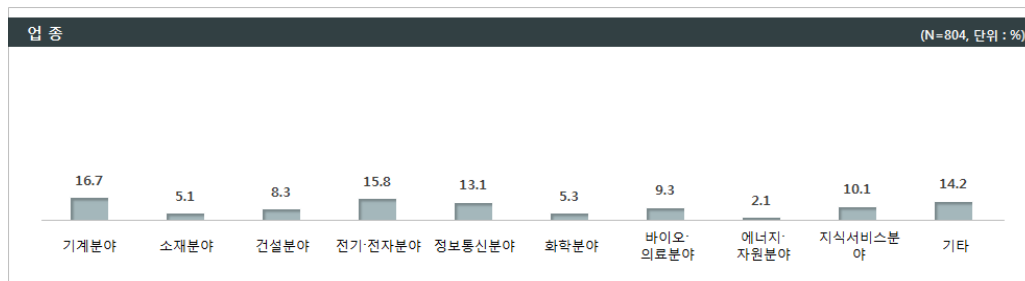
- 데이터 분석/AI 기술을 적용해 심사 단계 및 지연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출원인에게 주기적으로 제공
- 기업규모별, 출원분야별, 우선심사 신청 사유별 등 기준을 수립해 우선심사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

제3장 특허심사 대기기간 및 심사품질 설문조사 분석

□ 기업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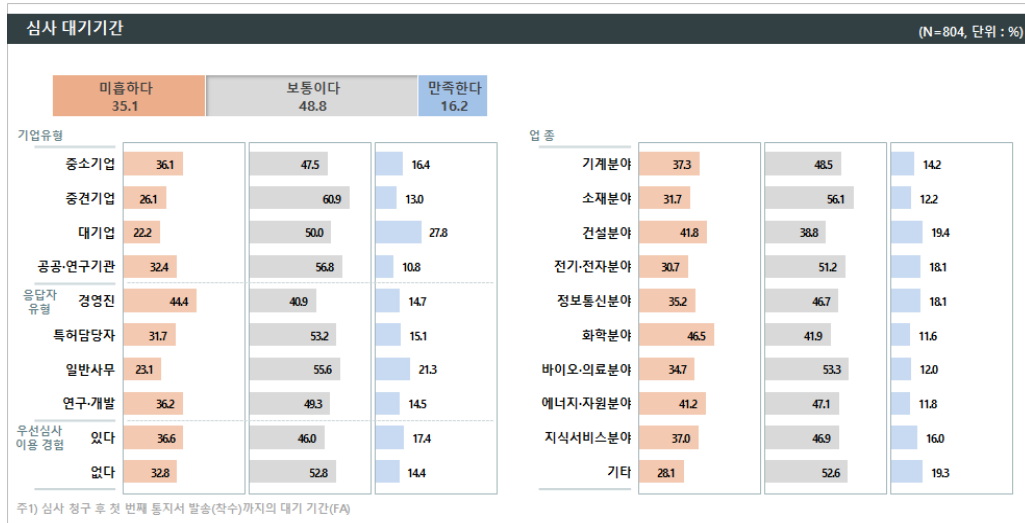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 응답한 804개의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이 703개 기업, 중견기업은 46개 기업, 대기업은 18개 기업, 공공연구기관은 37개의 기관에서 각 각 응답
- 응답자 유형은 기업에서 경영진, 특허담당자, 일반사무자,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특허 심사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식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누어 응답자의 유형에 대담하게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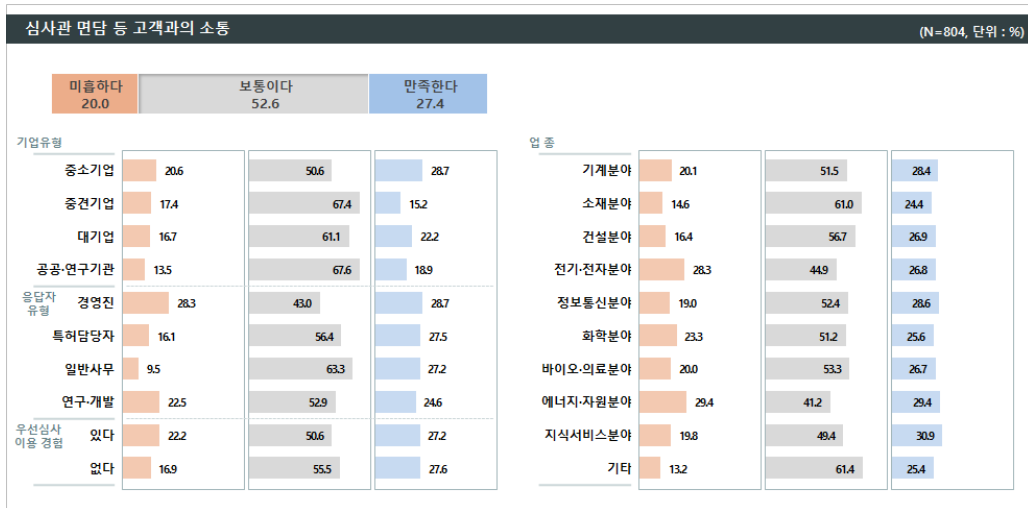


- 업종별 응답 구성을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곳이 기계분야(16.7%, 134개), 전기·전자분야(15.8%, 127개), 정보통신분야(13.1%, 105개), 지식서비스분야(10.1%, 81개), 바이오·의료분야(9.3%, 75개)등의 순으로 응답함.

□ 심사진행 과정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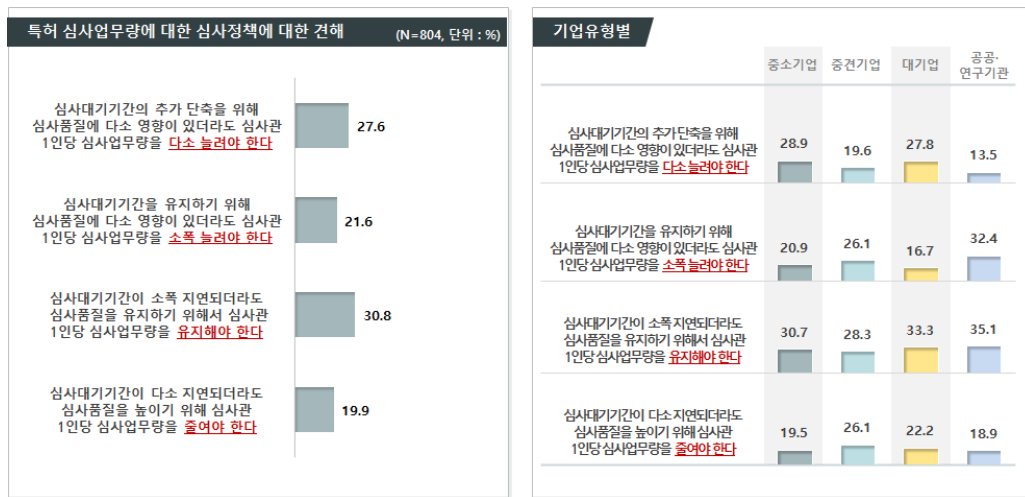
- (심사대기기간)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48.8%(39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미흡하다'가 35.1%(282개), '만족한다'가 16.2%(130개)로 나타남.
- (심사결과의 정확도)'만족한다'는 의견이 32.3%로 '미흡하다' 9.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까지 합할 경우 90%가 넘는 90.9%로서 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중소기업’이 34.6%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견기업이 ‘미흡하다’의 응답률이 17.4%로서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사관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27.4%로 ‘미흡하다’ 2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까지 고려할 경우 80%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8.7%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도 20.6%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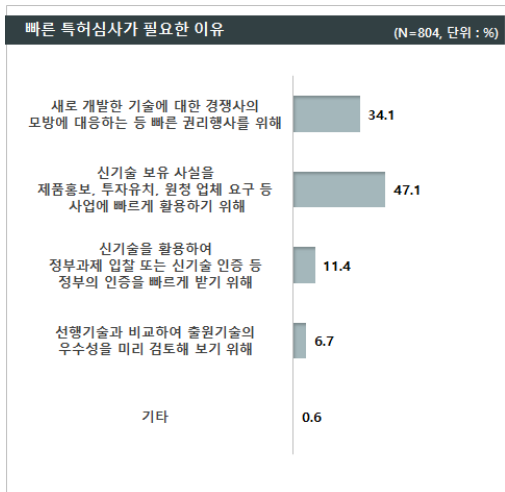
- 산업유형별로는 지식서비스분야가 가장 높은 만족도(30.9%)를 보임.
- (출원·청구료 등 수수료) ‘만족한다’는 의견이 28.2%로 ‘미흡하다’ 1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의 57.5%까지 합할 경우 85.7%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9.2%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미흡하다’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기업유형은 대기업(16.7%)이었음.

□ 특허심사 정책과 심사대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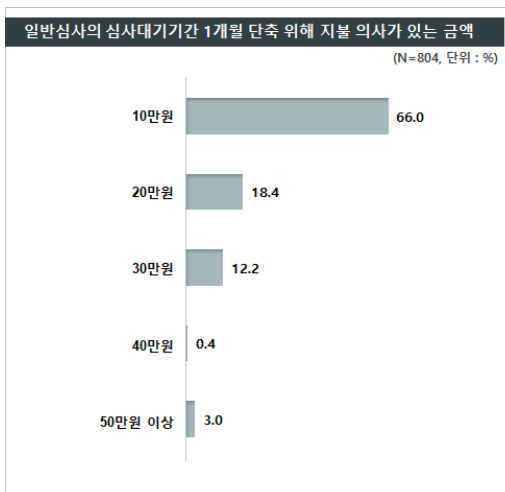
- (특히 심사업무량에 대한 심사정책)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사관 업무를 유지 및 줄여야 한다는 두 의견의 합은 50.7%로 나타남.
- 심사를 청구한 실질적인 수요자들도 이제는 심사기간보다는 심사품질의 유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유형별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해서 심사업무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심사품질 유지를 위해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빠른 특허심사가 필요한 이유)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 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라는 의견이 34.1%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기업유형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32.7	47.8	50.0	35.1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	49.4	26.1	22.2	43.2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과제 입찰 또는 신기술 인증 등 정부의 인증을 빠르게 받기 위해	11.9	6.5	5.6	10.8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기술의 우수성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	5.5	17.4	16.7	10.8
기타	0.4	2.2	5.6	



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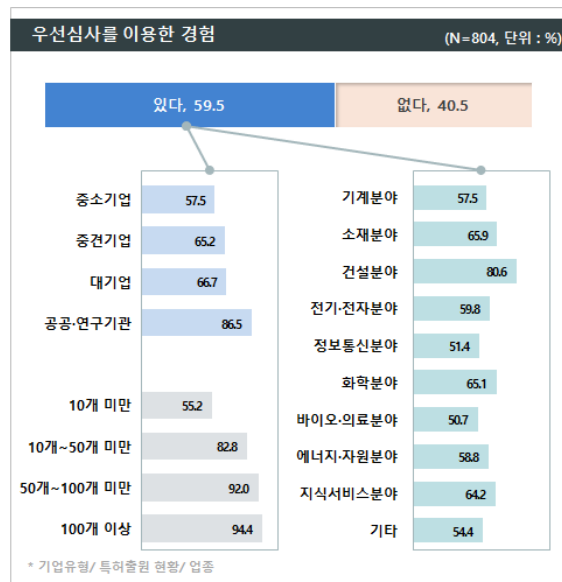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10만원	65.6	69.6	66.7	70.3
20만원	18.1	21.7	22.2	18.9
30만원	12.9	8.7	11.1	2.7
40만원	0.3			2.7
50만원 이상	3.1			5.4

- 첫 번째 응답은 결국 기업체의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이익증진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의 사유도 지식재산권의 조속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조속한 심사처리의 프로세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를 보면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 위해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10만원'이라는 의견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만원'이 18.4%, '30만원'이 12.2%으로서 가장 적게 제시한 금액순으로 나타남.
- 심사기간 1개월 단축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즉, 현 심사기간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요인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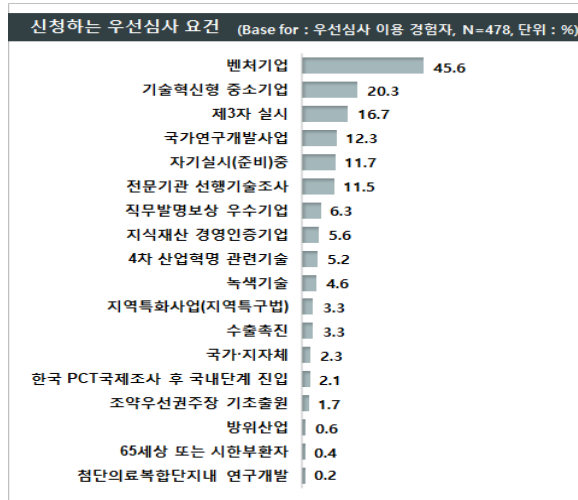
제4장 우선심사 정책에 대한 수요자 설문조사

□ 우선심사를 이용한 경험



- 우선심사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는 응답이 59.5%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출원 현황별로 살펴보면 '100개 이상'에서 94.4%, 업종별로는 '건설분야'에서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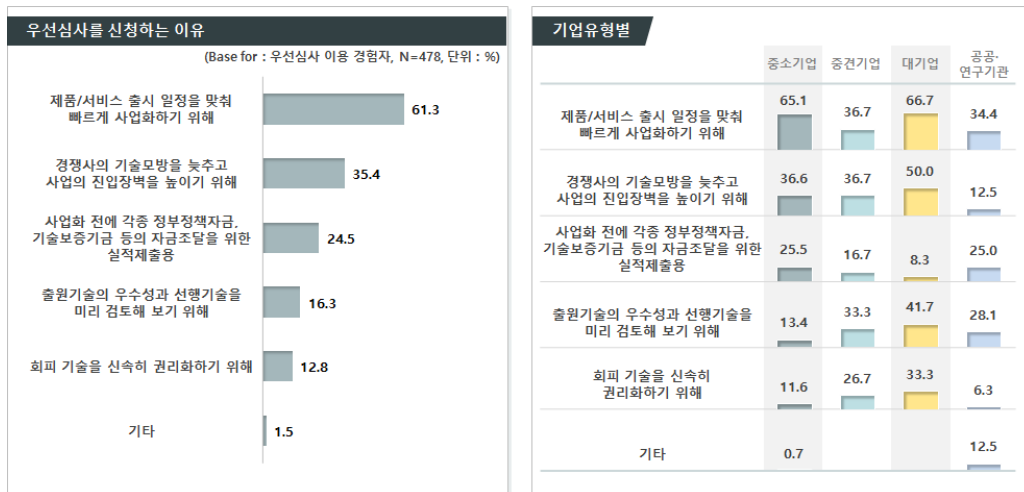


-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으로 ‘벤처기업’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3%, ‘제3자 실시’가 16.7%,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로 기업의 특성이 우선심사 신청요건에 맞아서 신청하는 경우로서 기업유형에 대해 혜택을 주었던 조건들을 조정하여 우선심사 비율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업유형별 우선심사 요건) 기업유형별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결과 반영



-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결과의 순위가 비슷하게 ‘벤처기업’이 52.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22.8%)’, ‘제3자 실시(15.8%)’ 순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의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근소한 차이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26.7%로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준비)중’이 50%로서 과반을 달성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제3자실시’가 41.7%로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33.3%로서 세 번째로 높은 조건으로 나타남.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앞서 세 기업유형에서 낮은 조건으로 나타났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반이상인 56.3%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등에 많이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통해 우선심사를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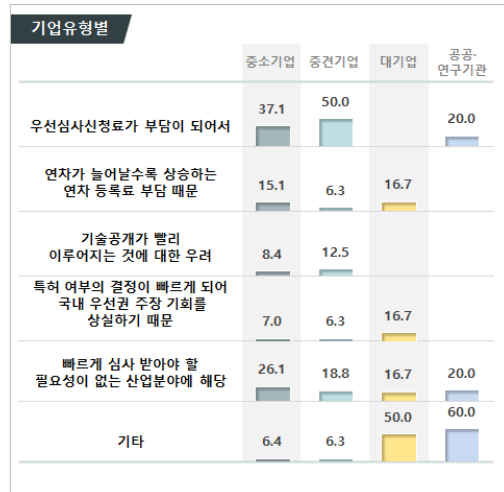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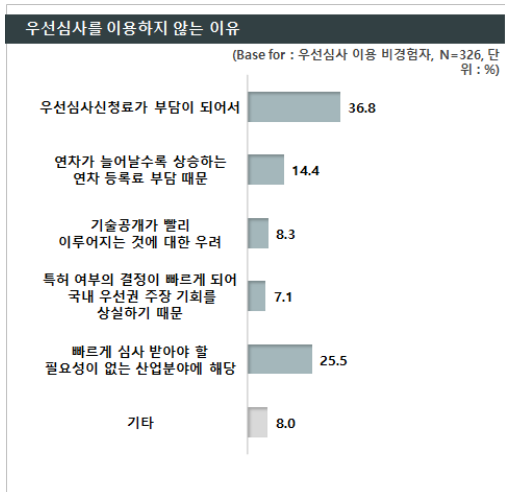
□ 우선심사 신청사유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로 ‘제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맞춰 빠르게 사업화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쟁사의 기술모방을 늦추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가 35.4%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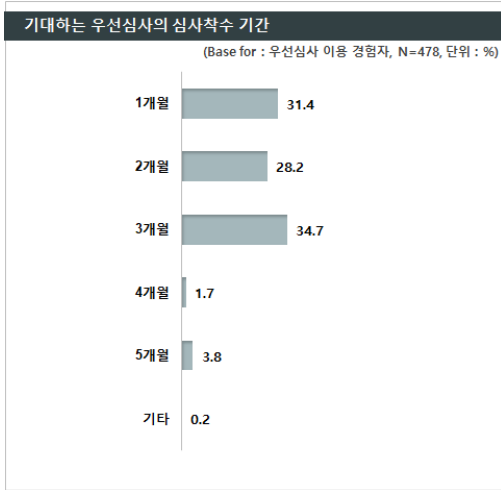
- 이 중에 정부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등 자금조달을 위한 실적 제출용이라는 답변이 세 번째로 높은 24.5%로서 긴급처리의 필요성이 빠른 사업화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선심사 신청하지 않은 사유



- 전체 804개 기업 중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326개 기업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함
-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36.8%를 보인 ‘우선심사 신청료가 부담이 되어서’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빠르게 심사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산업분야에 해당’이 25.5%, 세 번째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상승하는 연차 등록료 부담 때문’이 1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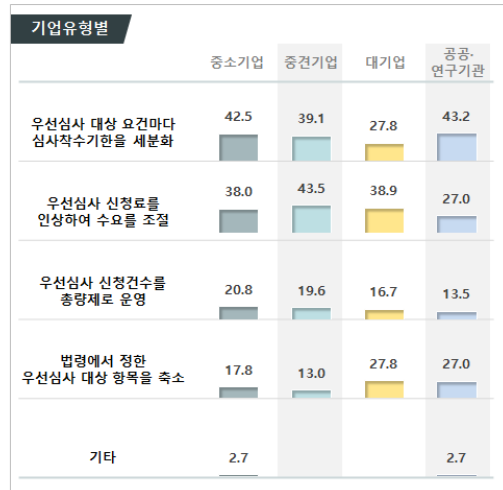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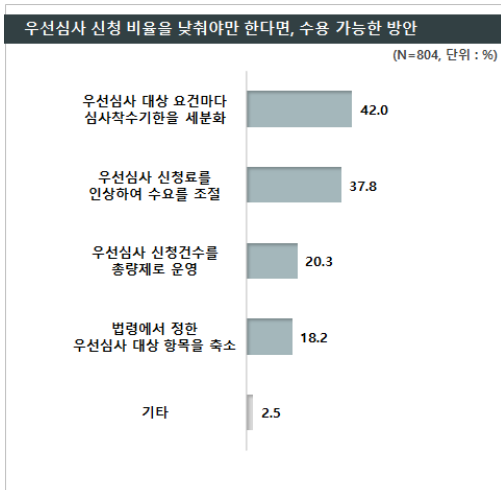
□ 기대하는 우선심사 착수기간



○ 기대하는 우선심사의 심사착수 기간으로 '3개월'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개월'이 31.4%, '2개월'이 2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우선심사 착수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답변이 많은 것은 현재의 우선심사 착수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나타냄.

□ 우선심사 비율을 낮출 경우 수용 가능한 정책방안



- 우선심사 비율이 다른 나라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현황으로 일반 심사를 신청한 수요자들의 심사처리기간이 적체되고 심사의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심사 비율의 통제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임
- 결과를 보면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에 대한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이라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정책이 37.8%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세 번째로 ‘우선심사 신청건수를 총량제로 운영’이 20.3%, 네 번째로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가 18.2%로 나타남.
 - 모두 의미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으로서 그 중에서도 우선심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경증을 정하여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수요자들은 가장 바라고 있음.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특허심사프로세스에 있어서 trade off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사대기기간과 특허심사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가장 최적의 균형인지를 찾고자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됨
- 특허심사정책포럼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한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심사대기기간의 단축보다는 심사대기기간을 예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는 것이 더 중요
 - 심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일반 기업체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사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작다면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일정 등의 향 후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2.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이 기업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심사품질을 저해하면 서까지 단축할 필요성은 없음
 - 설문조사결과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허심사에 참여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심사처리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는 특허 심사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3. 현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용의는 낮으며 지불하더라도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할 것임
 -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불할 금액을 직접적으로 문의한 결과 객관식으로 한정된 응답 중에서 66%가 가장 낮은 10만원으로 응답
 - 이는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그 기회비용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함
 - 반어적으로 현재의 심사대기기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심사관증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심사수수료를 증가시킨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임
4. 현행 우선심사 착수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며 더 빠른 심사처리를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가장 낮은 금액
 - 현재 우선심사 착수기간은 2개월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적정 우선심사 착수기간을 문의한 결과 3개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3%차이이지만 1개월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현행 우선심사 착수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우선심사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더 빠른 심사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우선심사 비율의 적절한 조절을 위한 제한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함.
5. 현재의 우선심사 정책은 꼭 필요하며 우선심사 비율의 조절을 위해서는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해야 함.

- 우선심사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문의할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
- 두 번째로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신청료의 경우는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은 수요자들의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요인으로서 우선심사 비율 조정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빠른 심사처리를 통한 조속한 권리확보는 기업체나 발명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심사 품질을 저해하면서 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불만족도를 높일 것임
-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수요자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현재의 특허품질을 유지하면서 심사처리기간 및 우선 심사 비율을 조절해 나가야 함.

제1장

연구의 배경

경제 환경의 변화는 역사 속에 걸쳐 기술의 발전과 연계되어 변화되어 왔다. 2019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안에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인류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기업의 가치증진과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 신기술에 대해 신속한 권리화를 통해 미래 창출될 부가가치에 대해 독점적 우위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위해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체나 개인의 발명자들은 특허출원을 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신청된 특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체의 신기술에 대한 환경적 요인 및 산업별 성격으로 인해 심사에 대한 기간을 다소 여유롭게 생각하는 기업체도 있고 빠르게 권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사기간에 대해 신속한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는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세계 주요국들의 특허청은 신속심사프로세스를 따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심사의 경우는 일반심사에 비해서 출원비용 및 연간 발생하는 운영비등이 다소 비싼 장벽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일반심사를 통한 출원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7.7%였다. 이는 세계 주요 IP국가들의 우선심사 비율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은 3%, 2016년 기준 유럽은 6%, 일본은 9.7%를 나타냈었다. 이렇게 높은 우선심사의 비율은 심사관을 늘리지 않는 한 일반심사의 질을 하락시킬 위험이 존재하므로 우선심사 신청비율의 가장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심사 출원의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특허 일반심사처리기간은 2015년 이후 10개월 수준을 유지중이고 심사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심사처리기간을 특허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출원인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출원인의 규모별, 기술 분야별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관을 증원시키는 사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등의 사유로 그에 대한 정당성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로 한정된 심사자원 하에서 심사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2017년 3월 심사청구기간이 출원 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출원된 발명에 대한 조속한 권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사청구량은 증가하고 있다. 심사청구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심사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심사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심사품질과 처리기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연구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특허심사와 관련된 현 상황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일반심사프로세스 및 우선심사프로세스의 경험이 있는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니즈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수요자별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특허심사정책포럼을 운영하여 도출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포럼위원은 학계, 변리사 및 산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 포럼위원으로 구성을 이루었다.

3장은 실질적으로 일반특허출원 및 우선심사를 신청했던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였다. 총 804개의 기업체를 조사하였고 이를 기업유형별, 산업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업유형별이라 하면 기업의 규모별로 나뉜 것으로서 중소기업 703개, 중견기업 46개, 대기업 18개, 공공연구기관 37개 등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많은 기업체들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점점 심사의 품질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장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수요자별 인식

제1절 학계의 인식

1. 법학적 관점의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비율에 대한 고찰

특허권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함. 따라서 출원인(권리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특허권을 등록받는 것이 독점권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적정 심사처리기간이란 독점기간의 크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심사자(특허청), 출원인(권리자) 및 제3자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되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¹⁾

심사자(특허청) 측면; 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사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심사품질이 저하되어 부실특허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원인(권리자) 측면; 독점 '기간'의 측면에서는 심사처리기간이 가능한 단축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심사기간의 단축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1) 특허법은 모든 출원의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심사를 촉진하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출원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심사를 늦추고 싶은 경우도 있다.²⁾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점³⁾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의 측면;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는데, 특허법은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법 하에서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5년이었으나 심사청구기간이 길어져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6년 개정법⁴⁾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고려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을 것이나, 심사청구기간을 너무 장기로 하게 되면 출원발명의 권리화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59조 제5항).

(1) 심사청구기간 - 3년의 기간은 적정한가?

2016년 개정법에서 심사청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이래 일정 시간이 경과함. 현 시점에서 기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 우선심사청구대상

현행 특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우선심사청구대상이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라 제약관련 특허출원의

2)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업진척 정도에 맞추어 특허권 등록을 늦추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음. 첨단기술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심사선례가 적어 자신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던 것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허적격성을 인정받아 등록되는 사례도 발생함. 이에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가능한 미루고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함(1980년대 미생물 관련발명, 최근의 의약품도발명의 범위확대 등 참조). 이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는 점(제59조 제4항)도 염두에 두어야 함.

3) 독점권 확보를 위한 출원, 방어목적의 출원, 출원 당초에는 독점권을 얻고 싶어 출원했지만 그 후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출원한 기술의 가치가 없어져서 이미 독점권을 취득할 의사를 잃은 것 등.

4) 법률 제14035호 일부개정 2016. 02. 29.

심사, 특허심판 및 소송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우선)심사처리기간, 심판기간 및 소송기간의 적절성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심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1) 해외 주요국 사례

1) 중국

① 출원 건수의 증가

-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
- 2015년 8월 8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특허 출원량의 급증에 따라 SIPO의 심사업무 부담도 증가하였으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⁵⁾
 - 2014년 기준, 중국의 특허 심사기간은 평균 21.8개월을 달성했다고 보도함.
- 지식산권보에 따르면 SIPO의 특허 심사기간 단축 노력은 다음과 같음
 - (지속적인 기간 단축 계획) 2001년 「제10차 5개년 계획(十五规划)」에서부터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특허 업무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특허 기간을 단축함
 - 특허 심사기간이 2001년 53개월, 2011년 22.9개월, 2014년 21.8개월로 단축됨
 - (심사모델의 혁신) SIPO는 2012년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을 수립하여 신흥산업 관련 기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출원 기술, 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우선심사를 실시함
 - 우선심사는 대상 특허에 대해 30일 내에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송하고 1년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2015-34 권호.

- 이에 따라 2014년 우선심사 대상 특허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5개월 수준을 달성함
- (국제협력 강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확대하여 해외에 출원하는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함
- PPH 특허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13.8개월, 일본 특허청(JPO) 6.6개월임

② 지식재산권 심사품질의 향상과 심사효율 제고⁶⁾

- (배경)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효율의 제고’의 실천을 요구함
 -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사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특허심사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내부적 잠재력을 발굴해야 하며, 혁신주체의 창작물을 신속하게 지식재산권화하여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산업에 이바지해야 할 것을 강조함
- (주요내용) CNIPA 특허국(专利局) 심사업무관리부(审查业务管理部)는 발명특허 심사주기의 단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심사품질의 점진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소개함
 - 특허심사인력을 충원하여 특허권 창출 규모의 확대를 보장함
 - 특허심사업무 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하여 특허심사의 질적 안정화를 추구함
 - 관련 문건을 각 특허심사협력센터에 전달하여 모든 특허심사 관련 부문에서 특허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함

2) 일본

① 일본 기업의 외국출원

- 2019년 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대상 건수를 2019년 4월 1일부터 두 배로 증가시켜 실시한

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2019-13 권호.

다고 발표함.

- (배경) 베트남은 최근 비즈니스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자동차, 전자, 전기를 비롯한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경우 특허출원부터 첫 번째 심사통지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특허심사기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JPO와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016년 4월 1일부터 PPH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PPH 신청이 제출된 출원의 심사결과는 평균 약 10개월이 소요됨
 -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수락한 PPH 신청건수는 연간 100건에 한정되어 있어 지난 3년간 베트남에 신청된 PPH 신청은 모두 조기에 소진되어 건수의 상한이 강하게 요구됨
- (주요내용) JPO와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수락하는 PPH의 신청 건수를 연간 10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여 3년간 실시하기로 합의함
 - 또한 신청의 상한은 연간 200건 상한에 추가로 새로운 제약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음.(반년간 00건)
 - 기존 JPO가 받는 PPH 신청건수는 종래대로 제한이 없음
- (효과)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PPH 신청을 한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심사가 오래 걸리는 베트남에서도 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음.⁷⁾

② 일본 특허청(JPO)의 심사품질 제고노력

- JPO는 심사품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9년 4월 16일 JPO는 특허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특허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8년 특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2019-09 권호.

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特許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⁸⁾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국내 출원 특허심사의 품질 전반, 개별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의 품질,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 개별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2.2%, 부정적인 평가는 5.6%를 기록함
- 개별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7.0%, 부정적인 평가는 9.6%를 기록함
-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7.8%, 부정적인 평가는 3.8%를 기록함
- 개별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3.1%, 부정적인 평가는 13.2%를 기록함

- (향후 과제) JPO는 국내 출원 및 PCT 출원에 있어서 ‘판단의 균질성’ 항목의 평가 평균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2) 심사관 증원

- 장기적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심사관 증원임.
- 특허품질 제고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심사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특허심사품질(순위):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7, 영 IAM 매거진)).
- 2018년 9월 13일, 특허청은 지속적인 특허심사관의 증원을 통해 실제로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들의 수용도⁹⁾가 향상되는 등 심사품질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함.¹⁰⁾

8)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8-tokkyo/2018-tokkyo-report.pdf>

9) 심사결과(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 수용도(%): ('16) 91.9 →('17) 93.2 →('18.6) 93.5
(수용도 의미)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 없이 수용하는 비율.

10)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2018-38,39 권호.

- 심사인력 증원은 특히 이공계 고급인력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도 부합함.
- 장기적 측면에서는 심사관 증원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심사관을 증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외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외부 기관의 활용

- 특허심사의 첫 단계는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라고 할 수 있음.
- 외부기관의 효율적 활용
 - 개정전 구특허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허청장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법을 개정하여¹¹⁾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전문기관 활용의 한계
 - 법에서 허용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됨(특허법 제 58조 제1항). 실제심사를 수행하고 특허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사관만이 할 수 있음. 전문기관이 위에서 법정하는 업무를 벗어나 실제심사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11) 법률 제14371호 일부개정 2016. 12. 02.

(4) 국제협력 강화

-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확대
- 공동조사 및 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에 관한 IP5 파일럿 프로그램 - 동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14일 제11회 IP5 청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¹²⁾
- 특허심사협력조사 - 기업활동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동일한 기술내용에 대한 심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일·미 특허심사협력조사(特許審査協働調査)와 관련하여 국제출원공개 전 조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1청에서의 출원이 공개된 후(출원한 때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동 협력조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요건 완화에 따라 국제출원공개 전 동 협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함.¹³⁾

4.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기술의 특성, 출원의 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심사기간

- 심사기간은 단축할수록, 즉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원은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 → 그 전에 특허등록이 되는 경우 출원의 공개 또한 앞당겨짐.
- 출원이 공개되는 경우 베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의 선행 출원으로 인해 진보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음.

12)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2018-29 권호.

13)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2016-32 권호.

- 출원인(권리자)측면에서, 독점‘기간’의 측면에서는 심사처리기간이 가능한 단축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출원인의 입장에서 심사기간의 단축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심사를 늦추고 싶은 경우도 있음.
-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특히, 첨단기술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심사선례가 적어 자신의 특허등록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던 것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허적격성을 인정받아 등록되는 사례도 발생함. 의약용도발명의 범위가 최근 확대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듯.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보니, 심사청구를 늦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더불어, 기술의 사업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함. 보통 출원 5년 내지 7년 정도 기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점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것인지도 고려해야할 것임. 출원인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적절한 심사·출원 기간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인들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해야함.¹⁴⁾ 우선심사에 대해서도 필요의 정도에 따라 제도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¹⁵⁾

(2) 출원인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심사정책

- 특허출원에 대한 적정 심사기간의 도출은 무엇보다 특허권을 부여받기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심사진행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심사대기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62.1%). 이는 일반적으로는 심사대기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다만 대기기간 단축을 원하는 출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14) 특허권은 특허등록에 의해 발생하여 출원후 20년 시점에서 만료되지만 그 기간동안 모두 독점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 유지료(연차료)는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15) 예컨대 긴급을 요하는 경우 vs. 그 밖의 경우.

이는 특허심사업무량에 대한 응답으로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30.8%), 심사대기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상당(19.9%)하다는 점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음. 결과적으로 심사품질유지를 위해서는 심사업무량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0.7%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현행 심사관의 숫자만으로는 출원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품질은 유지하면서 심사대기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 심사품질은 유지하면서 심사기간을 어떤 식으로 단축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심사관 증원'임. 조사에 따르면, 특허품질 제고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심사품질이 유럽, 일본, 미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허청만큼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특허품질이 낮은 이유는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심사를 하기 때문임.
- 심사기간을 단축하면서 심사품질까지 우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임.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심사관의 증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들의 수용도가 향상되는 등 심사품질 개선효과를 이룰 수 있음. 심사인력 증원은 특히 이공계 고급인력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에도 부합함. 다만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심사관을 증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장기적으로 심사관 증원계획을 세우는 한편 외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분야는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라고 할 수 있음. 선행기술조사만 잘 되어있으면, 심사관이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임. 외부기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법정되어 있음. 개정 전 특허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허청장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특허법을

개정하여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전문기관을 잘 활용한다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듯함. 다만, 전문기관 활용의 한계가 있음. 법에서 허용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지, 실제심사를 수행하고 특허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사관만이 할 수 있음. 심사관의 업무로드 때문에 자칫 전문기관이 위에서 법정하는 업무를 벗어나 실제심사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외부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보아야함.

(3)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 제3자 측면에서 본다면, 심사청구기간을 너무 장기로 하게 되면 출원발명의 권리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16년 개정법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권리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원인 입장에서는 또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기간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3년 심사청구기간이 적정한지 등 기간단축의 효과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 있음.

(4)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특허법 개정으로 등록지연을 보전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었음.(제92조의2).¹⁶⁾ 동제도의 도입으로 심사, 심판 또는 소송으로 인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때가 ‘등록지연의 기준시점’¹⁷⁾보다 늦을 때, 기준시점부터 지연된 기간만큼(출원인에 기인한 지연기간은 제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게 되었음.

16) 특허법 일부개정 2011.12.02 (법률 11117호).

17) ‘출원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을 말한다.

- 지금까지 실제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드물지만 향후 동제도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제도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전세계적인 일반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미국은 특허청이 조정된 존속기간을 계산하여 출원인에게 알려주고¹⁸⁾ 출원인은 조정된 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특허등록료(Issue Fee) 납부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권자가 연장등록 기간을 산정하여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특허법 제92조의2)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특허법 제89조)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제도이지만 두 가지 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은 제약산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근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리딩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뿐만 아니라 소송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해서 우선심사청구대상, 우선심사처리기간, 소송기간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5) 경제학적 관점의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비율에 대한 고찰

5. 심사처리 기간

-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다른 나라 또는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FOA) 보다 상당히 짧은 편임. 특허의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발명자들에게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해 준다는 장점 이외에도, 금융 시장 및 생산물 시장에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감소시키고, 경쟁 기업에 대한 전략적 행위를 줄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존재함.

18) Notice of Allowance를 발행할 때 조정된 존속기간을 출원인에게 통보.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사기간의 지나친 단축은 심사관들로 하여금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심사 품질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특허심사의 질(quality of examination)이 높은 것은 발명의 질(quality of invention)도 높은 것과는 구분되어야함. 특허심사의 품질이 높은 것은 특허성이 존재하는 기업에게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성 요건이 결여되어 특허권을 거절 결정하는 비율, 즉 발명에 대해 정확한 심사와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될 것임.
- 따라서 특허심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유형은 크게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Type I error와 Type II error가 증가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Type I error는 특허를 부여하여야 할 발명에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Type II error는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임.
- 김이경·오준병(2017)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심사관의 충분한 보충없이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심사관들의 업무로드(workload)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심사관의 심사 오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중에서도 Type II error(특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심사관의 심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선행기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또한 Type II error가 증가하는 것은 심사결정 이후,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도 심사관은 특허심판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특허심사 인력의 충원이나 제도적 개선 없이는, 현재의 특허심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출원 특허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지니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므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현재의 심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6. 우선심사 비율

- 우리나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우선 심사의 자격을 갖춘 대상이 해마다 증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우선 심사 출원을 하는 발명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우선 심사의 대상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심사관의 보통 심사에 대한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니며, 궁극적으로 특허심사 품질 전반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우선 심사 제도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차별화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면, 우선 심사 총량제를 도입하여 특정 부분의 우선 심사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부분의 우선 심사 비율을 조정하는 탄력적 제도 운용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선 심사를 청구하는 발명자들과 발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발명의 질이 좋지 않은 여러 발명들에 의해 우선 심사 제도가 남용됨으로써, 실제 높은 발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변리사적 관점의 인식

1. 변리사 I: 특허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의견 및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

(1)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정책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

- 심사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출원시 합리적으로 가능한 FA 예측기간(평균 FA 등)을 출원인에게 공지하는 방안 검토(최소/최대 기한 포함)
- 일반 출원인들의 경우, FA와 최종 심사결정기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심사절차에 대한 표준 안내문을 쉽게 작성하여 출원관련서류의 송달시 출원인에게 송부할 필요
- FA 이후 중간심사 처리기간 또한 심사관별로 차이가 있음.
 - 심사관별로 상이한 FA 이후 중간심사기간을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절차 상의 대기기간을 줄여 전체적인 심사종결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포지티브 심사의 확대
 - 유럽특허청의 경우, 신규사항 추가, 진보성 극복을 위해 심사관이 적극적으로 OA 통지서에 보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도 포지티브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실제 실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포지티브 심사는 심사관의 업무 로드를 과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심사관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하도록 포지티브 심사에 의한 보정안 안내시 적절한 수준의 심사 포인트를 부여함이 바람직함

(2)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

- FA가 단축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어느 누구도 FA의 단축을 위해 심사품질을 희생해야 된다고 판단할 사람은 없을 것임
- 심사관의 추가적인 채용이나 인력투입 없이 FA가 단축되는 것은 실제 심사에 활용 가능한 시간이 줄어 드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FA의 단축을 위하여 심사관 증원없이 선행기술 조사를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선행기술조사가 심사의 핵심이므로 전체적인 심사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 등 IP5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 등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유럽특허청은 동일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하는 BEST(Bringing Examination and Search Together)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일본특허청도 외주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지만, 신규성, 진보성 관련 판단은 전적으로 심사관이 진행함
- 특히 선행기술조사원의 특허 신규성, 진보성 관련 보고서 작성은 심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실무상 당연히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을 하겠지만, 외부에서는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양식 및 기재내용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기술의 특허심사에 관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
 - AI, 빅데이터 등 융합기술 분야의 경우, 기존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거절결정의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상기 기술분야의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기술의 발명이 대부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점진적 개량특성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폭의 기능 개선이라도 실제 작용효과는 현저한 발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요구되며,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또한 실용신안법의 해석을 달리 하여 청구항의 기재방식이 물건 청구항의 형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실제적 내용이 방법이나 절차적 내용을 일부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성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독일식 실무를 채용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일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 실용신안법 체계에 있어서, 적어도 실용신안이라는 용어의 대체적인 사용을 검토 (예를 들어, ‘실용특허’ 또는 ‘이노베이션 모델’ 등 고안자들에게 보다 의욕을 고취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며 그 뜻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현 실용신안의 명칭을 개선할 필요)

(3) 우선심사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

- 우선심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는 일반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 장기적인 우선심사 계획에 대한 로드맵 구축 필요
 - 우선심사 활용이 매우 낮은 조항은 삭제 또는 대체 필요
 - 우선심사 허용에 대한 (내부적) 최대 비율 설정
- 우선심사 출원비율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필요
 -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우선심사 사유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사기간의 지체를 방지할만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
- 또는 우선심사의 모든 요건을 폐지하고 우선심사, 보통심사, 지연심사의 3단계 심사로 구분하되, 각 심사단계별로 최대/최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변리사Ⅱ: 특허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의견 및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

(1)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정책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정책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에서 ‘변리사 관점’이란 변리사가 특허 출원인의 특허출원,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원인 또는 발명자(이하 ‘출원인’이라 한다) 관점에서의 인식, 즉, ‘출원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허경쟁력과 관련하여 출원인 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는 특허법에 심사출원과 심사청구¹⁹⁾를 구분하고 있어,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하고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속한 심사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심사청구제도가 있어 필요에 따라 신속한 심사결과를 바라지 않는 출원 건에 대하여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3년 이내에 천천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1-1] 연간 특허심사처리기간

(개월 수)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처리기간	14.8	13.2	11.0	10.0	10.6	10.4	10.3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바, 상기 표와 같다. 상기 심사처리기간은 출원인이 심사청구후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의견제출통지서 발송)까지의 심사대기기간(FA)이며, 최종심사(2차 심사)까지는 상기 1차 심사후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2018년 기준 출원인이 기대하는 최종심사처리기간은 심사청구 후 약 18개월이어서 아직도 출원인 입장에서는 더욱 신속한 심사를 바랄 수밖에 없다.

19)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심사처리기간은 전체적인 통계에서 보여지는 숫자이고, 개개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기술분야별 심사처리기간 편차가 심하여 아직도 2년이 넘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출원인 입장에서는 나의 특허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어렵게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심사대기건수를 확인해본다거나 담당심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알아보고 하더라도 언제나 예측한 기한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원인은 적어도 1차 심사처리기간(심사대기기간 ; FA) 만큼은 예측가능한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는 1차 심사결과에 따라 국제출원진행여부 결정, 특허출원기술의 보완개발 방향 설정 및 해당기술의 아이템 적용여부 결정을 해야 되는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조건도 까다롭고 별도의 비용이 부담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출원인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우선심사신청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는 1차 심사(FA, 심사대기기간)처리기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출원인이 적어도 1차 심사처리기간 만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에는 반드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이뤄져 공개 이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속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 특허청의 심사 처리기간 단축으로 국외 선진국의 대기업들도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 출원을 미리 심사해 달라는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심사제도와 같이 3-Track 심사제도(일반심사, 우선심사 및 지연 심사로 구분하여 출원인의 요구 심사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심사품질과 심사대기기간(FA)의 상관관계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

실제로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는 가장 밀접하다 할 것이다. 즉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펴면 아무래도 심사관의 심사업무과중으로 FA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심사품질과 FA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심사품질은 특허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원인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특허를 출원한 건에 대하여 흠 없는 심사품질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출원인이 바라는 심사품질제고는 ① 네거티브(negative)심사에서 포지티브(positive) 심사체제로의 전환, ② 심사관 직권보정 확대, ③ 1차심사(의견제출통지서)에 적정 청구범위 보정방향 제시, ④ 심사관 면담 및 보정서 리뷰제도 간소화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심사제도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그 중에서도 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상기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확대를 통하여 심사관도 심판관처럼 출원심사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심사관 대우 개선으로 심사관이 변리사개업을 하지 않고 일본처럼 심사관으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히, 출원인 입장에서 보는 심사품질제고는 진보성판단을 엄격히 하여, 즉 보호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절대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권이 아니라 선행기술에 비하여 출원기술의 구성 및 효과가 차이가 있어 특허가 될 만한 기술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심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실제 특허권자가 특허권 행사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면 결국 특허법의 목적인 발명을 보호, 장려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출원인은 심사품질제고와 심사대기기간(FA)의 단축은 기업전략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즉, 심사처리기간 지체로 권리화가 늦어지면 기업에서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출원인 관점에서 보면 심사품질 제고 및 심사대기기간 단축에 의한 조기권리화의 결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의 발생시점이 앞당겨짐으로 인하여 생산액 및 부가가치 증대 등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발되어진다 할 것이다. 이처럼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혜택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연구개발 주기를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1~2년 주기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화가 빨리 되면 그만큼 상품화 속도도 빨라진다.

(3) 우선심사에 대한 변리사 관점에서의 인식

21C를 흔히 '특허전쟁'이라 한다. 날마다 발전하는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 보통사람들은 쉽게 가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우선 특허부터 내놓으려고 경쟁하는 양태를 '특허전쟁'이라 한다. 요즘은 세계 각국의 특허청이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조금 색다른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다.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다양화 되다 보니 정말 신기술인지 빨리 가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야 기업들도 특허 권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기술을 사오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2] 연간 우선심사 신청건수

(단위: 건)

우선심사요건	2014	2015	2016	2017	2018
선행기술조사	8,072	8,255	8,074	9,030	10,928
자기실시	6,205	6,799	7,245	6,946	7,987
벤처기업	4,241	4,295	4,316	4,329	4,624
특허심사하이웨이	2,108	2,557	2,896	3,042	2,960
이노비즈	2,341	2,316	2,335	2,347	2,498
실용신안	1,424	1,322	1,167	936	952
4차 산업기술	-	-	-	-	35
기타	5,338	3,030	3,091	3,640	3,063
계	27,438	28,574	29,124	30,270	33,047

[자료출처] 2018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보다 빠른 심사처리를 위하여 우리 특허법 제61조에는 특허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심사 신청제도가 있는바,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의하면 우선심사신청은 상기 표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기 표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2014년 이후 매년 우선심사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선심사신청요건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을

의뢰(33.0%), 출원 후 자기실시(24.1%), 벤처기업(14.0%), 특허심사하이웨이²⁰⁾(9.0%), 이노비즈(7.4% 순이다. 상기 선행기술조사에 의한 우선심사는 다른 요건보다 더 우선 심사 신청비용부담이 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출원인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보다는 신속한 심사가 절실히 필요한 결과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기술분야가 우선심사신청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건설기술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Product Life cycle(PLC ; 제품수명주기)이 짧아 출원 기술에 대한 특허여부(최종심사)를 빨리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특허기술의 빠른 사업화를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출원인이 기대하는 우선심사신청의 경우 최종심사까지의 기대기간은 빠를 수록 좋지만 대축 2개월 정도라 할 것이다.

20) 두 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주는 제도이다

제3절 산업별 심사대기기간 및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인식

1-1 바이오산업: 대기업(녹십자)

녹십자는 2018년도 매출 1조3349억 원(연결기준), 상시 근로자 수 22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녹십자 외에 녹십자 계열사 중 녹십자웰빙 (상시 근로자 수 220명, 2018년도 매출 540억 원)의 특허 업무를 같이 담당하면서 심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녹십자 특허팀에서 14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1) 현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산업별 인식

대기업의 경우 연구소 발명자가 특허심사 경과를 기다리면서 언제쯤 심사 결과가 나오는지, 또는 언제 특허등록이 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전담팀의 담당자가 적절한 선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전담팀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내 대리인이 답변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출원을 제출하기 이전에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특허팀 담당자가 우선심사 트랙을 제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원시 심사청구나 심사청구 3년 유예 중 선택하도록 제안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원들(발명자들)이 특별하게 심사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사항 없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발명자들 중에 출원시점에서 언제쯤 특허가 등록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분에게 1년 기다리면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온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발명자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에 저에게 특허청 심사결과가 나왔느냐는 질문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발명자는 1년을 기다리면서 1년이 되는 때에 심사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에게 문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발명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발명자 들 중에 이처럼 본인의 특허출원이 언제 권리화가 되는지,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특허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빠른 권리화만을 목적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자고 제안하는 발명자나 연구자에게 특허팀 담당자 입장으로 오히려 우선심사의 단점(예를 들면, 발명의 공개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과 연차유지료의 부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이 불가한 상황이라든가, 식약처 특허 등재 신청이 안되는 상황 등)을 설명하여 우선심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특허출원 중에 우선심사를 통해 출원 후 6개월도 안되어서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해당 특허발명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심사 중이었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 결정보다 먼저 특허등록이 되면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 현 심사정책에 대한 산업별 인식 및 건의사항

저희는 현재의 심사정책이나 일반 심사의 심사 대기기간, 우선심사 기간 등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고, 저희와 같이 큰 불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잘 반영되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분야별 또는 담당 과 별로 심사 대기 기간에 대한 예측불허의 불명성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청이 발표하는 평균 심사 대기 기간으로부터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무리한 심사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심사품질을 저해하게 하는 것을 더 염려합니다. 심사관의 수를 늘리면 당장은 어떻게든 심사기간이 단축되겠지만 무작정 심사관 수만 늘리는 것도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심

사관의 수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 제도가 말로 경쟁특허의 존속기간이 얼마만큼 늘어나게 될지 예측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제약분야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일주일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특허권자가 존재하는 만큼 가급적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최소화하게끔 심사관님들의 목표설정과 평가에 반영이 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변경이나 제도 시행 등에 있어서 외국 기업이 먼저 빠르게 혜택을 입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내 기업과 국내 출원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 설정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우선심사에 대한 일반적 활용

(1) 우선심사제도 취지와 현재 운영 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우선심사 트랙의 경우, 대기업의 발명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우선심사 요건에 맞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100% 선행기술 조사에 의한 우선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비용이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나 심사청구관납료 대비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적어도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심사를 하고 싶은 발명인 경우에는 어느 발명의 경우라도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하였고, 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 적은 전혀 없었고, 또 우선심사 신청을 해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받은 경우가 전혀 없이 100%의 우선심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심사 신청을 하고 싶은 특허 출원에 대해 변함없이 (선행기술조사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예정이며, 우리가 신청하는 우선심사에 대해 우선심사가 거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우선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발명으로 신청할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크게 불만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너무 형식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심사청구 건 중 20% 이상이 우선심사로 청구되고 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는 우선심사의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우선심사비용을 조정하는 정책에 찬성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선행기술 조사에 의한 신청이었으나 어느 심사관은 1개월만에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반면에 다른 심사관님으로부터는 4개월을 꼭 채워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심사만을 위해서도 심사관 수로 조정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도의 활용 유형 분석

1) 기술분야별·기업규모별 제도 이용의 이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가장 빠르게 권리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업화 파트너에게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 우선심사 절차를 통해 빠르게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특허청 출원 이후 1년이 되는 때에 우선권 주장을 통해 PCT특허출원이나 해외 출원을 하기 전까지 특허심사를 통해 본 건 출원의 등록가능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해외출원시에 판단의 기초로 활용합니다. 기타 과제의 Go/No Go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도 우선심사 신청을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활용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2) 실질적인 효과

빠른 권리화로 인하여 라이선스 파트너에게 특허 포트폴리오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고, 계열사 중 IPO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IPO를 진행하였던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등록의 보도기사 만으로도 주식 가격이 약간이나마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성공적이었을 때에, 적은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받았습니다.

(3) 기타 의견

1) 우선심사로 일반심사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산업별 인식

저희가 우선심사 신청으로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의 2개월 만에 빠르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의견서/보정서의 제출 지연과 계속되는 2차/3차 의견제출통지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특허등록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의 등록까지의 시간 지연에 대해 저는 심사관이나 특허청의 정책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원인과 발명자의 지연으로 인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허담당자로서 우선심사제도의 취지가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기까지의 시간만을 단축하는 제도라고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었고, 필요하면 발명자(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이 낮은 발명까지 특허등록을 빨리 시키는 제도가 아님을 설명하고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 우선심사 처리기간과 비율의 적정성

현재의 20%는 높다고 사료됩니다.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서 우선심사 신청 비율을 감소시켜서 심사관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원래 있었던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면 특히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반발을 예상하고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학생 등 영세업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 혜택 등 다른 비용적인 절감 정책이 있으므로 반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설문결과를 근거로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를 좀 더 높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를 높이면서 추가로 비용 구간을 차별화시켜서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의 종류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신청 비용을 책정하는 방안도 적극 찬성합니다.

또는 기업의 매출 별로 우선심사 신청 비용을 구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예시가 될 수는 없지만 현재 KINPA가 연회비를 매출별로 차별화하여 받고 있지만 그 구간이 너무 넓습니다. 우선심사신청 비용을 매출별로 다르게 책정할 경우 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1-2 바이오산업: 중소기업 (웰스케어)

1.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1) 현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산업별 인식

출원인 중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별, 산업군별 및 기업 내부의 세부 특허 전략이나 경영 정책 특성 등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동안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으로서, 출원일(동시 심사청구 가정시)로부터 약 2년 내외의 등록에 시간이 걸렸다면, 최근에는 1년 2개월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특허의 심사처리기간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빠른 특허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와 같은 평균 등록기간 보다 빠른 등록을 희망하는 특허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조기 등록을 통한 권리 보호와 주장, 용자와 정책자금 확보, 빠른 등록을 통한 정부지원 혜택 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비율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특허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이나 자금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일반 심사에 비해 조기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있는 것이며, 한국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많은 변리사나 특허대기기관에서 많은 안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어, 타 국가보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2) 현 심사정책에 대한 산업별 인식 및 건의사항

출원인의 니즈들은 다양하며, 그로 인해 심사정책이나 심사기간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특허 심사의 경우, 일반심사, 우선심사, 무심사의 3가지 경우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다양한 니즈에 일일이 부합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에서도 3가지 심사제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 또한 많지 않으며, 이를 잘 이해하는 특허 담당자가 있는 중소기업 비율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심사 정책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제도를 두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며, 특허 담당자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도, 심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안내해주는 제도적 장치나 특허 프로세스적인 안내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우선심사에 대한 일반적 활용

(1) 산업별 일반적 인식(우선심사제도 취지와 현재 운영 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 기술로서의 공개를 위한 심사 출원이나 노하우 성격의 출원, 그 밖에도 비전략적 출원(cf. 명목적 특허, 과제 결과물로서의 특허, 인사고과를 위한 특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른 권리 확정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빠른 권리를 받고자 하는 니즈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 비율이 높다.

(2) 제도의 활용 유형 분석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출원 후 4~6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통해, 심사관의 등록 여부와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특허가 절실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특허, 사업화가 진행 중인 특허들의 경우에는 우선

심사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나, 4차산업혁명 테마 업종이나 신성장사업 등과 같은 정부우선정책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군의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서 특허의 빠른 등록을 달성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으며, 특히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 용자, 각종 과제에서의 가점 획득, 대외 활동시 홍보 마케팅, 대외 업체와의 미팅시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으로서 이른 시기부터 많은 이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심사제도는 산업별 특성이나 기술추이, 그리고 기업 개별 상황이나 중요 기술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조기권리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빠른 권리화가 권리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심사 품질의 저하를 이해하면서, 빠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심사 품질 저하가 되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 우선심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빠른 심사 일정의 담보(출원 후 4~6개월 내), 정상 출원과 동일한 심사 품질 확보, 정상 출원 대비하여 최소 1년 이상 심사 기간의 차이 확보 등의 제도적으로 심사 안전화 출원인의 이익을 담보할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우선심사와 심사처리기간

(1) 우선심사로 일반심사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산업별 인식

문제는 우선심사가 불필요함에도 빠른 결과나 특허 확보를 위해 신청률이 과다해지는 부분이 있어 특허 심사 품질이 저하되고 제도 취지가 저해되어, 기업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낮은 심사 품질로서 향후 무효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최초 OA 대비 OA 과정에서 신규한 인용문헌들이 추가 돼서 계속 거절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선심사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업도 유료 서비스로서 얻고자 하는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라고 본다. 따라서, 과도한 우선

심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기업과 기술에만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다소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은 개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히,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 기술 스타트업 특히, 개발 완료 후 사업화가 진행되는 특허의 판단을, 실제로 해당 기업과 특허 기술이 해당 분야와 기술이 맞는지에 대한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우선심사신청의 자격이 맞는지에 대한 사전 체크를 시스템상으로 사전 필터링하는 특허청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생각해볼 수 있는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 특허청 출원 시스템상, 우선심사 자격이 강화된 사전 출원 자격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당 점수나 자격을 확인해서, 일정 자격이 되지 않으면 출원이 되지 않는 시스템
- 우선심사 자격이 된다고 하여도, 빠른 특허 심사가 큰 이득이 없는 출원의 경우라면, 정상 출원으로 유도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시스템
- 특허청 내 우선심사 총량제를 두어, 해당 총량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된 우선심사가 늦어진다는 점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
- 기업당 1년 동안 우선심사 특허 출원 수를 제한하는 시스템
- 기업당 전체 특허출원 수 대비 10%로 자동 계산을 통한 우선심사 출원 제한 시스템
- 심사관이 자판하여, 우선심사가 불필요한 특허의 철회/비용의 환급 권고/권한 부여
- 기타, 다양한 정책 안내와 포럼/세미나를 통한 우선심사 청구를 자중 권고 활동 진행

(2) 우선심사 처리기간과 비율의 적정성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청의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의 비율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선심사는 일반심사와 동일한 심사품질로서 심사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지급하고 심사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1 통신, 반도체 산업: 대기업(SK텔레콤)

1.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의견 및 입장

기술전략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심사처리”와 “변동성 낮은 심사처리기간”, 그리고 “심사단계 및 기간의 높은 가시성 제공”의 3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빠른 권리화

늘어나는 특허 출원을 제한적 인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권리화의 가부가 빨리 결정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사기술을 적용한 선도 상품/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회피 기술의 권리화 결정이 빨리 이뤄진다면 상품/서비스 출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조직의 실적관리, 과제에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이상적인 기간은 출원 이후 10개월 이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출원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결정까지 연내 이뤄진다면 개발자 입장에서 연속과제의 수행과 수행실적에 대한 인정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변동성 낮은 심사처리기간

앞서 말씀드린 빠른 심사처리는 모든 출원인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실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선으로 초기 출원시 예상 처리기간을 명확히 산정해 변동성 낮은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기술개발, 사업화 일정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기술로드맵과 관련 인력확보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심사와 연계한 의견으로는 우선심사의 확대가 일반심사 처리기간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다면 자원 할당의 여유가 적은 부서,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심사단계 및 기간의 가시성 향상

심사처리기간과 관련된 추가 의견을 드리면 심사처리기간의 가시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특허청은 담당관이 배정된 이후 대기 순번을 시스템상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출원인에게 심사일정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 신청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우선심사 건들로 인해 대기순번을 정보로써 노출하는 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순번의 정보제공이 출원인에게 있어서, 심사기간 및 권리화의 일정을 예측하는데 적절히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사단계 및 기간의 가시성이 높아진다면, 출원인은 권리화에 소요되는 일정을 대략적으로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출원 건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의 사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서, 단순히 지식재산권 확보를 넘어,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정부/지자체 사업수행 등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행기술의 선제적 확보 목적의 출원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확보 목적은 대부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상품/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영세 중소기업/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화가 상품/서비스 출시 전에 이뤄진다면 최초 런칭시점의 홍보/마케팅에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판매량과 m/s 증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나아가, 회피 특허를 통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서비스의 출시 일정 자체가 권리화 여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사처리기간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2가지, “빠른 권리화”와 “변동성 낮은 심사처리기간의 달성”이 심사인력의 부족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들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장에서 언급한 심사처리기간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출원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은 훌륭한 차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AI 기술을 적용해 심사 단계 및 지연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출원인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 및 AI 산업 활성화 전략을 범부처 연합으로 수립한 상황이며, 해당 계획에 데이터/AI 기술을 공공/행정 부문에 적용하는 것도 주요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출원인은 본인의 사업화 일정을 고려해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기업규모별, 출원분야별, 우선심사 신청 사유별 등 기준을 수립해 우선심사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포럼을 통해 심사지연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특허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량이라 느껴졌습니다. 연간 또는 월간 신청 가능한 우선심사 건의 총량을 제한하면 심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심사품질의 유지, 불필요한 우선심사 신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2 통신, 반도체 산업: 중소기업 ((주)케이엠더블유)

심사처리기간과 중소중견 기업 제품 개발 및 판매 관계

1. 제품 홍보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제품 홍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신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품 홍보 전에 특허 권리확보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물론 고객에게 특허출원 사항을 제공하여 신규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제품이 실제 양산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조기 특허권 확보는 고객에게 어필하는데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1) 제품 제조 안정성 확보

물론, 제품 제조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특허가 빠른 시간에 등록된다면 향후 제품 양산 및 판매 시에 혹시 발생 할 지 모르는 분쟁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점에 특허권이 확보된다면 제품 제조 안정성이 확보되어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2) 경쟁사 진입 방지

심사대기기간에 따라 경쟁사 진입 방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객은 하나의 납품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 또는 하위 벤더에게 동일 제품을 양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특허권이 빠른 시간 안에 확보가 된다면, 고객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물론, 심사대기기간이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등록된 특허권보다 출원 중이 특허가 경쟁사 진입을 방지하는데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처리기간이 빠른 것이 많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3) 매출 발생(경제적 효과)

매출 발생 측면에서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가 있고, 특허 등록기간 연장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 및 부수적 이익(로열티)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심사처리기간을 검토할 때 경제적인 효과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특허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의견

(1) 기업에서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갖는 의미

심사 대기기간이 짧아질 경우, 통상 자사가 실시하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출원된 특허가 빠른 시점에 등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권이 빠른 시간 안에 확보가 된다면, 고객에게 좀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심사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자사가 실시하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출원된 특허가 실제 제품을 실시한 이후에 등록되게 된다면, 고객에게 좀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 경쟁사나 모방자가 유사 기술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방어하기가 어렵거나 시점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심사대기기간에 따른 기업 특허전략

심사대기기간이 예측 가능한 경우, 특허전략을 수립할 때 보다 용이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신규 기술 및 제품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고 예측되는 시점에서 특허가 확보될 수 있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허전략 바탕아래에서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사전에 제품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

전략적으로 특허포트폴리오가 구축되게 되면 고객에게 신규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된다.

물론, 특허포트폴리오가 적절한 시점에 확보된다면 향후 제품 양산 및 판매 시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고객이 여러 벤더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쟁사 또는 하위 벤더에게 라이선싱을 제공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허전략 수립 시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된 특허권보다 출원 중이 특허가 경쟁사 진입을 방지하는데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처리기간 예측가능하다면 특허권 확보 시점을 전략적으로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심사정책 인식조사에 대한 의견

설문이라는 방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출원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Data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4. 심사처리기간과 중소중견 기업 제품 개발 및 판매 관계

(1) 제품 홍보

- 신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함
- 이때 권리확보를 위해 이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됨
- 물론 고객에게 특허출원 사항을 제공하여 신규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하게 됨
- 이때 제품이 실제 양산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고객에게 어필하기위해서 해당 특허의 등록시점(심사처리기간)이 매우 중요하게 됨

(2) 제품 제조 안정성 확보

- 물론, 해당 특허가 빠른 시간에 등록된다면 향후 제품 양산 및 판매시에 혹시 발생

할지 모르는 분쟁 방지 효과가 있음. 따라서 제품 제조 안정성이 확보되어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음.

(3) 경쟁사 진입 방지

- 고객은 하나의 납품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 또는 하위 벤더에게 동일 제품을 양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이때, 특허권이 빠른 시간안에 확보가 된다면, 고객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심사처리기간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물론 때에 따라서는 등록된 특허권보다 출원 중이 특허가 경쟁사 진입을 방지하는데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처리기간이 빠른 것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음

(4) 매출 발생(경제적 효과)

-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가 있고, 특허 등록기간 연장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 및 부수적 이익(로열티)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심사처리기간을 검토할 때 경제적인 효과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1 기계 산업: 대기업(한화정밀기계)

1. 심사처리기간

(1) 의미

- ‘심사청구후 1차 의견 제출통지서 접수까지의 기간’으로 설정

- 1차 의견 제출통지서이후의 대응은 심사결과와 실질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유동적이므로 최종등록여부 확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의견은 제외

(2) 기본입장 및 의견

우선심사를 통한 조기등록여부를 위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심사처리기간(평균10개월)에 대한 추가적인 단축에 대한 실무적인 요구는 높지 않음

단,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고, 실제적인 기술의 추이를 통한 심사여부의 결정보다는 일단 심사청구를 해 놓고 보는 형태로 일부 업무처리가 됨(심사청구 대상 건이 증가하는 형국이 됨, 실무자입장에서 출원 후 짧은 기간 내에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 즉, 기존 5년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변화를 기반으로 심사청구여부를 결정함으로 출원 후 미심사청구건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대기업특성상 현재의 R&D를 기반으로 특허출원도 있지만, 사업기획이나개발기획단계에서 특허출원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상, 줄어든 심사청구기간으로 인해서, 기존대비 심사청구 대상 건이 증가함

(3) 전반적인 이유

국내 특허출원의 등록이후 실제적인 활용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높지 않고, 패밀리건의 등록여부에 따라서 후속적인 등록진행수준으로 대응하는 상황으로 심사결과의 조속한 접수의 필요성은 높지 않음

(4) 기계업종의 특성에 따른 의견

기계산업은 전자나SW등을 메인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제품의 기본적인 사용수명이 길기 때문에 심사청구기간을 줄인상황 그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임. 제품의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기본 3~5년으로 개발과정에서 발명 개념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심사청구기간이 짧은 경우 선출원건의 심사청구 이후에 특허의 개념이나 구성요소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있음.

2. 특허의 활용

당사 자체사업영역에 속하는 기술의 특허들이 대부분으로 출원전 선행특허조사를 기반으로 출원된 상황으로 1차적으로 자사의 기술에 대한 자산화의 필요에 따른 등록으로 1차 목적이 달성이 됨. 단지 주기적인 업계시장조사를 통한 침해 적발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연구원이나 영업부서에 의하여 업무보고가 되는 경우에 업무수행을 함.

국내 등록특허의 실제적인 2차적인 활용성은 관련업계에 당사의 제품과 사업에 관련된 IP가 있음을 사전 공지하는 수준임.

단, 패밀리를 갖는 특허의 경우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함

신기술영역 발굴 및 기술트렌드 예측: 경쟁사 및 특정 Emerging 영역의 특허 출원 동향, 권리화 동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동향의 파악을 위해 오픈소스, 저널, 컨퍼런스 정보 등도 병행해 활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특허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AR/VR 등 전체 출원/등록수를 단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속도, 안정성 등 기술의 기능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R&D가 집중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때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 파악 및 협업 여부 판단: 기술 시너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잠재적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1)단순 기술력 보유 여부, (2)보유한 기술의 활용성 관점, Focal 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계획과의 시너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

3. 기업규모별 우선심사의 활용: 중소/벤처 특화 우선심사 정책 필요성

우선심사대상건의 국가별 비율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실제 우선심사를 해서 조기등록을 통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심사지연으로 인한 우선심사제도의 효과가 반감이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우선심사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대상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실무 지침을 강화하여, 일반심사대비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우선심사 신청 및 활용목적은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은 대기업 대비 지재권의 권리화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및 자금이 제한적인 반면, 빠른 권리화가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기업 대비 크게 높습니다. 자원부족으로 인한 높은 가격민감도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시,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대기업 대비 불필요한 우선심사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예상되며, 권리화 기간과 여부에 대한 높은 관여도로 인해 심사지연 발생 시 대기업 대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는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출원인의 수요를 반영한 우선심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심사 신청료의 다변화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선심사 총량 제한보다는 관리 효율성이 낮을 수는 있으나, 가격 다변화를 통해 시장경제 관점의 조정이라는 측면은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방법은 가격민감도를 높여, 권리화의 시급성이 낮은 건에 대해 일반심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적극적으로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며, 우선심사의 출원량을 자율적으로 줄여 심사기간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접근임을 말씀 드립니다.

3-2 기계 산업: 중소기업 ((주)주성엔지니어링)

1.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정책에 대한 인식

(1)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에 있어서, 출원 규모에 따른 이원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한 상황

특허출원인 별 연간 출원 건수를 파악하면 다출원과 소출원의 경계를 대략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임.

아니면, 특허행정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를 둔다면,

모든 출원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출원인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표본집단의 출원인 별 연간 출원 건수를 파악하여 다출원 출원인과 소출원 출원인으로 구분하여 각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집단의 결과를 보면 출원 건이 5건 이하인 출원인이 약 75%에 해당하고 출원 건이 한자리 수에 해당하는 9건 이하인 출원인이 약 80%에 해당함. 6건 이상을 출원하는 출원인은 13% 미만임.

출원 건이 5건 이하인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새로 시작한 상황이거나,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허보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출원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 필요보다는 외부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이 경우, 특허출원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고, 이 요건을 지정된 기한 이내에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전체 특허행정 서비스의 공정성보다는 특허행정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혜적이거나 특혜적인 절차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음.

반면, 전체 13% 미만에 해당하는 출원 건이 6건 이상이거나 두 자리수가 넘어가는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일 수 있고, 특허 자체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소규모 출원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임. 이런 입장이라면, 출원 건 다수에 적용되는 통상의 특허행정 서비스나 차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음.

또한, 출원 건이 많은 경우에는 개별 특허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미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출원 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실제 심사처리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용가능하다 부정적이다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심사처리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따라서, 출원 규모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각각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처리기간과 우선심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현 심사정책에 대한 인식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후방 산업으로 서 장비분야의 특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는 특허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며, 장비업체도 많은 건수 출원을 통해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있음. 경쟁분야 세계 1위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AMAT)의 경우 2017년에 국내출원이 약 373건이었고, 국내 장비업체 출원 1위인 세메스의 경우 2017년에 국내출원이 약 303건이었음. 주성엔지니어링(주)도 연간 7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국내 장비업체는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고, 주성엔지니어링(주)이 속한 전 공정(Front-end)용 장비업체는 대부분 중견기업 규모를 갖췄거나, 중견기업 수준의 규모나 매출규모를 가진 중소기업임.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빠른 심사를 선호하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의 장비업체의 경우, 심사청구기한을 채워서 심사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국내장비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장비업체의 국내출원의 경우에도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이는 장비의 개발에서 양산화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산업분야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발시점에 출원된 특허가 양산시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빨리하기 보다는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임.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은 비교적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므로 항상 특허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특허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경쟁업체의 특허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쟁업체의 출원 건이 우선심사청구가 되었거나, 심사청구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른 시기에 심사청구가 된 것에 더 주목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미리 분석을 진행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게 만들기도 함.

2) 현 심사착수시기에 대한 주성엔지니어링(주)의 입장

- ① 주성엔지니어링(주)은 심사청구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기한이 3년으로 줄었으나, 5년으로 지연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볼 의사는 있음.
- ② 심사착수기한(FA)에 대해서는 기한의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가능한 입장임. 다만, 우리 특허청의 심사착수시기가 다른 국가의 심사착수시기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희망함.
- ③ 현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착수를 유지한다면 심사착수시간이 한두 달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음.
- ④ 심사착수기한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심사착수기한의 절대적 수치를 더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더 늦춰도 되는지에 맞춰줘 있는데, 이보다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출원인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현 심사정책에 대한 주성엔지니어링(주)의 입장

- ① 심사청구하여 등록결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기를 희망함.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게 제출된 이후부터 등록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기를 희망함.
- ② 심사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심사청구 시점에서 심사착수시기를 예측하기 보다는 첫 번째 심사결과가 나온 후부터 이후 진행되는 심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봄.
- ③ 즉, 심사관의 통지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심사착수시기에 대해서 3~4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이므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이에 비해서 심사청구시점에서 심사착수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10개월 정도 이후의 일 이므로 예측하기가 어려움.

- ④ 또한, 다음 심사시기를 예상해서 통지하더라도 출원인의 보정범위가 추가의 심사 절차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허용된 재량범위에서 후속 심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심사시기에 대한 예측의 변동성을 주면서, 심사의 효율성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봄.

2. 특허심사품질

(1) FA 단축과 심사품질의 관계

- FA를 단축시키는 것은 모든 출원인들의 바람이지만 그로인해 심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음
- 또한 FA 단축을 위해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최소화되기를 원함
- 결과적으로 심사 1건당 충분한 투입시간을 확보해서 FA를 단축시킴과 동시에 최고의 심사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

(2) 심사품질 확보

- 심사관의 수는 일정하고 신청 특허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를 외부에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지만, 조사한 선행기술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함
- 더불어 외주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함

(3) 심사에 대한 기준 정립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기술은 기존기술들과 상이한 점이 크기 때문에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3. 우선심사

(1) 우선심사 확대

- 우선심사가 확대되는 것은 일반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큼.
- 우선심사 조건을 강화시키거나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전체적인 심사제도에 대한 미래지향적 로드맵 정립이 필요함.

(2) 우선풀사비율 조정을 위한 정책

-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심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심사는 일정 건수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우선심사청구 요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 우선심사신청 요건이 우선심사청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건이 많음.
- 우선심사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수용가능한 입장임. 다만 수수료의 증가가 우선심사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신속한 심사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추가의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명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우선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의 심사청구료를 유예신청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직함.
- 우선심사를 청구할 때, 심사착수시기를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나 요건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함.

4-1 화공 산업: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1.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 등록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위해
ex) 권리화, 마케팅 활용(홈쇼핑), 침해 조치, PPH, 등
- 해외 국가 진입 여부의 판단을 위해

2. 우선심사 대상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자체 선행기술 조사 제출

3. 우선심사의 효과

- 우선심사의 경우, FA 발생 시점이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심사 착수에 대해 예측 가능하며, 일반심사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등록 여부에 대한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
- 결과 확인이 특정 기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심사와 병행해서 진행

4. 우선심사와 심사처리 기간

- 현재 우선심사에 대해 일반심사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특별히 인식되지 않음.
- 다만, 점차적으로 우선심사신청건이 더 늘어난다면 일반심사에 대한 심사 지연이 체감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우선심사의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희석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심사 인력의 확충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됨.
- 우선심사 결과에 대한 권리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에 대한 등록율과 무효율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심사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현재 그렇지 않다면) 우선심사를 위한 심사관 풀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우선심사의 활용에 대한 의견 및 입장

우선심사제도를 통한 빠른 권리화는 기업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선심사신청 비용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우선심사료가 상승된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우선심사를 신청할 예정임.

4-2 화공 산업: 중소기업 (마크로젠)

1.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특허정책

(1) 심사처리기간 예측성 확보

- 출원 이후 FA 기간을 출원인이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함으로써 출원 가능 시점을 예측함으로써 이후 업무와의 연계를 수월하게 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2) 출원인 니즈 맞춤형 소통 강화 (심사제도)

- 일반 출원인들은 우선심사, 일반심사, FA 실체심사, 최종심사 등 특허와 관련된 용어들에 생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FA와 최종 심사결정기간 등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3) FA 이후 처리기간 평준화

- 심사관에 따른 FA 이후 중간심사기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심사종결기간의 예측성 확보
- 심사관이 모든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사인력 증원 또는 '선행 기술조사' 외주용역사업과 같은 효율적인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검토함.

(4) 주요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특허청과의 국제 공조 강화

- CSP 등과 같이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심사의 정확성 확대를 도모함.
- 주요국들의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재화를 추진함.

2. 우선심사의 활용에 대한 의견 및 입장

특허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요건의 확대 또는 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분야뿐만 아니라 최신기술의 적용분야에 대한 특허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확보를 통해서 최신기술들의 특허심사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함.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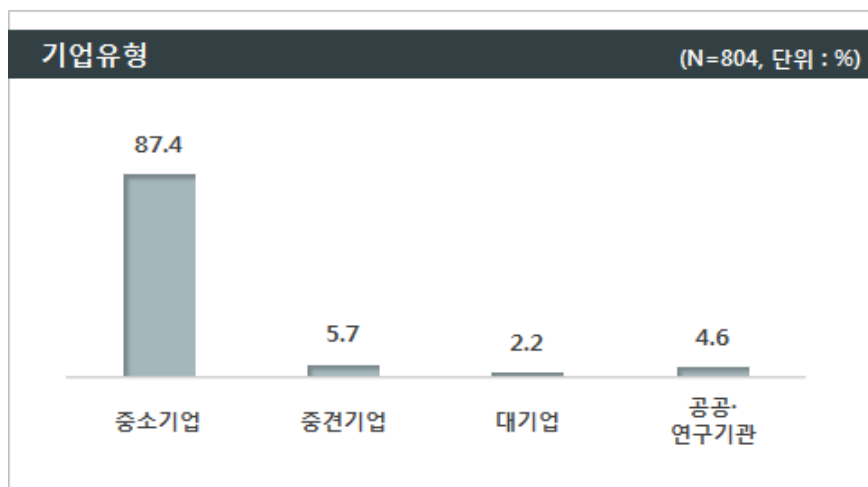
특허청의 우선심사와 일반심사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특허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추구하고, 산업별 전문성을 맞춤형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을 이용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것임.

제3장

심사프로세스에 대한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제1절 기업일반 현황

1. 기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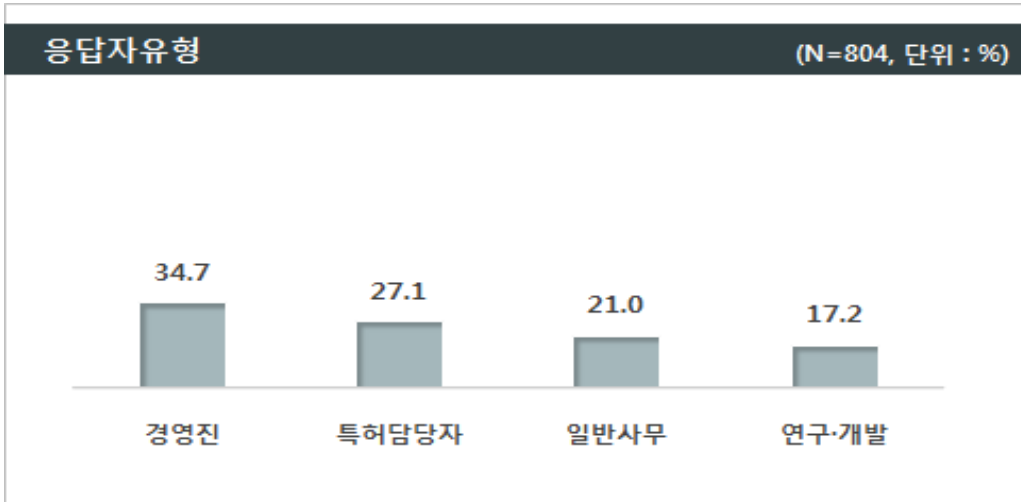


[그림 3-1] 기업유형별 분포

- 설문조사에 응답한 804개의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이 703개 기업, 중견기업은 46개 기업, 대기업은 18개 기업, 공공연구기관은 37개의 기관에서 각 각 응답함.

- 응답률로 보면 중소기업의 응답이 전체 응답의 87.4%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모집단의 크기가 중소기업이 크기도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특허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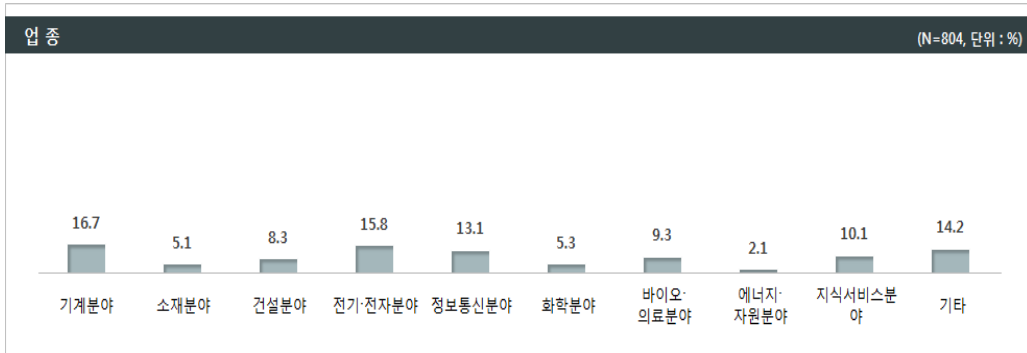
2. 응답자유형



[그림 3-2] 응답자유형별 분포

- 응답자 유형은 기업에서 경영진, 특허담당자, 일반사무자,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특허심사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식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누어 응답자의 유형에 대답하게 유도함.
 - 응답자 유형은 예상과 다르게 경영진에서 가장 많은 응답(34.7%, 279명)을 보였으며, 다음이 특허담당자가 27.1%(218명), 일반사무자가 21%(169명), 그리고 연구개발자가 17.2%(138명) 순으로 응답함.
 - 이는 전체 응답자 804개 응답자 중 중소기업에서의 응답이 703개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진들이 설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응답에 많이 참여해 주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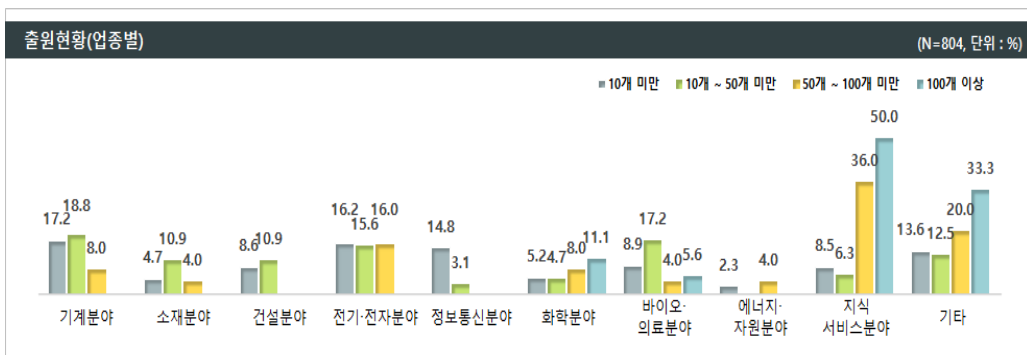
3. 업 종



[그림 3-3] 업종별 분포

- 업종별 응답 구성을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곳이 기계분야(16.7%, 134개), 전기·전자분야(15.8%, 127개), 정보통신분야(13.1%, 105개), 지식서비스분야(10.1%, 81개), 바이오·의료분야(9.3%, 75개)등의 순으로 응답함.

4. 산업별 특허출원현황



[그림 3-4] 업종별, 특허출원건수별 현황

- 산업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지식서비스분야가 100개 이상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100개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산업군도 지식서비스분야가 차지함.
- 10~50개 미만구간과 10개미만 구간에서는 기계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5. 기업유형별 특허출원현황

[표 3-1] 기업유형별, 특허출원건수별 현황

출원 건수	총건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N(804)	N(703)	N(46)	N(18)	N(37)
10개 미만	697	657(94.3%)	25(3.6%)	6(0.9%)	9(1.3%)
10~50개 미만	64	36(57.1%)	15(23.8%)	7(11.1%)	6(9.4%)
50~100개 미만	25	5(20%)	6(24%)	4(16%)	10(40%)
100개 이상	18	5(31.3%)	0.0	1(6.3%)	12(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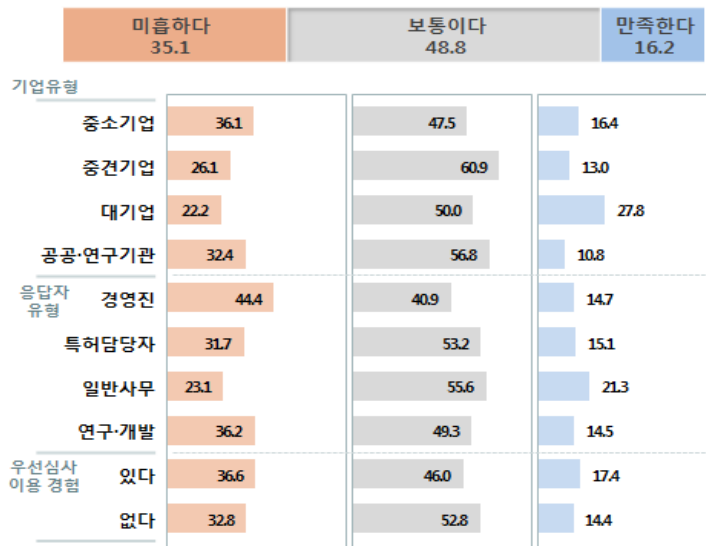
*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 출원건수 구간별 총건수 대비 각 기업유형의 비율을 의미함

- 조사된 기업의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0개미만의 출원을 신청한 기업이 697개 기업이었고, 10~50개미만이 64개 기업, 50~100개미만이 25개 기업, 100개 이상이 18개 기업으로 나타남.
- 이를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703개)과 중견기업(46개)은 10개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각 각 657개와 25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대기업(18개)은 10~50개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은 7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37개)은 가장 높은 구간이 100개 이상에서 가장 많은 응답기관(12개)을 보여 특허출원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 가장 낮은 출원 건수 구간이 10개 미만의 구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중에 94.3%가 응답하여 다른 기업유형보다 특히 10개미만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타나냄.
 - 이는 중소기업은 기업별로 그 기업에 특화된 특허의 가치가 높고 이에 대한 투자가 집중이 되어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확보에만 특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기초과학을 통한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히 특허출원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특허를 선점하려는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으며, 기술의 상업화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특허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됨.

제2절 특허심사과정 만족도

1. 심사대기기간

(1) 기업유형별 및 응답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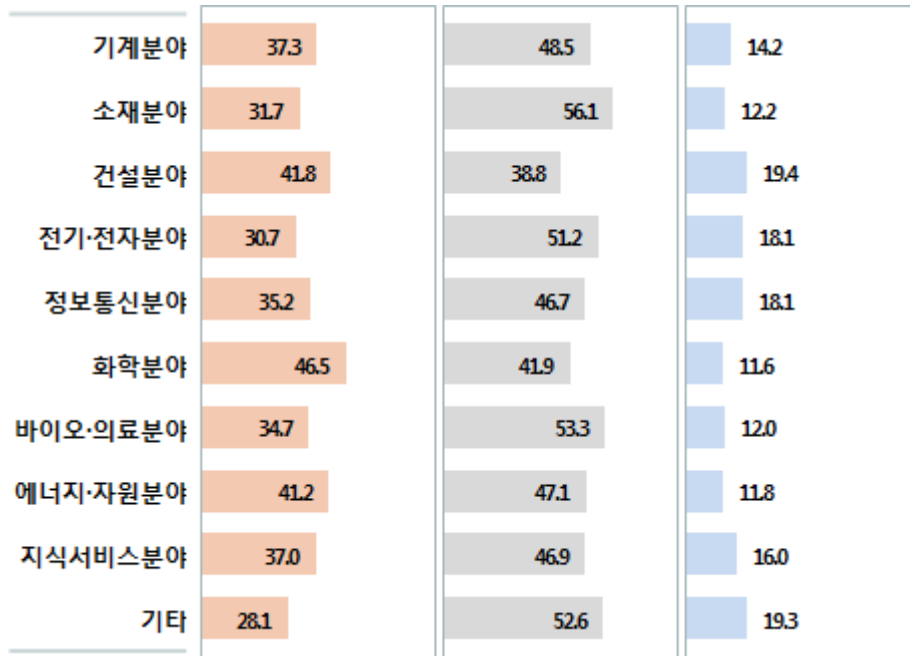


[그림 3-5] 심사대기기간 만족도

- 심사대기기간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48.8%(39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미흡하다’가 35.1%(282개), ‘만족한다’가 16.2%(130개)로 나타남.
 - 가장 응답이 높았던 유형인 중소기업(703개)을 보자면 ‘보통이다’가 47.5%(33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미흡하다’가 36.1%(254개), ‘만족한다’가 16.4%(115개)로 나타남.
- 흥미로운 결과는 응답자유형별 분석에서 경영진(279명)의 응답만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46.4%(124명)로서 ‘보통이다’라는 응답(40.9%, 114명)보다 유일하게 높게 나타남.

- 이는 심사업무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회사원보다 경영진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서 회사이익을 빠르게 실현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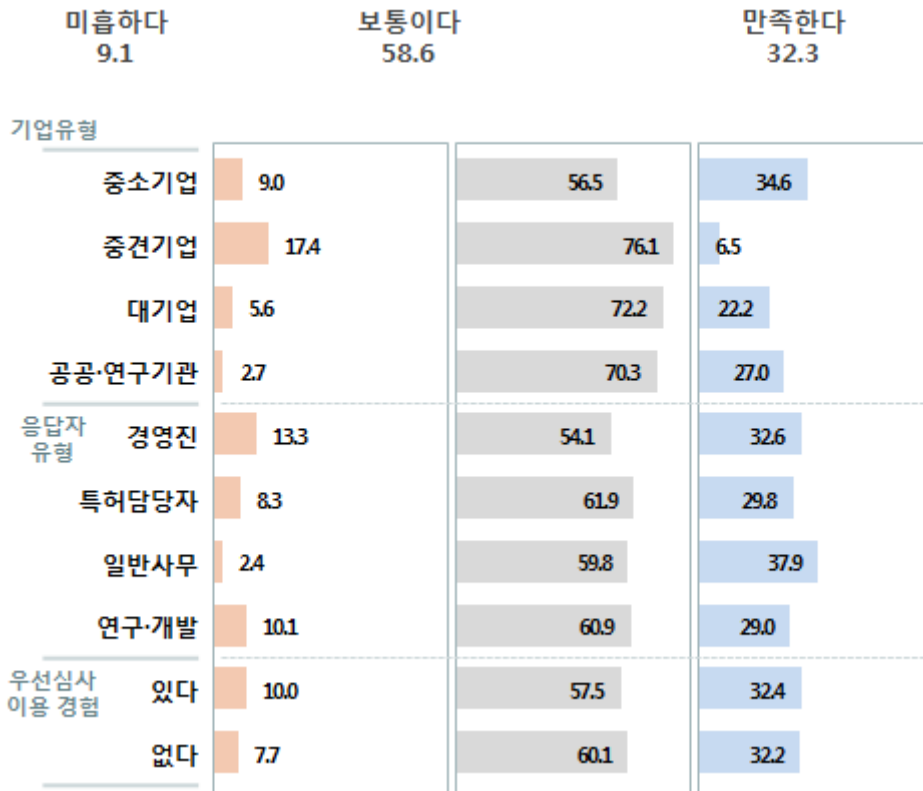


[그림 3-6] 산업유형별 심사대기기간 만족도

- 10개 산업으로 분류한 응답에 대한 결과를 보면 화학분야와 건설분야 만이 심사 대기기간에 대한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고, 나머지 모든 산업분야에서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음
- 이는 화학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한 심사대기기간의 불만족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서 특히 화학분야는 ‘보통이다’와의 차이가 5%이상으로서 3%차이가 난 건설분야 보다도 더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2. 심사결과의 정확도

(1) 기업유형별 및 응답자유형별



[그림 3-7] 심사결과 정확성 만족도

- 심사결과의 정확도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32.3%로 ‘미흡하다’ 9.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까지 합할 경우 90%가 넘는 90.9%로서 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중소기업’이 34.6%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견기업이 ‘미흡하다’의 응답률이 17.4%로서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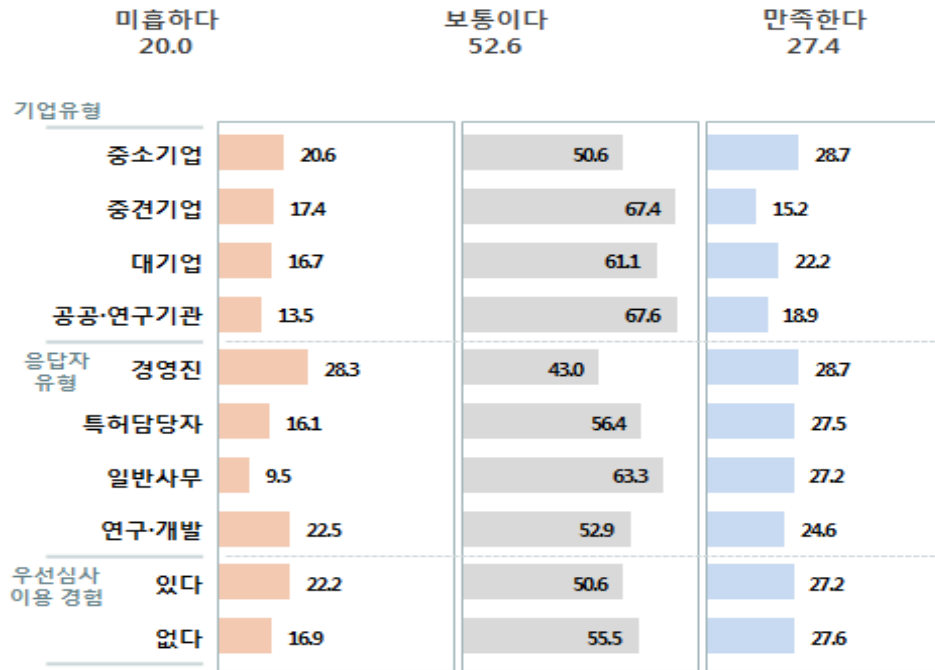


[그림 3-7] 심사결과 정확성 만족도

- 산업별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산업분야는 ‘에너지·자원분야’로서 ‘만족한다’의 답변이 41.2%로 가장 높았고 ‘미흡하다’는 의견이 없는 유일한 산업부문이었음.
 - 전 산업분야에서 보통이사의 답변이 모두 80%를 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는 답변이 많았던 산업분야는 소재분야(19.5%)로 나타남.
- 이 결과를 통해 출원 경험이 있었던 수요자들은 현 심사품질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한정되어 있는 심사관들의 심사품질이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분야별로도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답변이 산업 부분 전반적으로 최소 80% 이상 나타남.

3. 심사관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

(1) 기업유형별 및 응답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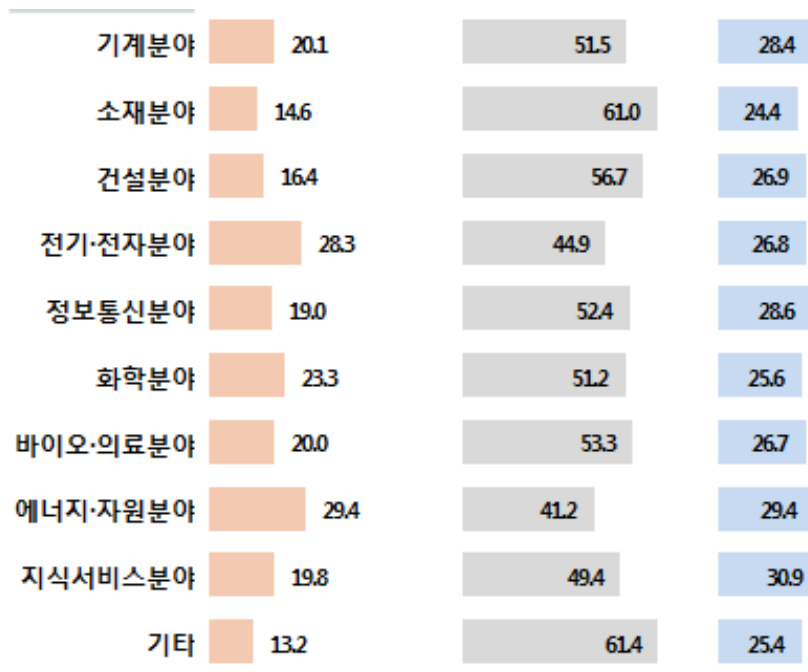


[그림 3-9] 고객소통 만족도

- 심사관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27.4%로 ‘미흡하다’ 2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까지 고려할 경우 80%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8.7%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도 20.6%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음.
 - 중소기업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의 ‘보통이다’에 대한 답변은 모두 60%를 넘었으나, 가장 많은 설문 참여유형인 중소기업에서 ‘보통이다’는 50.6%로 10% 이상 차이가 났음.
 - 이는 심사과정의 상담과 소통에 대해 중소기업군은 상대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에 대한 극명한 차이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접근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함.

- 응답자 유형을 보면 ‘경영진’에서 ‘만족하다’에서는 28.7%로, ‘미흡하다’에서는 28.3%로서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일반사무직의 경우가 ‘미흡하다’가 9.5%로 가장 낮은 불만족도를 보여줌.

(2) 산업유형별



[그림 3-10] 산업유형별 고객소통 만족도

- 산업유형별로는 지식서비스분야가 가장 높은 만족도(30.9%)를 보였고, 보통이상의 응답률을 보았을 때는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소재분야가 85.4%로서 유일하게 보통이상의 응답이 85%를 넘긴 산업분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미흡하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에너지자원분야로서 29.4%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28.3%가 응답한 전기전자 분야로서 에너지자원분야의 불만족도 비율과 1.1%만 차이가 나타남.
- 심사과정 중 고객과의 면담 및 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기업유형별, 응답자유형별, 산업유형별로 모두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유형에서 만족도도 높은 응답을 보임.

- 심사프로세스에 대한 만족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운데 그룹인 '보통이다'를 답변한 이용자들에 대한 니즈와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적용해야 할 것임

4. 출원청구 수수료

(1) 기업유형별 및 응답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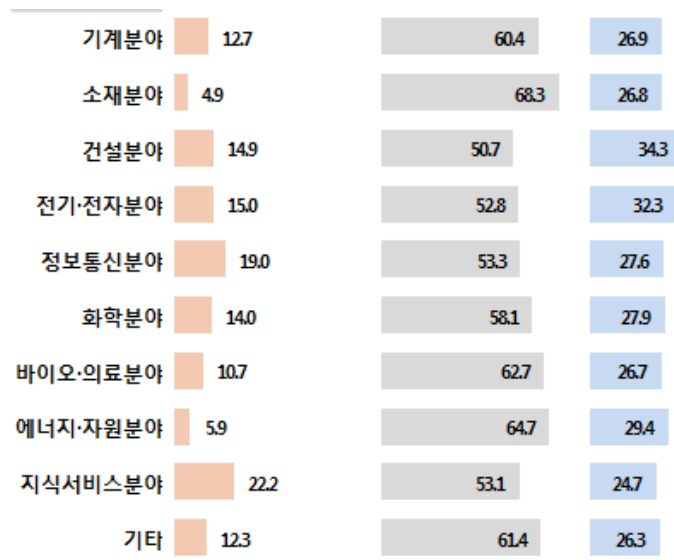


[그림 3-11] 출원청구 수수료 만족도

- 출원·청구료 등 수수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28.2%로 '미흡하다' 14.3%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의 57.5%까지 합할 경우 85.7%로 나타남.
 - 이는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일반 수요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유형별로 분석하면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응답한 유형은 중소기업 (29.2%)이었으며, '미흡하다'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기업유형은 대기업 (16.7%)이었음.

- 수수료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한 두 번째로 높은 기업유형은 중소기업(14.7%)으로서, 이는 중소기업군이 수수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임.
- 불만족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응답비율차이는 2%정도 근소한 차이이나, 중소기업의 응답모집단은 703개이고 대기업의 응답모집단은 18개로서 중소기업의 결과의 신뢰도가 높음.
- 응답자 유형에 대해 분석해 보면 '특허담당자'에서 30.7%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경영진이 '미흡하다'의 응답비율이 18.3%로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함.
- 이는 기업의 이익에 항시 주시하고 있는 경영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의 경우 주의 깊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유형별



[그림 3-12] 산업유형별 출원청구 수수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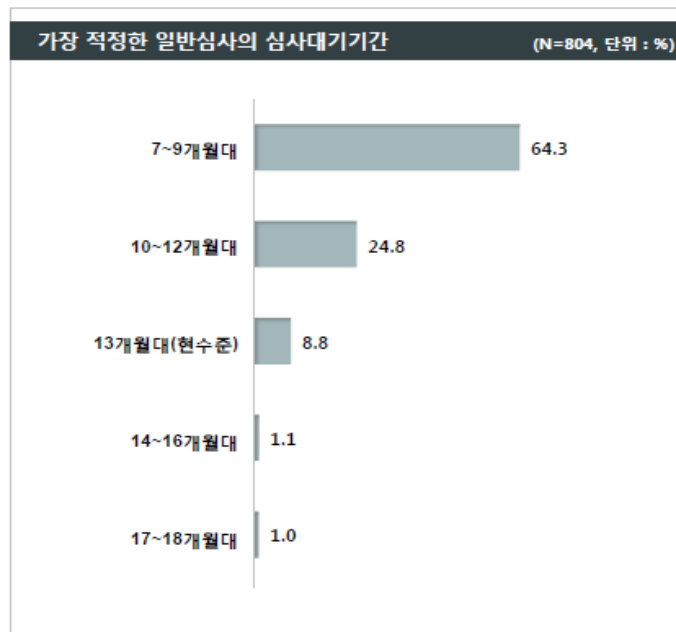
- 수수료의 만족도에 대한 산업유형별 결과를 보면 건설분야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다'의 응답은 지식서비스분야에서 24.7%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전 산업분야에서 25%이상 만족도를 나타냄.

- 수수료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한 가장 높은 산업분야는 지식서비스분야로서 이 분야는 '만족한다'는 응답도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출원수수료 금액에 대해 부적절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으며 산업별 수수료 책정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제3절 특허심사품질

1. 적정특허심사 대기기간

(1) 적정 심사대기기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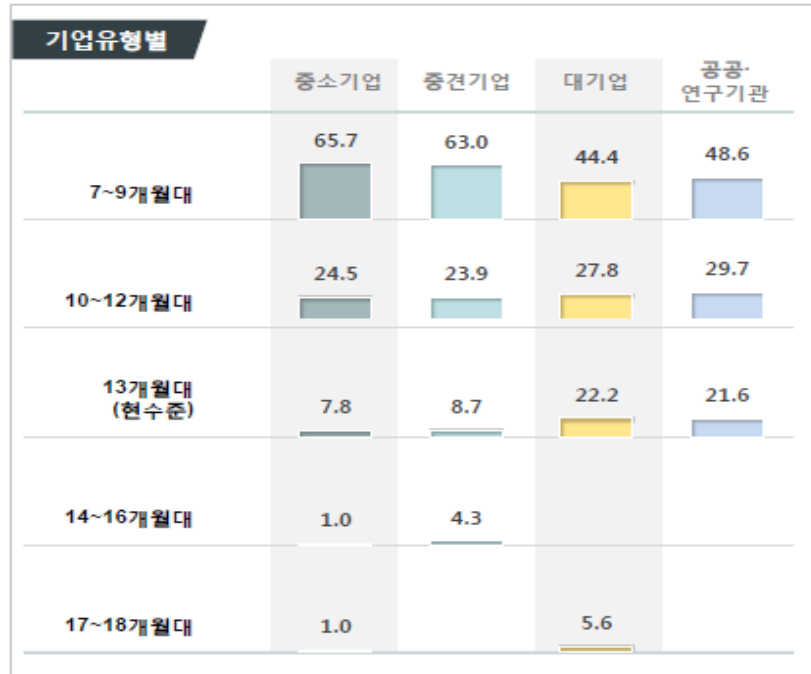


[그림 3-13] 적정 심사대기기간

- 가장 적절한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으로 '7~9개월 대'라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문항의 경우 기업체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답변을 찾을 것이고 나와 있는 답변 중 심사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1번답변인 7~9개월을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설문조사의 함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 응답자들이 객관식 문항에 대해 응답집단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이는 경제학의 '죄수의 딜레마'와도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즉,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선택한 개인의 최적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임.

(2) 적정 심사대기기간 (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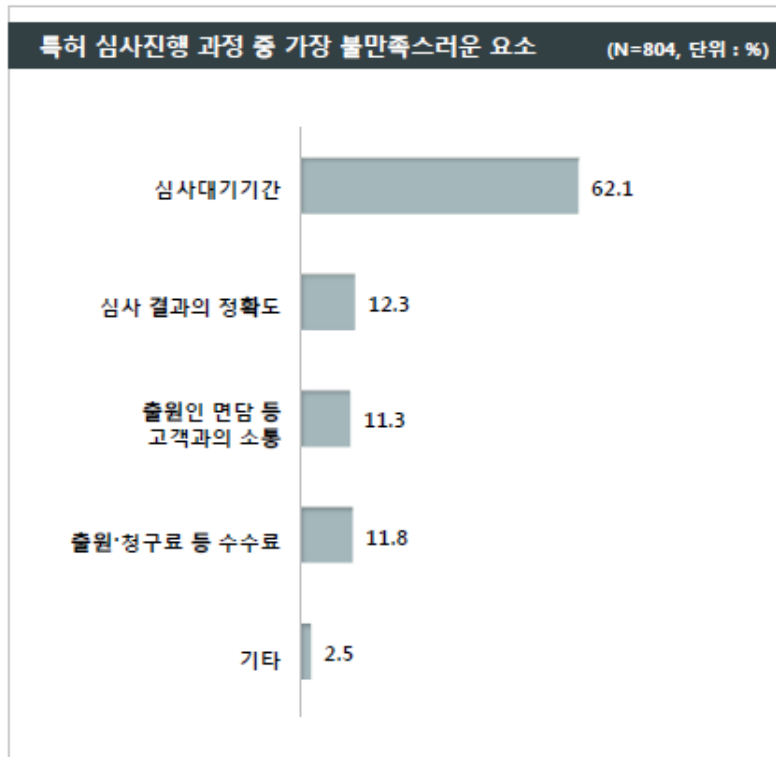


[그림 3-14] 기업유형별 적정 심사대기기간

- 흥미로운 점은 기업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가장 짧은 '7~9개월'에 대한 답변이 모두 60%를 넘긴 반면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모두 40%대로서 과반이 넘지 않게 나타난 점임.
 - 이는 대기업 군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전략적 특허권 확보에 있어서 에서 가장 짧은 심사 대기기간보다는 두 번째로 높은 10~12개월(20%대)나 현 수준인 13개월 수준이 가장 최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 두 유형의 경우는 오히려 가장 짧은 7~9개월보다 그 이상의 대기기간이 과반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10~12개월이 20%대로 나타남.

2. 심사 중 불만족 요소

(1) 심사진행 중 불만족스러운 요소 (전체)



[그림 3-15] 심사과정 불만족 요소

- 특히 심사진행 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심사 대기기간’이라는 의견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나머지 ‘심사결과의 정확도(12.3%)’, ‘출원인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11.3%)’, 출원 청구료 등 수수료(11.8%)’의 불만족 비율은 10% 초반대로 비슷하게 나타남.
- 심사진행과정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 국한하여 불만족도를 문의한 것으로서 그 중에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설적으로 분석해보면 나머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심사정책포럼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심사대기기간은 주요국들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심사기간의 신속함이 필요로 하는 특허 출원 신청자들은 우선심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음.
 - 이다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우선심사 프로세스가 일반심사화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강제성이 필요할 때임
- 특허심사정책포럼에서 나왔던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불만은 심사대기기간의 짧게 길고가 아니라 심사대기기간 및 등록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 지에 대해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출원된 건에 대해 심사대기기간과 최종 특허승인까지의 기간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수요자들이 원할 경우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함.

(2) 심사진행 중 불만족스러운 요소 (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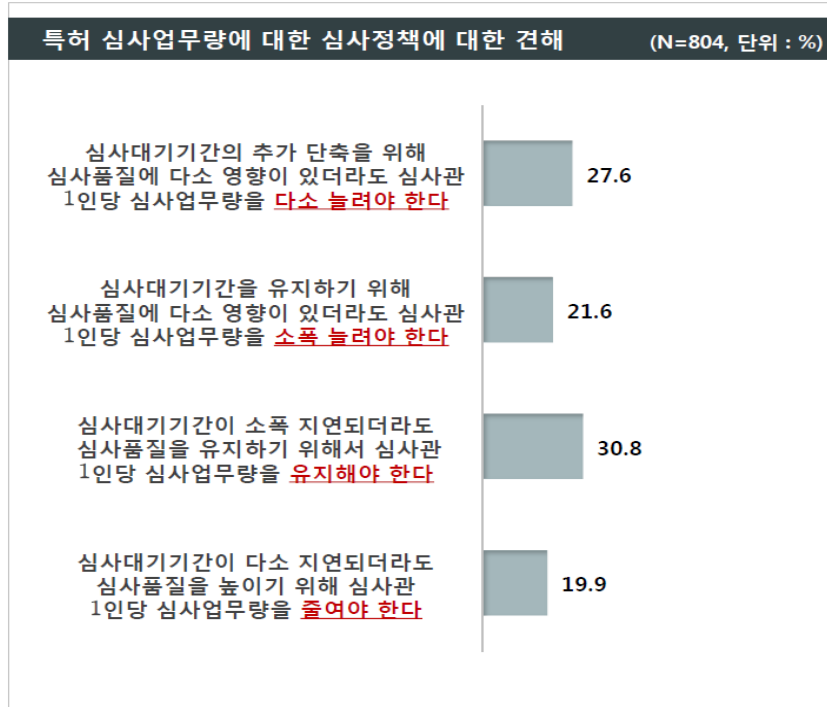
[그림 3-16] 기업유형별 심사과정 불만족 요소

- 기업유형별로 보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요소 중 가장 높게 응답한 비율이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응답이었음.
 - 이다 대기업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불만족 요소가 38.9%로서 유일하게 40%가 안 되게 응답하였고, 나머지 '심사결과의 정확도' 및 '출원인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이 22.2%, '출원·청구료 등 수수료'가 11.1%등 나머지 응답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응답률을 보였음.
- 가장 많은 응답 군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불만족 요소에 대한 답변이 다른 기업유형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63.7%).
 - 이는 매출과도 직결되는 특허에 대해 조속한 권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심사기간에 대한 불만족도등이 포함된 의견으로 사료됨.

3. 특허 심사업무량에 대한 심사대기기간 적정성

(1) 특허 심사업무량과 심사대기기간 (전체)

- 특허 심사업무량에 대한 심사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업무량을 유지 및 줄여야 한다는 두 의견을 합해보면 50.7%로서 과반수이상 나타남.
- 이 문의에 대한 예상답변은 첫 번째 답변 '심사대기기간의 추가 단축을 위해 심사품질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다소 늘려야 한다.'로 예상했으나, 세 번째 답변인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가 약 3% 높게 나타남으로서 심사를 청구한 실질적인 수요자들도 이제는 심사기간보다는 심사품질의 유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17] 심사품질과 심사업무량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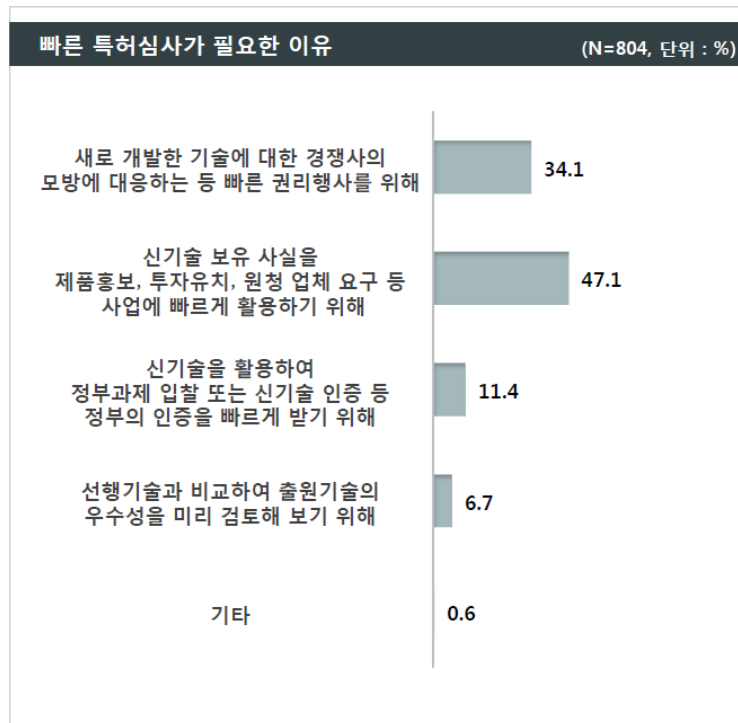
- 이는 향후 심사정책에 있어서 심사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심사품질 향상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함.

(2) 특허 심사업무량과 심사대기기간 (기업유형별)

- 전체적인 답변에서 예상과 다른 답변의 결과에 대해 세부분석을 위해 기업유형별로의 의견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해서 심사업무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심사품질 유지를 위해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답변과 세 번째 답변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21.6%차이가 발생함 .
 - 이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유형은 가장 많은 답변을 한 중소기업으로서 1.8%만이 차이가 나타남.

4. 빠른 심사가 필요한 이유

(1) 빠른 특허심사의 필요성 (전체)



[그림 3-18] 빠른 특허심사의 필요성

- 빠른 특허심사가 필요한 이유로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 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라는 의견이 34.1%로 이어서 높게 나타남.
- 첫 번째 응답은 결국 기업체의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기업의 최종목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의 사유도 지식재산권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경쟁기업보다 먼저 독점적인 위치를 자리 잡기 위한 것임.

(2) 빠른 특허심사의 필요성 (기업유형별)

기업유형별	기업유형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32.7	47.8	50.0	35.1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 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	49.4	26.1	22.2	43.2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과제 입찰 또는 신기술 인증 등 정부의 인증을 빠르게 받기 위해	11.9	6.5	5.6	10.8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기술의 우수성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	5.5	17.4	16.7	10.8
기타	0.4	2.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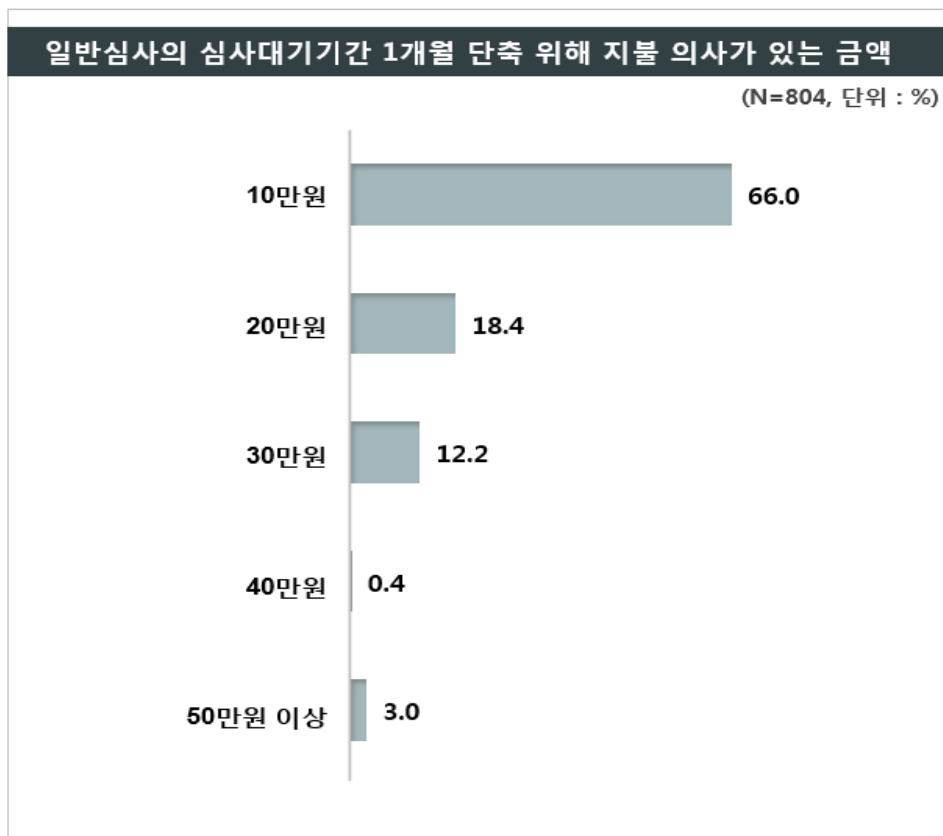
[그림 3-19] 기업유형별 빠른 특허심사의 필요성

-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전체결과와 동일하게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 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에 대한 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술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기업의 매출증진을 도모하려고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신기술의 조속한 상업화 및 기술이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반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는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와 같이 조속한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사유로 응답함.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조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향후 창출 부가가치에 대한 조속한 권리화를 추구함.

5.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지불의사

(1) 일반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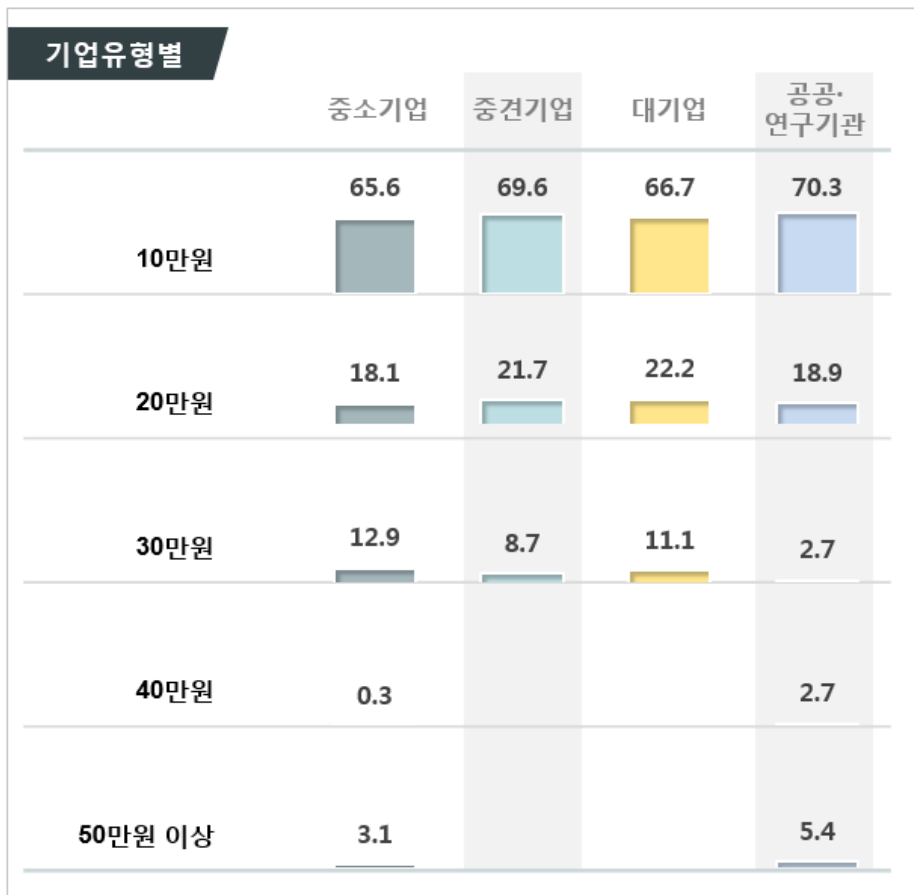


[그림 3-20] 일반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에 대한 지불가능 금액

-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권리화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심사대기기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관을 늘려나가는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함.
- 이러한 배경 속에 과연 수요자들은 심사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조사해 봄.
- 결과를 보면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 위해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10만원'이라는 의견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만원'이 18.4%, '30만원'이 12.2%로 나타남.
 - 이는 설문조사 객관형문형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그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답변을 선택하는 것임.
 -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의 답변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반해, 2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까지 지불의사가 있는 답변이 총 34%로서 20만 원 이상이 18.4%, 30만 원 이상이 12.2%로 나타남.
- 이 결과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분석해 보면 심사기간 1개월 단축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즉 현 심사기간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요인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 심사기간 정도를 줄이고 싶기는 하지만 굳이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까지 줄이고자 하는 동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함.

(2) 일반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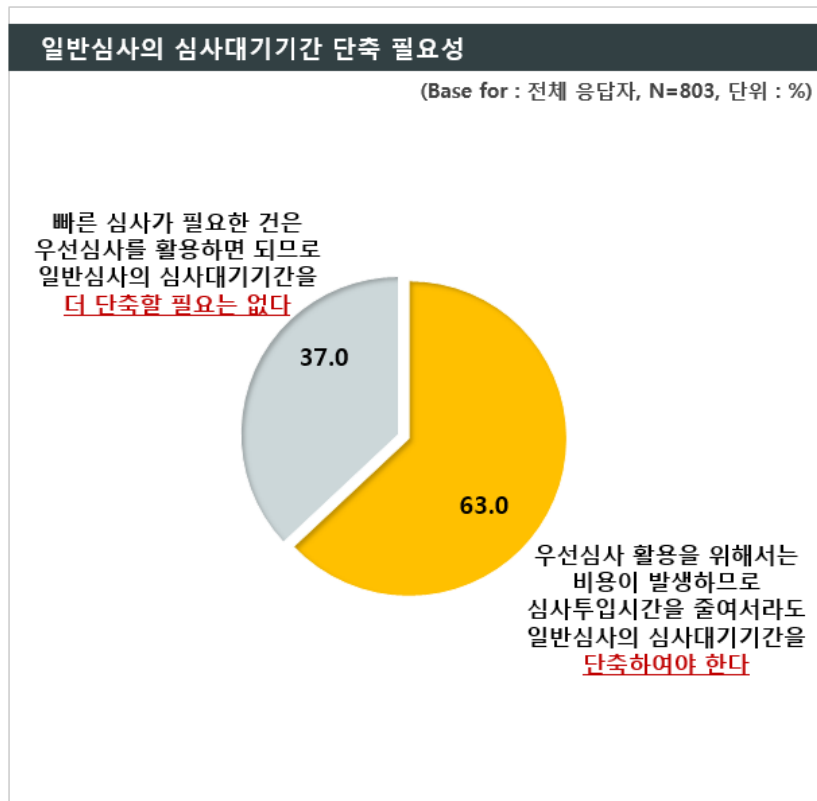
- 기업유형별로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모든 기업유형에서 비슷한 수치(65.6% ~70.3%) 로 10만 원 이하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 가장 많은 조사모집단이 있는 중소기업의 결과가 전체결과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10만 원 이하(70.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20만원이 18.9%로서 두 응답을 합한 비율이 89.2%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3-21] 기업유형별 일반심사대기기간 1개월 단축에 대한 지불가능 금액

6. 심사대기기간 단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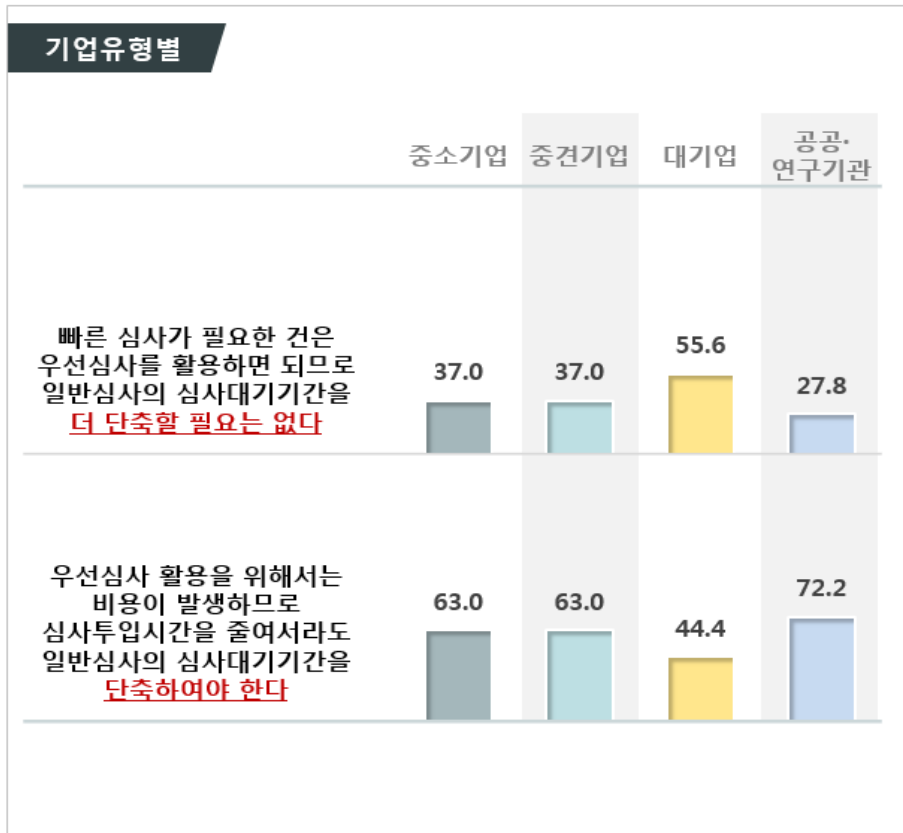
(1) 일반의 심사대기기간 단축 필요성 (전체)



[그림 3-22] 우선심사와 일반심사대기기간 단축의 대체성

- 우선심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일반심사 심사대기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우선심사 활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심사투입시간을 줄여서라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3.0%로서 예상대로 더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이는 다음 장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참고 바람.

(2) 일반의 심사대기기간 단축 필요성 (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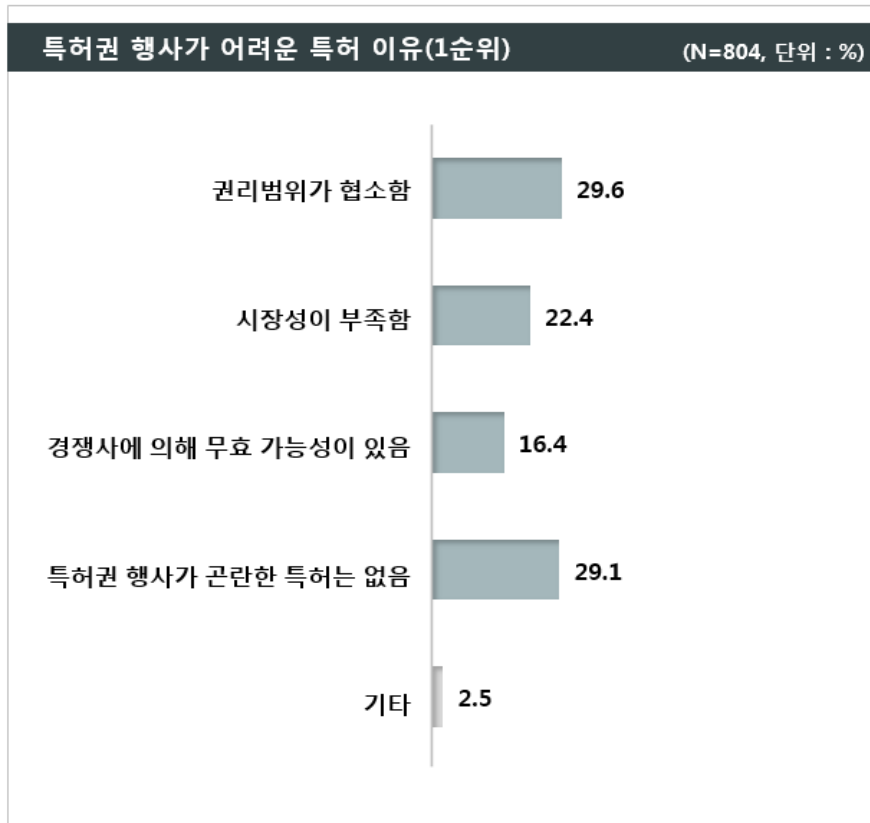


[그림 3-23] 기업유형별 우선심사와 일반심사대기기간 단축의 대체성

- 기업유형별로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결과는 대기업 군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임.
 - 결과를 보면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것은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되므로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55.6%로서 ‘우선심사 활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심사투입시간을 줄여서라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 44.4%보다도 높게 응답함.
 - 이는 설문조사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실질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 군에서는 일반심사의 과중한 업무를 유도하여 심사결과물에 대한 질적인 하락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7. 특허권 행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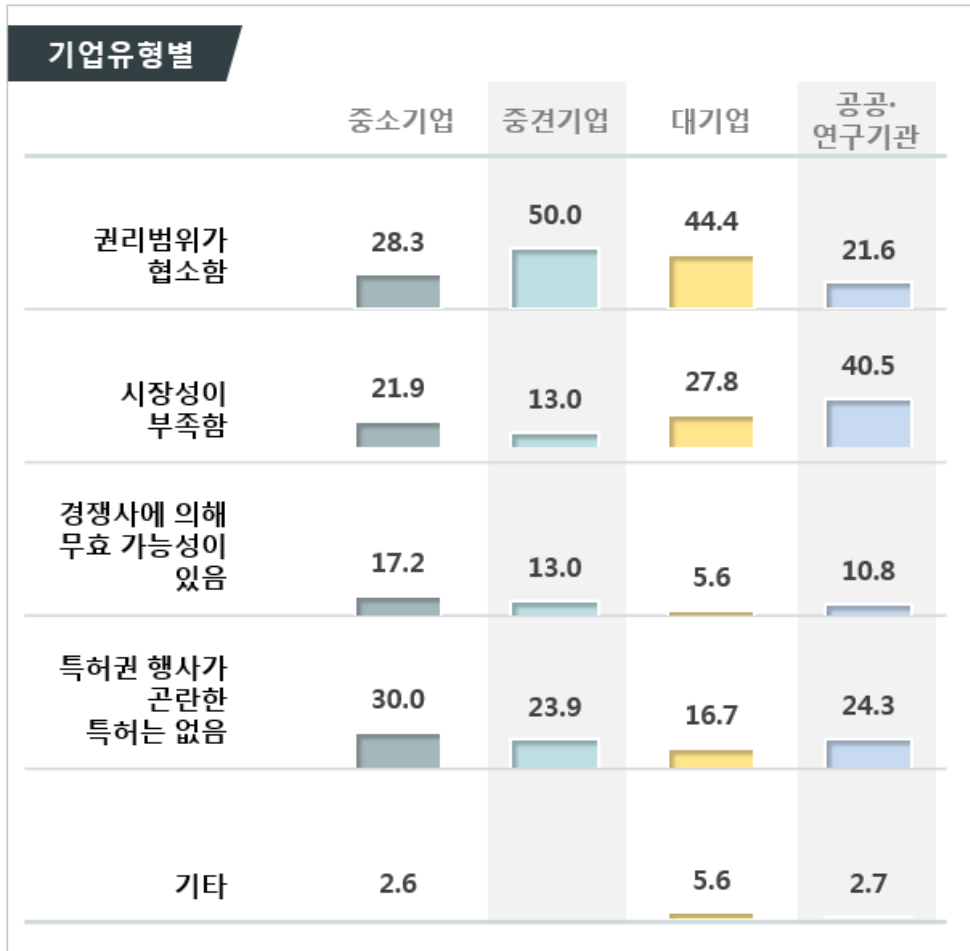
(1)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 (전체)



[그림 3-24]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

-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특허 이유로 ‘권리범위가 협소함’이 29.6%로, 이어서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특허는 없음’이란 의견이 29.1%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 첫 번째 높은 사유와 두 번째 높은 사유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서 두 번째 응답인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특허가 없음’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화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첫 번째 사유인 ‘권리범위가 협소’하다는 경우에 대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 (기업유형별)



[그림 3-25] 기업유형별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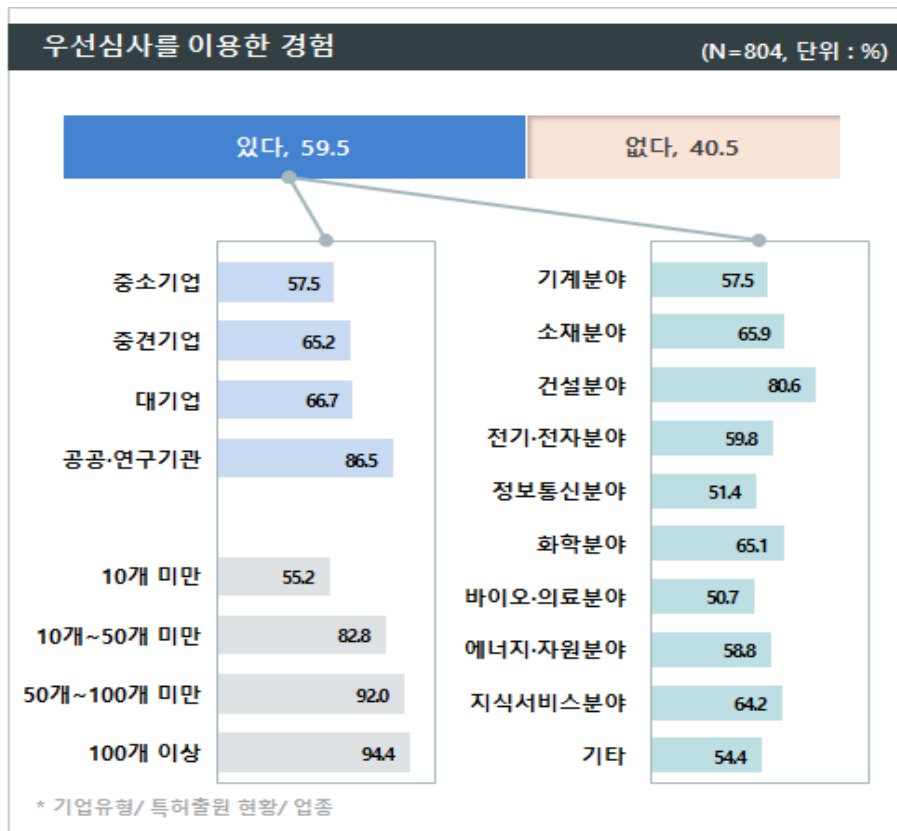
- 이를 기업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체응답에서는 에서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던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특허가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중견기업과 경우는 ‘권리범위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과반이상(50%)로서 다른 기업 유형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는 ‘권리범위가 협소함’이 가장 높게는 나타났으나, 두 번째 응답이 ‘시장성이 부족함’이 27.8%로서 부각됨.
 - 이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권이 상업화로 이루어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기업유형들 중에 유일하게 ‘시장성이 부족함’이 가장 높은 응답률(40.5%)을 보임.
 -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기초과학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시장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임
-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은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서의 특허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제4장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수요자 설문 조사 분석

1. 우선심사를 이용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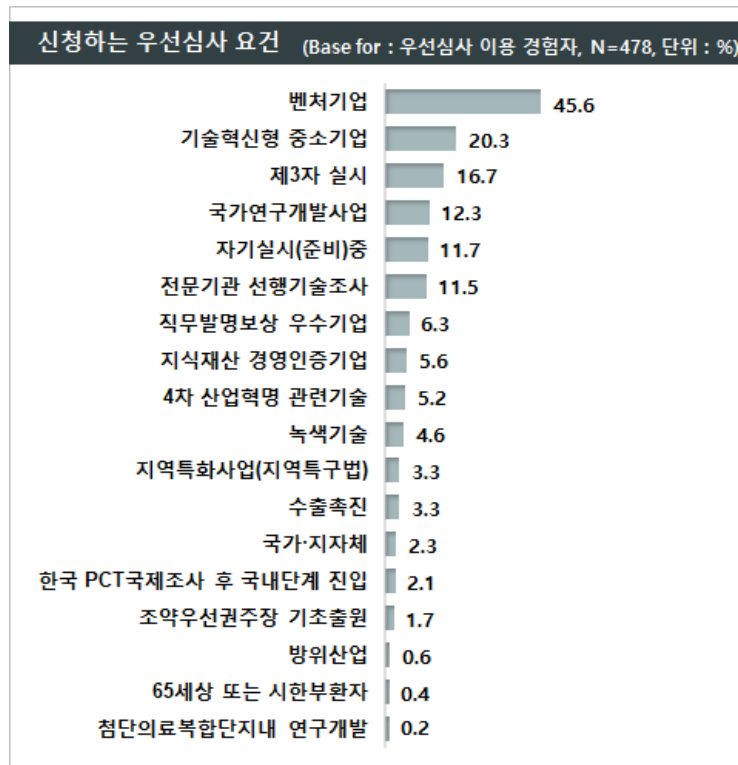
[그림 4-1] 우선심사제도 이용 여부

- 우선심사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는 응답이 59.5%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출원별로 살펴보면 '100개 이상'에서 94.4%,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에서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공공연구기관에서 86.5%가 우선심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고, 다음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이었음.

2.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

(1) 응답별 결과



[그림 4-2] 우선심사 신청 요건

-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으로 ‘벤처기업’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3%, ‘제3자 실시’가 16.7%,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로 기업의 특성이 우선심사신청 요건에 맞아서 신청하는 경우로서 벤처기업(45.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20.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6.3%),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5.6%)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총 77.8%에 달함.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적으로 신속심사의 기회를 넓혀 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로 인한 우선심사는 5.2%에 그침.
- 따라서 우선심사 비율을 정책적으로 조정을 위해서는 기업특성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었던 것들을 조정하여 우선심사 비율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업유형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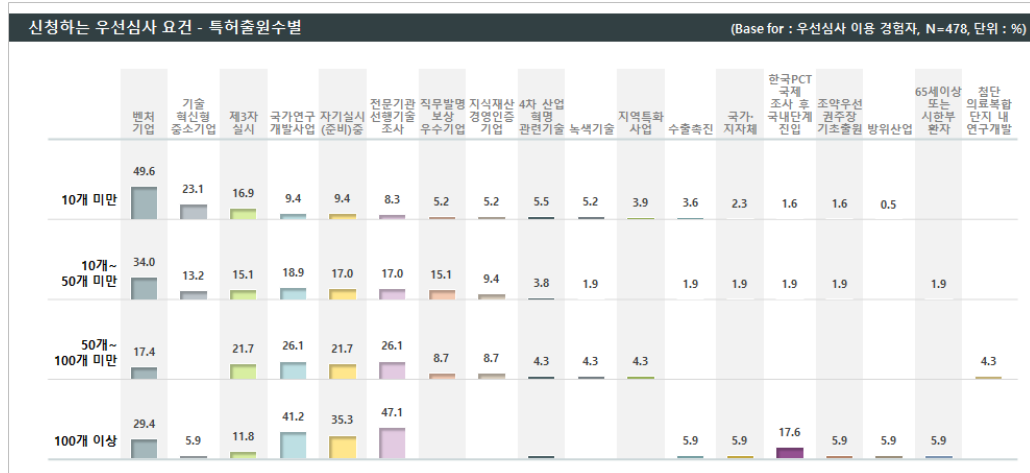


[그림 4-3] 기업유형별 우선심사 신청 요건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본 문항에 대해서는 각 기업유형별로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결과가 반영이 됨
-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결과의 순위가 비슷하게 ‘벤처기업’이 52.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22.8%)’, ‘제3자 실시(15.8%)’ 순으로 나타남.
 - 이다 전체 순위에서는 4위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순위가 ‘자기실시(준비)중(11.1%)’과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8.9%)’에 밀려 6위로 내려감.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특성에 따른 조건을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가지고 리스크는 있지만 사업을 도모하기 시작한 벤처기업들이 그 조건을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의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근소한 차이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26.7%로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제3자실시'가 20%,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6.7%, '자기실시(준비)중'이 13.3%의 순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은 기술우수기업들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중소기업보다는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사업화가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함
- 대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준비)중'이 50%로서 과반을 달성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제3자실시'가 41.7%로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33.3%로서 세 번째로 높은 조건으로 나타남.
 -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국가연구개발사업(8.3%)'이 외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조건에 답한 경우는 없었음.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앞서 세 기업유형에서 낮은 조건으로 나타났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반이상인 56.3%로서 매우 높은 사유로 나타났고, 다음이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21.9%)', '제3자실시(15.6%)', 벤처기업(9.3%) 순으로 나타남.
 - 공공연구기관은 기관의 성격상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등에 많이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통해 우선심사를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3) 특허출원수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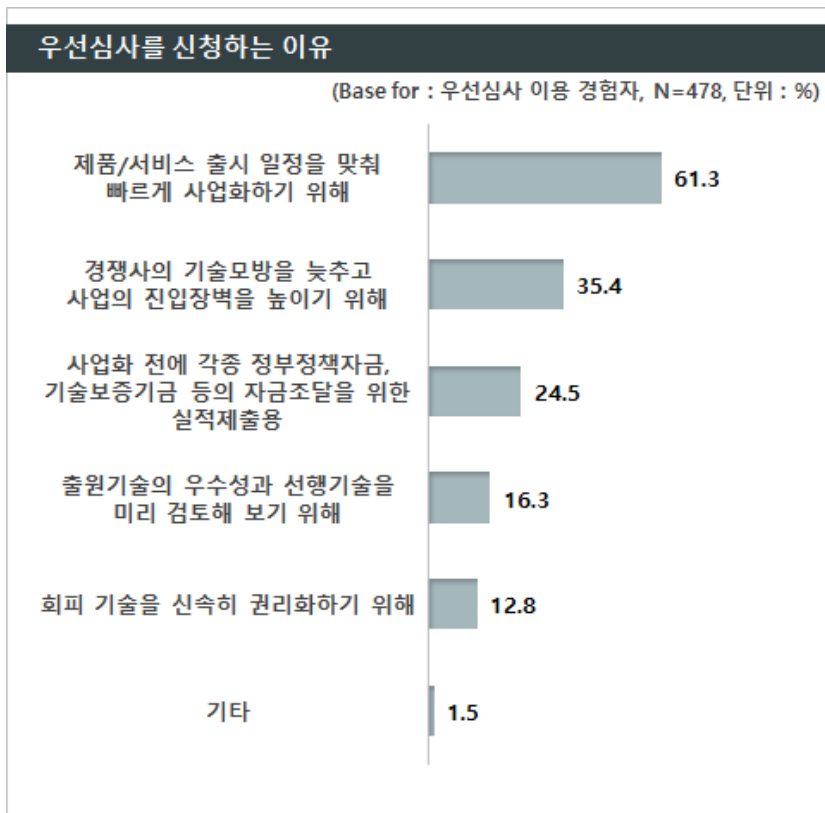
[그림 4-4] 특허출원건수별 우선심사 신청 요건

- 우선심사 요건에 대해 특허출원수별로 분석을 해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이 특허출원수가 낮을수록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기실시(준비)중’,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의 경우는 특허출원수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10개 미만의 특허출원수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앞에서 기업유형별로 분석한 내용 중 중소기업유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벤처기업’의 경우가 가장 높은 49.6%를 보이고 다음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3.1%로 두 번째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특허출원수가 10개 미만임을 알 수 있음.
- 10~50개 미만의 경우 ‘벤처기업’이 34%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가연구개발사업(18.9%)’, ‘자기실시(준비)중(17%)’,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17%)’, ‘제3자 실시(15.1%)’의 순으로 나타남.
- 50~100개 미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각 각 26.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3자실시’와 ‘자기실시(준비)중’이 각 각 21.7%로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100개 이상의 경우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가 47.1%로서 가장 높은 조건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41.2%나타났으며 세 번째로 자기실시(준비)중이 35.3%로 나타남.
- 특이한 점은 ‘한국PCT 국제조사후 국내단계진입’에 대한 조건이 대부분 100개 이상의 출원을 신청한 기업(17.6%)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이는 앞선 기업유형에서 공공연구기관(12.5%)과 중견기업(6.7%)에서 답한 기업들이 대부분 100개 이상의 출원을 신청한 것임을 도출할 수 있음.

3.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

(1) 응답별 결과



[그림 4-5]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로 ‘제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맞춰 빠르게 사업화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쟁사의 기술모방을 늦추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가 35.4%로 높게 나타남.
- 그런데 정부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등 자금조달을 위한 실적 제출용이라는 답변이 세 번째로 높은 24.5%로서 긴급 처리의 필요성이 빠른 사업화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곧 실적제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빠른 사업화를 위한 필수사항이고 기업들이 빠른 권리화를 위해 우선심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임

(2) 기업유형별 결과

기업유형별	기업유형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제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맞춰 빠르게 사업화하기 위해	65.1	36.7	66.7	34.4
경쟁사의 기술모방을 늦추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36.6	36.7	50.0	12.5
사업화 전에 각종 정부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실적제출용	25.5	16.7	8.3	25.0
출원기술의 우수성과 선행기술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	13.4	33.3	41.7	28.1
회피 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하기 위해	11.6	26.7	33.3	6.3
기타	0.7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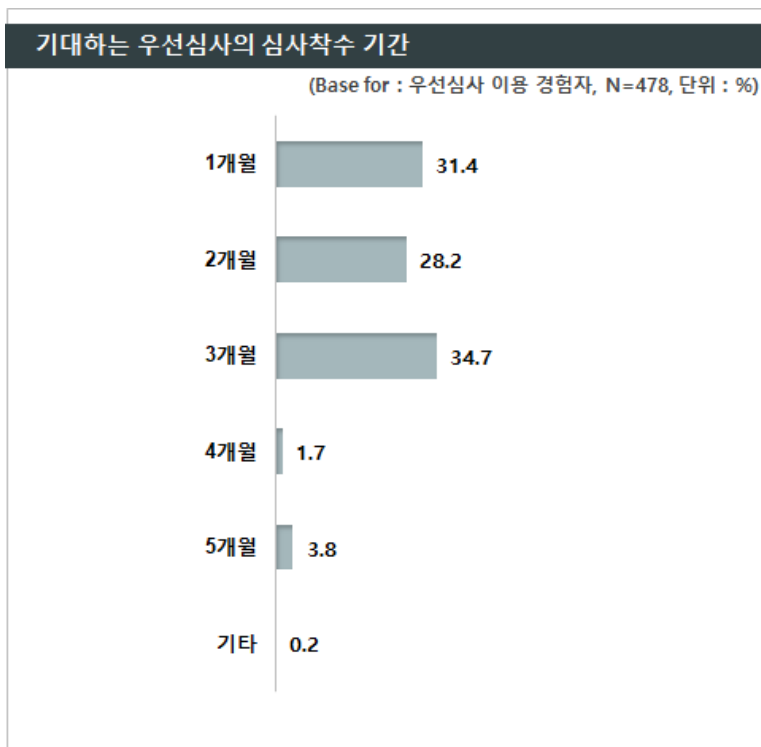
[그림 4-6] 기업유형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

- 모든 기업유형에 걸쳐서 ‘제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맞춰 빠르게 사업화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각종 정책자금을 받기위한 실적 제출용으로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서 높게 나타남.

- 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도 25%로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실적을 통해 해당기관의 예산 심사 등에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임.
-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두 번째 응답이 '경쟁사의 기술모방을 늦추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 응답은 '출원기술의 우수성과 선행기술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로 나타남.
-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세 번째의 우선심사 신청사유로 밝힌 '자금조달 및 실적 제출'과 관련된 응답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4. 기대하는 우선심사 심사착수 기간

(1) 응답별 결과



[그림 4-7] 기대하는 우선심사 착수기간

- 기대하는 우선심사의 심사착수 기간으로 '3개월'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개월'이 31.4%, '2개월'이 2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의 특성상 심사기간이나 심사관련 비용 등의 질문을 객관식으로 문의할 경우 보통 가장 짧은 기간이나 가장 적은 비용에 대해서 높은 답변율을 보이는 바 이번 문의에 대해서도 가장 짧은 1개월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3개월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으로서 설문조사 응답에 있어 실질적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개월 수에 응답한 것으로 유추됨

(2) 기업유형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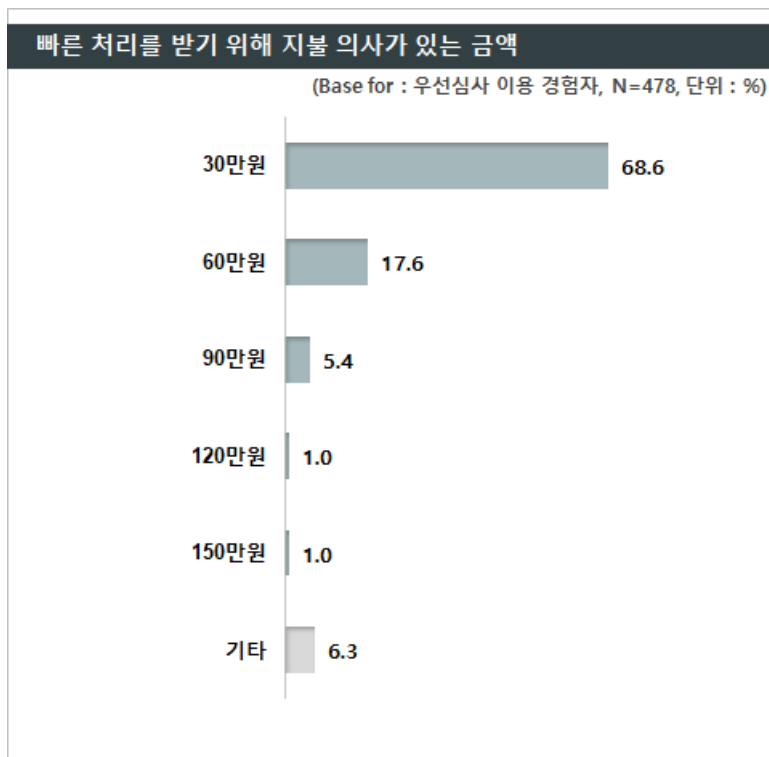
[그림 4-8] 기업유형별 기대하는 우선심사 착수기간

- 기업유형별로 보면 그러한 설문조사의 특성을 더욱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소하게 1% 앞서기는 하지만 1개월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3개월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도 1% 차이로 3개월에 대한 답변이 두 번째로 높게 응답했고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2개월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월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이라는 답변이 오히려 세 번째로 내려감
- 우선심사 심사착수기간에 대해 1개월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과 다르게 실수요자들은 3개월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으로서, 실질적으로 우선심사로 인해 권리화가 되는 특허에 대해 너무 빠른 것보다는 3개월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그 기간이 더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5. 빠른 심사처리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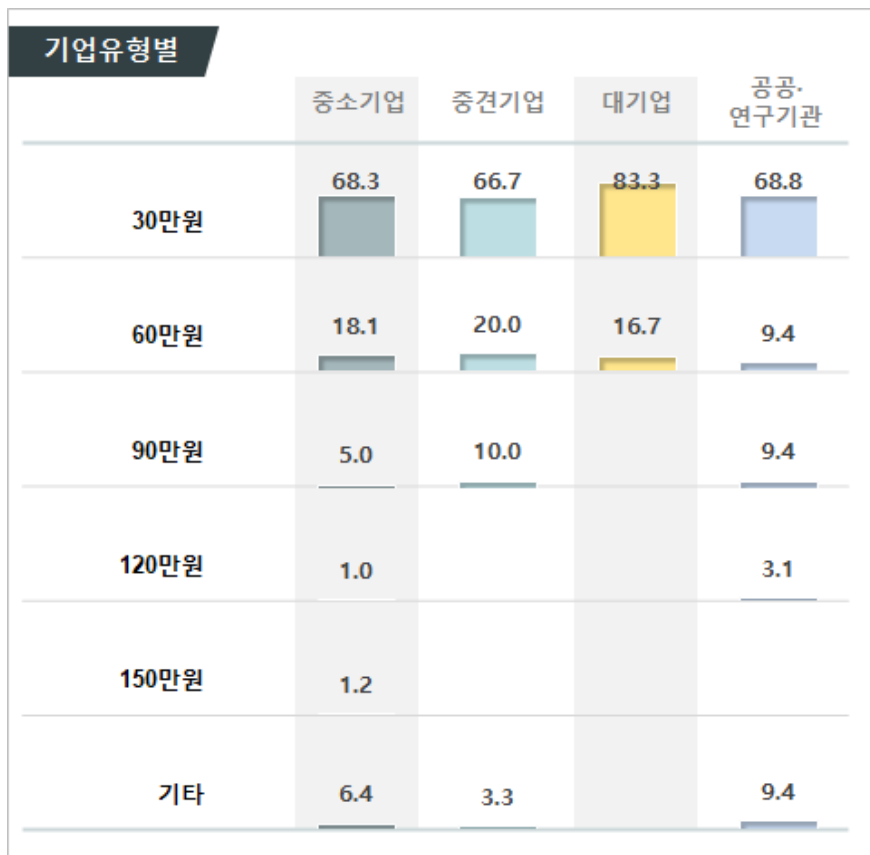
(1) 응답별 결과



[그림 4-9] 우선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 문항의 내용은 앞에서 응답한 기대하는 우선착수기간을 더 빠르게 당기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문의한 것으로서 객관식 응답의 가장 적은 금액인 30만원에 대한 응답이 68.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역설적으로 현 우선심사 착수기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더 줄이기 위해 지불할 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은 가장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그 두 배인 60만원도 17.6%로서 응답하였고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90만원도 5.4%로서 23%의 기업들이 빠른 심사처리를 받기위해 기꺼이 60만원 및 90만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2) 기업유형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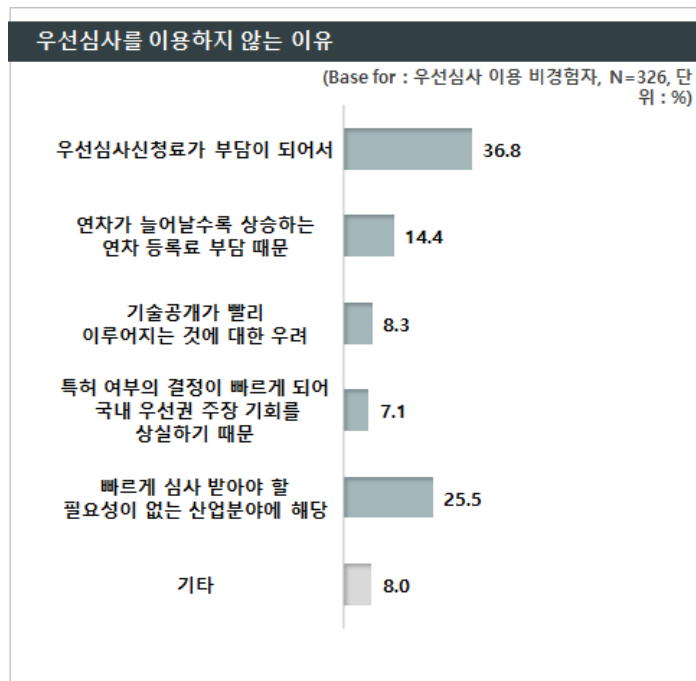


[그림 4-10] 기업유형별 우선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

- 기업유형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 전체 18개가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조사되었으나, 가장 높은 비율인 83.3%가 30만 원을 선택하였고 90만 원 이상에 대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았음.
 - 이는 현재 경험하였던 우선심사 착수기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 비용을 지불한다면 30만 원 정도이고 90만 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까지 기간을 더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대기업을 제외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모두 30만원에 대해 60%후반의 비율로 선택을 하였고, 60만원과 90만원에 대해 다른 기업유형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한 기업유형은 중견기업이었음.

6.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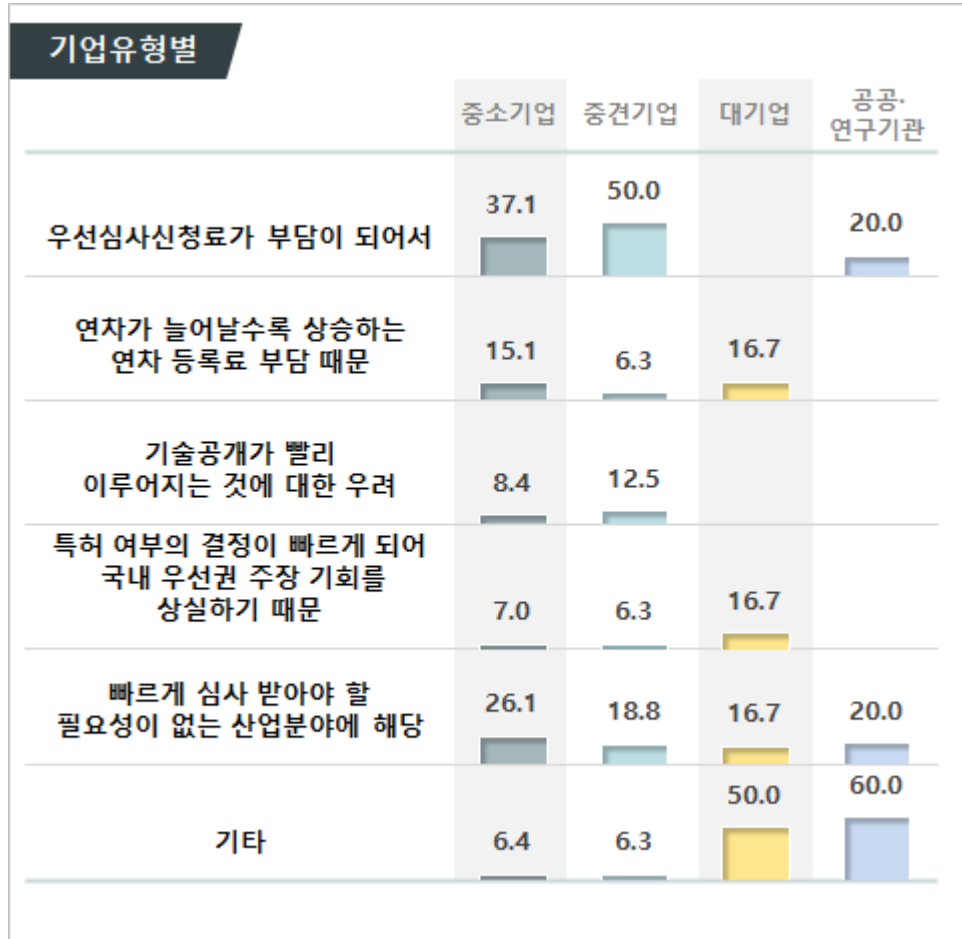
(1) 응답별 결과



[그림 4-11]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전체 조사된 기업 804개 중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326개 기업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하였음.
 - 앞장에서 조사한 우선심사가 존재함에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함.
 - 앞장의 조사결과는 ‘우선심사 활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심사투입시간을 줄여서라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3%로 높게 나타났음.
-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36.8%를 보인 ‘우선심사 신청료가 부담이 되어서’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빠르게 심사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산업분야에 해당’이 25.5%, 세 번째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상승하는 연차 등록료 부담 때문’이 14.4%로 나타남.
- 첫 번째와 세 번째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두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선심사 신청을 할 때 기업체들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정책입안자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함
 - 즉 현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심사 비율(17.7%, 2018년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줄여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요자들은 비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의 조정을 통해 우선심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우선심사 비율은 주요 IP5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이므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우선심사가 마치 일반심사화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고, 심사관들이 우선심사 업무의 비중이 늘어 일반심사의 질적인 면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함.

(2) 기업유형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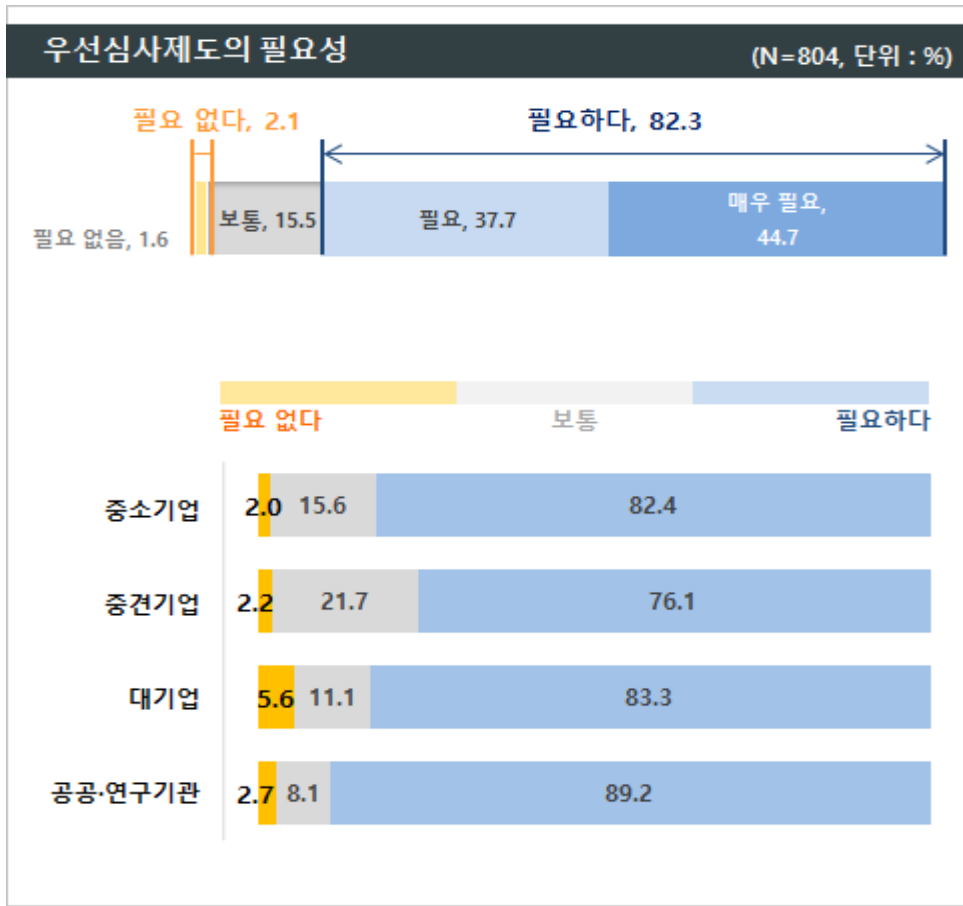


[그림 4-12] 기업유형별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기업유형별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타응답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우선심사 신청료가 부담이 되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이에 대한 응답은 중견기업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50%)을 보여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선심사 신청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심사 신청료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는 연차가 늘어날수록 상승하는 연차 등록료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우선심사 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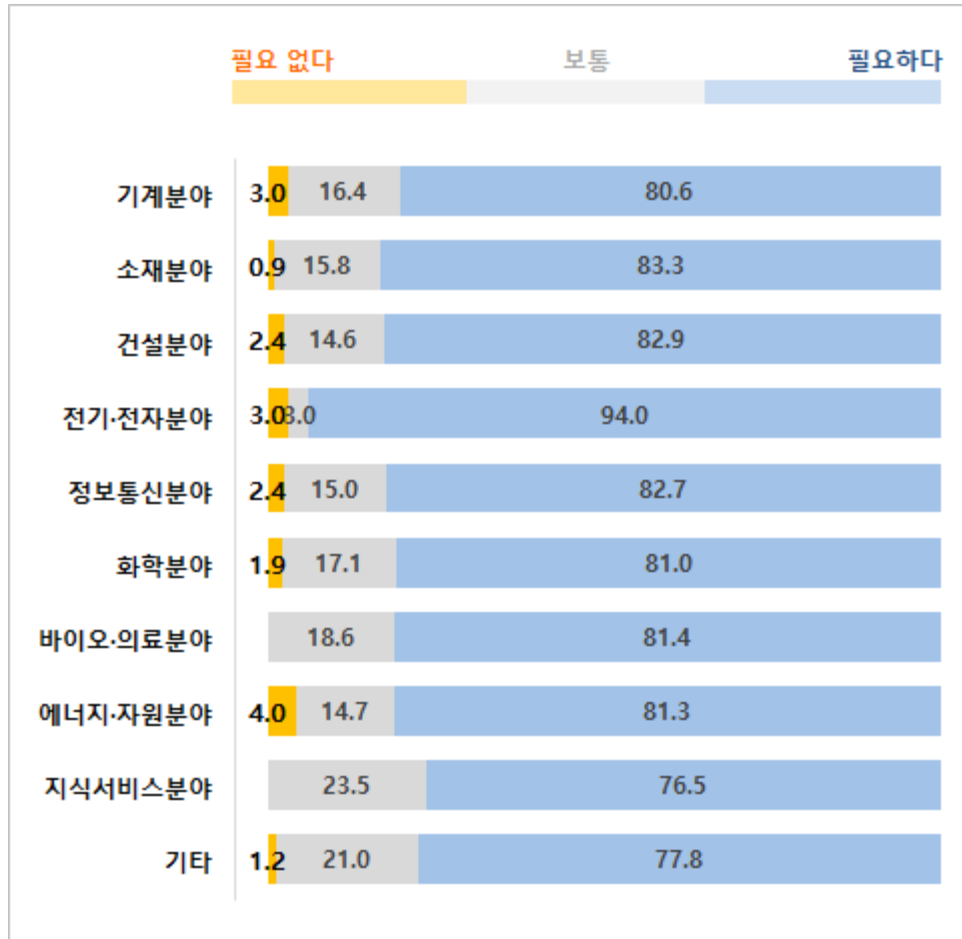
(1) 기업유형별 결과



[그림 4-13]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 우선 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37.7%, ‘매우 필요하다’가 44.7%로서 ‘필요하다’ 이상을 응답한 총 기업은 82.3%이고 ‘필요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서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은 ‘필요 없다.’는 비율이 2%대로 나타났으나 대기업만이 5.6%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우선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함.

(2) 산업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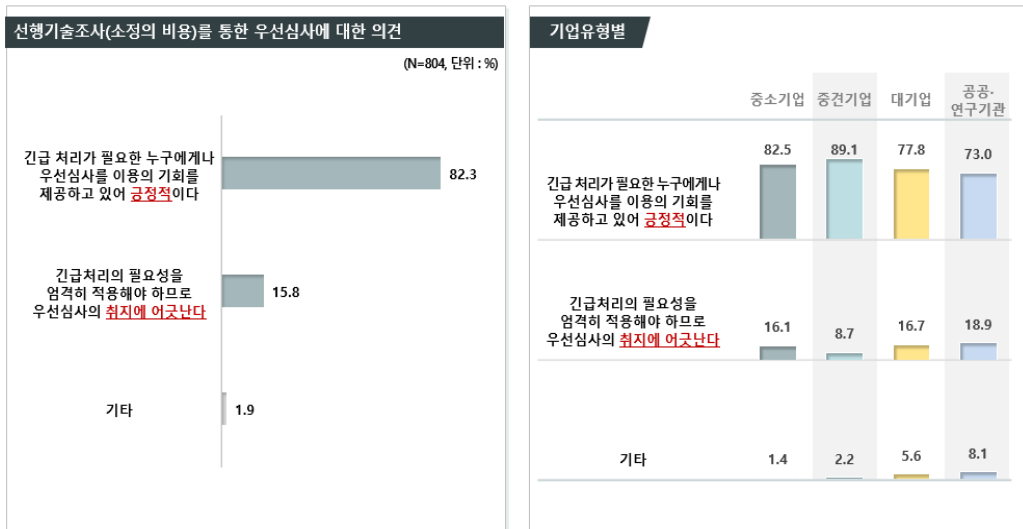
[그림 4-14] 산업별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 산업별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전기전자분야가 유일하게 90% 넘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식서비스분야가 유일하게 필요하다는에 대한 응답이 80%가 안 되는 76.5%로 나타남.
- 바이오·의료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는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 '필요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가장 높게 '필요없다'에 응답한 분야는 에너지·자원분야의 4%로 나타남.

- 우선심사 제도는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선심사 비율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야 함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우선심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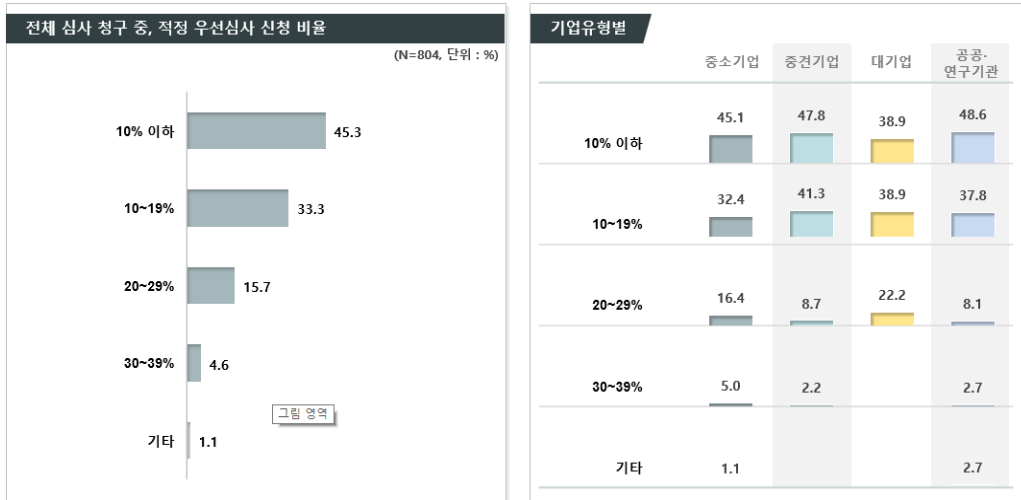
-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누구나 소정의 비용을 들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그림 4-15]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우선심사

- 응답한 결과를 보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우선심사를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82.3%로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심사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의견의 답변율(1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견기업의 경우가 89.1%로서 가장 높게 선행기술을 통한 우선 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이 82.5%, 대기업이 77.8%, 공공 연구기관이 73%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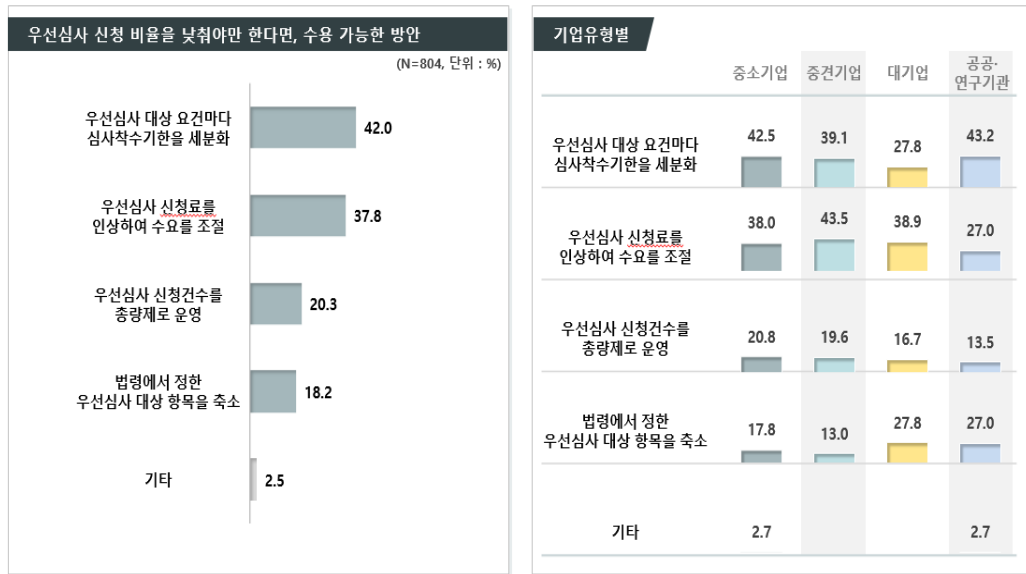
9. 전체 심사 청구 우선심사 신청 비율



[그림 4-16] 적정 우선심사 신청비율

- 804개의 응답기업 중 적정 우선심사 비율을 10%이하로 응답한 기업이 45.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10~19%가 33.3%, 세 번째는 20~29%가 15.7%, 네 번째는 30~39%가 4.6%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심사 비율(17.7% 2018년 기준)에 비해 낮은 의견으로서 우선심사를 직접 신청하는 수요자들도 현재의 우선심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 반면 현재 수준인 10~19%에 대한 의견도 33.3%로 나타나 세 기업 중 한 기업은 현재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기업유형별로도 모든 기업유형에 걸쳐 10%이하의 우선심사 비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10~19%의 우선심사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10%이하의 우선심사 비율과 10~19%의 우선심사 비율에 대한 응답이 똑같이 나타났으며 중견기업의 경우도 두 비율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10~19%의 우선심사 비율에 대한 선호도 및 필요도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0. 우선심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용 가능한 방안



[그림 4-17] 우선심사 신청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용 가능한 정책방안

- 우선심사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현황으로 일반심사를 신청한 수요자들의 심사처리기간이 적체되고 심사의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심사 비율의 통제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심사품질은 유지하면서 우선심사 비율을 낮춰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문의함.
- 결과를 보면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에 대한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이라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정책이 37.8%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세 번째로 ‘우선심사 신청건수를 총량제로 운영’이 20.3%, 네 번째로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가 18.2%로 나타남.
 - 모두 의미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으로서 그 중에서도 우선심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경중을 정하여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가장 수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 항목에 대한 조정은 앞서 문의한 신청하였던 우선심사 대상의 조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건이 가장 많았고 그러한 조건의 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전체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던 신청료 조정을 통한 수요조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이는 앞서 문의했던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유 중에 가장 높게 응답한 우선심사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36.8%)에 대한 답변으로서 수요자들 또한 수수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책실현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특허심사프로세스에 있어서 trade off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사대기기간과 특허심사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가장 최적의 균형인지를 찾고자하는 의문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특허심사를 직접 신청한 수요자들의 유형별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로 본 연구에서는 출원인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찾고 기업유형별 및 산업유형별로 설문조사를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구성을 위해 특허심사정책포럼을 운영하였고 이곳에는 법학적 견해와 경제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학계대표의 교수님들과 직접 출원의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는 변리사분들, 그리고 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체 대표들을 크게 4개 산업으로 나누고 그 산업 안에서 대기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단들을 포럼의 구성요인으로 하였다. 또한 특허심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심사관들과 특허심사정책을 주도하는 정책입안자 공무원분들을 포럼의 구성원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심사프로세스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원 경험이 있던 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물었던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특허일반심사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조사이고 두 번째는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특허 우선심사에 대한 적절한 비율과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조사이다. 특허심사정책포럼과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의견 중 중복적이면서도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대기기간의 단축보다는 심사대기기간을 예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변리사들의 의견이나 기업체들의 대표적인 의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주장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심사품질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심사정책이나 심사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심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일반 기업체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사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작다면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일정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이 기업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심사품질을 저해하면서까지 단축할 필요성은 없다.

이는 설문조사결과의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대기기간인 약 13개월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심사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 심사품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더 좋다는 반응이다. 현 시점에서 특허청은 점진적인 심사관의 증원은 수립해 나갈 수 있으나 많은 인원을 보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예산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인력을 보강해야 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의 실시에도 있어서 가장 궁금해 했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얼마나 현행 심사품을 양보할 수 있는가이다.

설문조사결과 중에 관련된 몇몇 결과를 보자면 심사업무량과 심사대기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두 번째 높은 비율로 응답한 '심사대기기간의 추가 단축을 위해 심사품질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다소 늘려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27.6%로서 그 차이가 3.2%로만 나타나기는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응답은 결국 현존하는 심사관의 업무 과중도를 높여 경제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던 Type I error와 Type II error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야기되어진다. 여기서 Type I error는 특허를 부여하여야 할 발명에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Type II error는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사관의 증원 없이 기존의 심사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사기간단축을 진행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결과이며 이는 결국 심사품질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답변의 경우는 심사대기기간을 손해를 보면서도 현 심사품질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특허심사에 참여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심사처리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는 특허심사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일반수요자들이 현재의 심사대기기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용의는 낮으며 지불하더라도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이는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문의한 결과에서 나타난다. 그 결과는 객관식으로 한정된 응답 중에서 가장 낮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그 기회비용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하며 반어적으로 현재의 심사대기기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심사관증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증가시킨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넷째, 현행 우선심사 착수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며 빠른 심사처리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낮은 금액이다.

현재 우선심사 착수기간은 2개월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설문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문의한 기대하는 우선심사 착수기간은 오히려 3개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3% 차이이지만 1개월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우선심사 착수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3개월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34.7%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선심사 착수기간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답변은 객관식 답변 중에 가장 낮은 30만원에 68.6%로 응답하였다. 이는 역시 현재의 우선심사 착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심사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더 빠른 심사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우선심사 비율의 적절한 조절을 위한 제한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현재의 우선심사 정책은 꼭 필요하며 우선심사 비율의 조절을 위해서는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우선심사 비율은 2018년 기준 17.7%로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선심사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우선심사가 일반심사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심사 비율에 대한 제한적인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심사 정책에 있어서 현재의 우선심사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문의할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 두 번째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어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심사의 조절을 위해 모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신청료의 경우는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은 수요자들의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요인으로서 우선심사 비율조정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우선심사를 위해서는 그 조건에 부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관계로 처음 진입단계인 조건에서부터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한사항을 만들어 일반심사로 유도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상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특허출원에 직접참여 하였던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적정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이에 따른 심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일반심사나 우선심사에 있어서 그 기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수요자들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중요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빠른 심사처리를 통한 조속한 권리확보는 기업체나 발명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심사품질을 저해하면서 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불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따라서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수요자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현재의 특허품질을 유지하면서 심사처리기간 및 우선심사 비율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1 설문조사표

“출원인의 수요를 반영한 심사처리정책 및 우선심사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개요>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우리기업의 출원심사 청구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및 관련 법·제도의 활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심사처리기간(이하 ‘심사대기기간’)에 대한 조사와 심사처리기간에 따른 기업의 이익(비용)등을 파악하여 심사정책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정우선심사비율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심사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본 설문조사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주관> 특허청

<연구 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보호·신지식연구실 김범태 부연구위원

<조사 문의 및 회신처>

(주)리서치뱅크

조사 책임자: 서은주 실장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810 / ☎ 02-752-6202 / Fax: 02-364-6207

E-mail: webmaster@researchbank.co.kr

<회신 방법>

웹설문 응답 어려우신 경우 조사표 회신은 이메일, .팩스.우편 모두 가능하며, 문서양식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ip.re.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업일반 현황

귀사의 기업유형·상장여부·수출입 활동유무에 대하여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형*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공공·연구기관
업종	① 기계분야	② 소재분야	③ 건설분야	④ 전기·전자분야
	⑤ 정보통신분야	⑥ 화학분야	⑦ 바이오·의료분야	⑧ 에너지·자원분야
	⑨ 지식서비스분야	⑩ 기타 ()		
응답자현황	① 경영진	② 특허담당자	③ 일반사무	④ 연구·개발
출원현황	최근 1년간 특허출원 건수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임.

II. 특허 심사대기기간과 심사품질 관련 조사

[특허 심사대기기간 개요]

- 심사 청구 후 첫 번째 통지서 발송(착수)까지의 대기 기간(FA)을 말하며, 각 국 특허청은 주로 심사대기기간을 관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심사 종결기간 = 심사대기기간 + 6개월)

문1. 귀사에서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심사 대기기간(주1) | ① 만족한다. | ② 보통이다. | ③ 미흡하다. |
| 심사 결과의 정확도 | ① 만족한다. | ② 보통이다. | ③ 미흡하다. |
| 심사관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 | ① 만족한다. | ② 보통이다. | ③ 미흡하다. |
| 출원·청구료 등 수수료 | ① 만족한다. | ② 보통이다. | ③ 미흡하다. |

주1) 심사 청구 후 첫 번째 통지서 발송(착수)까지의 대기 기간(FA)

문2. 귀사에서 느끼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심사대기기간 | ② 심사 결과의 정확도 |
| ③ 출원인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 | ④ 출원·청구료 등 수수료 |
| ⑤ 기타 _____ | |

문3. 최근 특허 청구물량의 증가로 인해 현재의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할 경우 '23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1~3개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 심사정책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특허 심사대기기간과 특허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의 관계]

- 일반적으로 심사관 인력 증원 등 인프라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할 경우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이 늘어나고, 이는 개별 1건 당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의 감소를 수반하여, 심사품질이 저하(특허 무효율 증가 등) 될 가능성이 있음.

- ① 심사대기기간의 추가 단축을 위해 심사품질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다소 늘려야 한다.
- ② 심사대기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품질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소폭 늘려야 한다.
- ③ 심사대기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
- ④ 심사대기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문4. 귀사에서는 가장 적절한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허 심사대기기간 현황]

- 현재 한국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은 2015년 평균 10개월대 도달 후, 안정적으로 10개월대 관리 중(우선심사 3개월대, 일반심사 13개월대 → 평균 10개월대)

- ① 7~9개월대 ② 10~12개월대 ③ 13개월대(현수준)
- ④ 14~16개월대 ⑤ 17~18개월대

문5. 귀사는 빠른 특허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 ②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
- ③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과제 입찰 또는 신기술 인증 등 정부의 인증을 빠르게 받기 위해
- ④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기술의 우수성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
- ⑤ 기타 _____

문6. 현재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귀사는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단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처리기간 1개월에 대한 사회적비용 도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수수료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40만원 ⑤ 50만원 이상

문7. 현재,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소정의 비용을 들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사는 이와 같은 **우선심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것은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되므로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는 없다.**
② 우선심사 활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심사투입시간을 줄여서라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문8. 귀사가 보유한 특허 중에서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특허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특허는 **없음.**
② **권리범위가 협소함.**
③ 경쟁사에 의해 **무효 가능성이 있음.**
④ **시장성이 부족함**
⑤ 기타 _____

III. 우선 심사 수요자 현황 조사

(참고) 우선심사제도의 개요

- 우선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순위를 따르지 않고 일반심사건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심사 신청료(특허: 20만원, 실용: 10만원)
- 현재 심사청구가 되는 출원들 중 20%는 우선심사신청을 받아 처리되고 있고, 우선심사의 결정 후 심사착수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며, 이는 다른 일반심사의 심사청구후 착수까지의 기간보다 10개월 정도 빠른 수준입니다.
- 우선심사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인에게는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특허청의 심사인력이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 따라 전체적인 심사품질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심사의 착수시기를 늦추는 영향이 있습니다.

문3-1. 귀하는 우선심사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문3-1-1로 가시오
- ② 없다. => 문3-1-5로 가시오

문3-1-3. 귀하가 기대하는 우선심사의 심사착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⑤ 5개월 ⑥ 기타 ()

문3-1-4. 심사품질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문3-1-3에서 답변하신 기간만큼 빠른 처리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귀하가 지불하실 의사가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만원 ② 60만원 ③ 90만원 ④ 120만원 ⑤ 150만원 ⑥ 기타 ()

문3-1-5. 귀하께서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차가 늘어날수록 상승하는 연차 등록료 부담 때문
② 특허 여부의 결정이 빠르게 되어 국내 우선권 주장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
③ 빠르게 심사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는 산업분야에 해당
④ 우선심사신청료가 부담이 되어서
⑤ 기술공개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⑥ 기타 ()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

문3-2. 귀하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건에 대해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 주는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3-2-1.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건, ()%

문3-2-2.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누구나 소정의 비용(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비용 약 4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 ① 긴급 처리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우선심사를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 ②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심사의 취지에 어긋난다.
- ③ 기타 ()

[우선심사비율을 낮춰야만 할 때 수용도가 높은 방안]

문3-3.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면 한정된 심사 인력의 처리부담으로 심사품질이 하락할 수 있고, 다른 일반심사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심사 청구 중에 우선심사 신청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10% 늘어나면 일반심사의 처리기간은 약 1.1개월이 지연됩니다.

- ① 10% 이하 ② 10~19% ③ 20~29%
- ④ 30~39% ⑤ 기타 ()%

문3-3-1. 심사품질의 하락을 방지하고 우선심사와 일반심사 처리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 비율을 낮춰야만 한다면, 귀하께서 다음 중 수용 가능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

- ①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
- ②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
- ③ 우선심사 신청건수를 총량제로 운영
- ④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
- ⑤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2 특허청 출원인 설문조사 통계표

【표】 SQ2x1) 기업 유형

		사례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구 기관	[합계]
		N	%	%	%	%	%
[전체]		804	87.4	5.7	2.2	4.6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100.0	0.0	0.0	0.0	100.0
	중견기업	46	0.0	100.0	0.0	0.0	100.0
	대기업	18	0.0	0.0	100.0	0.0	100.0
	공공·연구기관	37	0.0	0.0	0.0	100.0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87.3	9.0	1.5	2.2	100.0
	소재분야	41	75.6	9.8	7.3	7.3	100.0
	건설분야	67	92.5	0.0	6.0	1.5	100.0
	전기·전자분야	127	90.6	6.3	3.1	0.0	100.0
	정보통신분야	105	97.1	1.9	1.0	0.0	100.0
	화학분야	43	76.7	16.3	4.7	2.3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90.7	6.7	0.0	2.7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88.2	5.9	0.0	5.9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84.0	1.2	0.0	14.8	100.0
	기타	114	80.7	5.3	1.8	12.3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99.3	0.4	0.0	0.4	100.0
	특허담당자	218	70.2	11.9	5.0	12.8	100.0
	일반사무	169	88.8	5.9	3.0	2.4	100.0
	연구·개발	138	89.1	6.5	1.4	2.9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94.3	3.6	0.9	1.3	100.0
	10~50개 미만	64	56.3	23.4	10.9	9.4	100.0
	50~100개 미만	25	20.0	24.0	16.0	40.0	100.0
	100개 이상	18	27.8	0.0	5.6	66.7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84.5	6.3	2.5	6.7	100.0
	없다	326	91.7	4.9	1.8	1.5	100.0

【표】 SQ2x2) 업종

		사례수	기계 분야	소재 분야	건설 분야	전기· 전자 분야	정보 통신 분야	화학 분야	바이오· 의료 분야
		N	%	%	%	%	%	%	%
[전체]		804	16.7	5.1	8.3	15.8	13.1	5.3	9.3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16.6	4.4	8.8	16.4	14.5	4.7	9.7
	중견기업	46	26.1	8.7	0.0	17.4	4.3	15.2	10.9
	대기업	18	11.1	16.7	22.2	22.2	5.6	11.1	0.0
	공공·연구기관	37	8.1	8.1	2.7	0.0	0.0	2.7	5.4
[업종]	기계분야	134	100.0	0.0	0.0	0.0	0.0	0.0	0.0
	소재분야	41	0.0	100.0	0.0	0.0	0.0	0.0	0.0
	건설분야	67	0.0	0.0	100.0	0.0	0.0	0.0	0.0
	전기·전자분야	127	0.0	0.0	0.0	100.0	0.0	0.0	0.0
	정보통신분야	105	0.0	0.0	0.0	0.0	100.0	0.0	0.0
	화학분야	43	0.0	0.0	0.0	0.0	0.0	100.0	0.0
	바이오·의료분야	75	0.0	0.0	0.0	0.0	0.0	0.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0.0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81	0.0	0.0	0.0	0.0	0.0	0.0	0.0
	기타	114	0.0	0.0	0.0	0.0	0.0	0.0	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10.0	5.0	6.1	17.6	19.7	3.9	10.0
	특허담당자	218	15.6	4.6	9.2	16.1	7.8	6.0	8.3
	일반사무	169	21.3	4.7	10.1	13.6	15.4	4.7	7.7
	연구·개발	138	26.1	6.5	9.4	14.5	5.1	8.0	11.6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17.2	4.7	8.6	16.2	14.8	5.2	8.9
	10~50개 미만	64	18.8	10.9	10.9	15.6	3.1	4.7	17.2
	50~100개 미만	25	8.0	4.0	0.0	16.0	0.0	8.0	4.0
	100개 이상	18	0.0	0.0	0.0	0.0	0.0	11.1	5.6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16.1	5.6	11.3	15.9	11.3	5.9	7.9
	없다	326	17.5	4.3	4.0	15.6	15.6	4.6	11.3

【표】 SQ2x2) 업종

		에너지·자원분야	지식서비스분야	기타	[합계]
		%	%	%	%
[전체]		2.1	10.1	14.2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2.1	9.7	13.1	100.0
	중견기업	2.2	2.2	13.0	100.0
	대기업	0.0	0.0	11.1	100.0
	공공·연구기관	2.7	32.4	37.8	100.0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100.0
	소재분야	0.0	0.0	0.0	100.0
	건설분야	0.0	0.0	0.0	100.0
	전기·전자분야	0.0	0.0	0.0	100.0
	정보통신분야	0.0	0.0	0.0	100.0
	화학분야	0.0	0.0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00.0	0.0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0.0	100.0	0.0	100.0
	기타	0.0	0.0	100.0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1.8	12.9	12.9	100.0
	특허담당자	3.2	11.5	17.9	100.0
	일반사무	1.2	6.5	14.8	100.0
	연구·개발	2.2	6.5	10.1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2.3	8.5	13.6	100.0
	10~50개 미만	0.0	6.3	12.5	100.0
	50~100개 미만	4.0	36.0	20.0	100.0
	100개 이상	0.0	50.0	33.3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2.1	10.9	13.0	100.0
	없다	2.1	8.9	16.0	100.0

【표】 SQ2x3) 응답자현황

		사례수	경영진	특허담당자	일반사무	연구·개발	[합계]
		N	%	%	%	%	%
[전체]		804	34.7	27.1	21.0	17.2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39.4	21.8	21.3	17.5	100.0
	중견기업	46	2.2	56.5	21.7	19.6	100.0
	대기업	18	0.0	61.1	27.8	11.1	100.0
	공공·연구기관	37	2.7	75.7	10.8	10.8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20.9	25.4	26.9	26.9	100.0
	소재분야	41	34.1	24.4	19.5	22.0	100.0
	건설분야	67	25.4	29.9	25.4	19.4	100.0
	전기·전자분야	127	38.6	27.6	18.1	15.7	100.0
	정보통신분야	105	52.4	16.2	24.8	6.7	100.0
	화학분야	43	25.6	30.2	18.6	25.6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37.3	24.0	17.3	21.3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29.4	41.2	11.8	17.6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44.4	30.9	13.6	11.1	100.0
	기타	114	31.6	34.2	21.9	12.3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100.0	0.0	0.0	0.0	100.0
	특허담당자	218	0.0	100.0	0.0	0.0	100.0
	일반사무	169	0.0	0.0	100.0	0.0	100.0
	연구·개발	138	0.0	0.0	0.0	100.0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39.2	20.8	21.4	18.7	100.0
	10~50개 미만	64	9.4	54.7	25.0	10.9	100.0
	50~100개 미만	25	0.0	92.0	4.0	4.0	100.0
	100개 이상	18	0.0	83.3	16.7	0.0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36.0	34.1	14.4	15.5	100.0
	없다	326	32.8	16.9	30.7	19.6	100.0

【표】 SQ2x4) 출원현황

		사례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N	%	%	%	%	%	%	%
[전체]		804	6.3	30.2	20.4	14.9	5.8	5.0	1.2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6.4	33.3	22.3	15.6	6.4	5.3	1.1
	중견기업	46	10.9	13.0	8.7	13.0	2.2	4.3	0.0
	대기업	18	5.6	0.0	11.1	11.1	0.0	0.0	5.6
	공공·연구기관	37	0.0	8.1	2.7	5.4	2.7	2.7	2.7
[업종]	기계분야	134	7.5	35.8	20.9	10.4	6.0	6.0	0.0
	소재분야	41	9.8	24.4	22.0	14.6	2.4	4.9	2.4
	건설분야	67	6.0	28.4	22.4	14.9	7.5	4.5	3.0
	전기·전자분야	127	2.4	30.7	18.1	21.3	7.1	3.1	3.1
	정보통신분야	105	9.5	27.6	31.4	15.2	3.8	6.7	1.0
	화학분야	43	0.0	32.6	18.6	20.9	2.3	7.0	2.3
	바이오·의료분야	75	9.3	32.0	21.3	2.7	8.0	5.3	0.0
	에너지·자원분야	17	0.0	17.6	52.9	11.8	11.8	0.0	0.0
	지식서비스분야	81	2.5	25.9	8.6	22.2	8.6	1.2	0.0
	기타	114	9.6	31.6	14.0	14.0	3.5	7.0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4.3	36.2	24.0	17.2	7.2	5.4	1.8
	특허담당자	218	4.6	19.3	13.8	11.0	5.0	6.9	1.4
	일반사무	169	12.4	30.8	18.9	14.8	5.3	3.6	0.0
	연구·개발	138	5.8	34.8	25.4	16.7	5.1	2.9	1.4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7.3	34.9	23.5	17.2	6.7	5.7	1.4
	10~50개 미만	64	0.0	0.0	0.0	0.0	0.0	0.0	0.0
	50~100개 미만	25	0.0	0.0	0.0	0.0	0.0	0.0	0.0
	100개 이상	18	0.0	0.0	0.0	0.0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2.9	23.6	21.8	14.9	6.7	5.4	1.9
	없다	326	11.3	39.9	18.4	15.0	4.6	4.3	0.3

【표】 SQ2x4) 출원현황

		7건	8건	9건	10건	11건	12건	13건	14건
		%	%	%	%	%	%	%	%
[전체]		1.1	1.0	0.6	3.7	0.1	0.2	0.1	0.1
[기업유형]	중소기업	1.3	1.0	0.7	2.8	0.0	0.3	0.1	0.1
	중견기업	0.0	2.2	0.0	17.4	0.0	0.0	0.0	0.0
	대기업	0.0	0.0	0.0	0.0	5.6	0.0	0.0	0.0
	공공·연구기관	0.0	0.0	0.0	5.4	0.0	0.0	0.0	0.0
[업종]	기계분야	1.5	1.5	0.0	5.2	0.0	0.0	0.0	0.7
	소재분야	0.0	0.0	0.0	7.3	0.0	2.4	0.0	0.0
	건설분야	1.5	0.0	1.5	3.0	0.0	1.5	0.0	0.0
	전기·전자분야	0.8	0.8	1.6	3.9	0.8	0.0	0.0	0.0
	정보통신분야	1.0	1.9	0.0	1.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0.0	0.0	0.0	0.0	0.0	2.3	0.0
	바이오·의료분야	2.7	0.0	1.3	10.7	0.0	0.0	0.0	0.0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2.5	1.2	0.0	0.0	0.0	0.0	0.0	0.0
	기타	0.0	1.8	0.9	3.5	0.0	0.0	0.0	0.0
[응답자현황]	경영진	0.7	0.7	0.4	1.4	0.0	0.0	0.0	0.0
	특허담당자	0.9	1.8	1.8	5.5	0.0	0.5	0.5	0.0
	일반사무	1.2	1.2	0.0	5.9	0.6	0.0	0.0	0.0
	연구·개발	2.2	0.0	0.0	2.9	0.0	0.7	0.0	0.7
[출원 현황]	10개 미만	1.3	1.1	0.7	0.0	0.0	0.0	0.0	0.0
	10~50개 미만	0.0	0.0	0.0	46.9	1.6	3.1	1.6	1.6
	50~10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0개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1.5	1.3	0.6	5.0	0.0	0.2	0.2	0.0
	없다	0.6	0.6	0.6	1.8	0.3	0.3	0.0	0.3

【표】 SQ2x4) 출원현황

		15건	17건	18건	19건	20건	21건	22건	26건
		%	%	%	%	%	%	%	%
[전체]		0.1	0.4	0.1	0.1	0.5	0.1	0.2	0.1
[기업유형]	중소기업	0.1	0.1	0.1	0.0	0.3	0.0	0.1	0.1
	중견기업	0.0	2.2	0.0	2.2	2.2	0.0	2.2	0.0
	대기업	0.0	0.0	0.0	0.0	5.6	0.0	0.0	0.0
	공공·연구기관	0.0	2.7	0.0	0.0	0.0	2.7	0.0	0.0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0.7	0.7	0.0	0.7	0.0
	소재분야	0.0	2.4	0.0	0.0	2.4	0.0	0.0	0.0
	건설분야	0.0	0.0	0.0	0.0	1.5	0.0	1.5	0.0
	전기·전자분야	0.0	0.0	0.8	0.0	0.0	0.0	0.0	0.0
	정보통신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2.3	0.0	0.0	0.0	0.0	0.0	0.0
	바이오·의료분야	1.3	1.3	0.0	0.0	0.0	0.0	0.0	0.0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0.0	0.0	0.0	0.0	1.2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9	0.0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0	0.0	0.0	0.4	0.0	0.0	0.0
	특허담당자	0.5	0.5	0.5	0.5	0.9	0.5	0.9	0.5
	일반사무	0.0	1.2	0.0	0.0	0.6	0.0	0.0	0.0
	연구·개발	0.0	0.0	0.0	0.0	0.0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50개 미만	1.6	4.7	1.6	1.6	6.3	1.6	3.1	1.6
	50~10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0개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2	0.4	0.2	0.2	0.6	0.2	0.4	0.2
	없다	0.0	0.3	0.0	0.0	0.3	0.0	0.0	0.0

【표】 SQ2x4) 출원현황

		28건	30건	40건	48건	50건	60건	70건	80건
		%	%	%	%	%	%	%	%
[전체]		0.1	1.2	0.4	0.1	0.9	0.2	0.6	1.0
[기업유형]	중소기업	0.0	0.6	0.0	0.1	0.4	0.1	0.0	0.0
	중견기업	0.0	4.3	2.2	0.0	4.3	0.0	2.2	6.5
	대기업	0.0	16.7	11.1	0.0	11.1	0.0	5.6	5.6
	공공·연구기관	2.7	2.7	0.0	0.0	0.0	2.7	8.1	10.8
[업종]	기계분야	0.0	0.7	0.0	0.0	0.7	0.0	0.0	0.7
	소재분야	0.0	2.4	0.0	0.0	0.0	0.0	0.0	2.4
	건설분야	0.0	1.5	1.5	0.0	0.0	0.0	0.0	0.0
	전기·전자분야	0.0	1.6	0.8	0.0	1.6	0.0	0.8	0.8
	정보통신분야	0.0	1.0	0.0	0.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0.0	2.3	0.0	2.3	0.0	2.3	0.0
	바이오·의료분야	0.0	1.3	0.0	0.0	0.0	0.0	0.0	1.3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5.9	0.0	0.0
	지식서비스분야	0.0	2.5	0.0	1.2	3.7	1.2	1.2	3.7
	기타	0.9	0.9	0.0	0.0	0.0	0.0	1.8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4	0.0	0.0	0.0	0.0	0.0	0.0
	특허담당자	0.5	3.2	1.4	0.0	2.8	0.9	2.3	3.2
	일반사무	0.0	0.6	0.0	0.6	0.6	0.0	0.0	0.0
	연구·개발	0.0	0.7	0.0	0.0	0.0	0.0	0.0	0.7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50개 미만	1.6	15.6	4.7	1.6	0.0	0.0	0.0	0.0
	50~100개 미만	0.0	0.0	0.0	0.0	28.0	8.0	20.0	32.0
	100개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2	2.1	0.6	0.2	1.3	0.4	1.0	1.5
	없다	0.0	0.0	0.0	0.0	0.3	0.0	0.0	0.3

【표】 SQ2x4) 출원현황

		87건	88건	90건	100건	130건	140건	150건	200건
		%	%	%	%	%	%	%	%
[전체]		0.1	0.1	0.1	0.5	0.1	0.1	0.4	0.2
[기업유형]	중소기업	0.1	0.0	0.0	0.1	0.0	0.1	0.0	0.3
	중견기업	0.0	0.0	0.0	0.0	0.0	0.0	0.0	0.0
	대기업	0.0	0.0	0.0	0.0	5.6	0.0	0.0	0.0
	공공·연구기관	0.0	2.7	2.7	8.1	0.0	0.0	8.1	0.0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소재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정보통신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0.0	0.0	0.0	2.3	0.0	0.0	0.0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0.0	0.0	0.0	1.3	0.0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1.2	0.0	0.0	2.5	0.0	1.2	2.5	1.2
	기타	0.0	0.9	0.9	1.8	0.0	0.0	0.0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0	0.0	0.0	0.0	0.0	0.0	0.0
	특허담당자	0.5	0.5	0.5	1.8	0.5	0.5	1.4	0.9
	일반사무	0.0	0.0	0.0	0.0	0.0	0.0	0.0	0.0
	연구·개발	0.0	0.0	0.0	0.0	0.0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5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50~100개 미만	4.0	4.0	4.0	0.0	0.0	0.0	0.0	0.0
	100개 이상	0.0	0.0	0.0	22.2	5.6	5.6	16.7	11.1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2	0.2	0.2	0.8	0.2	0.2	0.6	0.4
	없다	0.0	0.0	0.0	0.0	0.0	0.0	0.0	0.0

【표】 SQ2x4) 출원현황

		300건	310건	372건	600건	667건	[합계]	[평균]
		%	%	%	%	%	%	Mean
[전체]		0.4	0.1	0.1	0.1	0.1	100.0	10.92
[기업유형]	중소기업	0.1	0.0	0.0	0.0	0.0	100.0	4.62
	중견기업	0.0	0.0	0.0	0.0	0.0	100.0	15.70
	대기업	0.0	0.0	0.0	0.0	0.0	100.0	33.17
	공공·연구기관	5.4	2.7	2.7	2.7	2.7	100.0	113.76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0.0	0.0	100.0	4.13
	소재분야	0.0	0.0	0.0	0.0	0.0	100.0	6.22
	건설분야	0.0	0.0	0.0	0.0	0.0	100.0	4.27
	전기·전자분야	0.0	0.0	0.0	0.0	0.0	100.0	5.57
	정보통신분야	0.0	0.0	0.0	0.0	0.0	100.0	2.50
	화학분야	0.0	0.0	0.0	0.0	2.3	100.0	24.86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0.0	0.0	100.0	6.68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100.0	5.59
	지식서비스분야	1.2	0.0	1.2	1.2	0.0	100.0	36.93
	기타	1.8	0.9	0.0	0.0	0.0	100.0	18.04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0	0.0	0.0	0.0	100.0	2.48
	특허담당자	0.9	0.5	0.0	0.5	0.0	100.0	26.24
	일반사무	0.6	0.0	0.6	0.0	0.6	100.0	11.36
	연구·개발	0.0	0.0	0.0	0.0	0.0	100.0	3.22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0.0	100.0	2.23
	10~50개 미만	0.0	0.0	0.0	0.0	0.0	100.0	17.69
	50~100개 미만	0.0	0.0	0.0	0.0	0.0	100.0	69.00
	100개 이상	16.7	5.6	5.6	5.6	5.6	100.0	242.72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6	0.0	0.2	0.2	0.2	100.0	15.95
	없다	0.0	0.3	0.0	0.0	0.0	100.0	3.54

【표】 Q1_1) 귀사에서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 대기기간*)

		사례수	미흡하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합계]
		N	%	%	%	%
[전체]		804	35.1	48.8	16.2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36.1	47.5	16.4	100.0
	중견기업	46	26.1	60.9	13.0	100.0
	대기업	18	22.2	50.0	27.8	100.0
	공공·연구기관	37	32.4	56.8	10.8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37.3	48.5	14.2	100.0
	소재분야	41	31.7	56.1	12.2	100.0
	건설분야	67	41.8	38.8	19.4	100.0
	전기·전자분야	127	30.7	51.2	18.1	100.0
	정보통신분야	105	35.2	46.7	18.1	100.0
	화학분야	43	46.5	41.9	11.6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34.7	53.3	12.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41.2	47.1	11.8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37.0	46.9	16.0	100.0
	기타	114	28.1	52.6	19.3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44.4	40.9	14.7	100.0
	특허담당자	218	31.7	53.2	15.1	100.0
	일반사무	169	23.1	55.6	21.3	100.0
	연구·개발	138	36.2	49.3	14.5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36.6	47.8	15.6	100.0
	10~50개 미만	64	26.6	53.1	20.3	100.0
	50~100개 미만	25	24.0	60.0	16.0	100.0
	100개 이상	18	22.2	55.6	22.2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36.6	46.0	17.4	100.0
	없다	326	32.8	52.8	14.4	100.0

【표】 Q1_2) 귀사에서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 결과의 정확도)

		사례수	미흡하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합계]
		N	%	%	%	%
[전체]		804	9.1	58.6	32.3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9.0	56.5	34.6	100.0
	중견기업	46	17.4	76.1	6.5	100.0
	대기업	18	5.6	72.2	22.2	100.0
	공공·연구기관	37	2.7	70.3	27.0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10.4	56.7	32.8	100.0
	소재분야	41	19.5	51.2	29.3	100.0
	건설분야	67	4.5	70.1	25.4	100.0
	전기·전자분야	127	7.9	60.6	31.5	100.0
	정보통신분야	105	6.7	57.1	36.2	100.0
	화학분야	43	11.6	58.1	30.2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12.0	60.0	28.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0.0	58.8	41.2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8.6	61.7	29.6	100.0
	기타	114	8.8	52.6	38.6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13.3	54.1	32.6	100.0
	특허담당자	218	8.3	61.9	29.8	100.0
	일반사무	169	2.4	59.8	37.9	100.0
	연구·개발	138	10.1	60.9	29.0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8.8	57.8	33.4	100.0
	10~50개 미만	64	15.6	56.3	28.1	100.0
	50~100개 미만	25	8.0	76.0	16.0	100.0
	100개 이상	18	0.0	72.2	27.8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10.0	57.5	32.4	100.0
	없다	326	7.7	60.1	32.2	100.0

【표】 Q1_3) 귀사에서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관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

		사례수	미흡하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합계]
		N	%	%	%	%
[전체]		804	20.0	52.6	27.4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20.6	50.6	28.7	100.0
	중견기업	46	17.4	67.4	15.2	100.0
	대기업	18	16.7	61.1	22.2	100.0
	공공·연구기관	37	13.5	67.6	18.9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20.1	51.5	28.4	100.0
	소재분야	41	14.6	61.0	24.4	100.0
	건설분야	67	16.4	56.7	26.9	100.0
	전기·전자분야	127	28.3	44.9	26.8	100.0
	정보통신분야	105	19.0	52.4	28.6	100.0
	화학분야	43	23.3	51.2	25.6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20.0	53.3	26.7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29.4	41.2	29.4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19.8	49.4	30.9	100.0
	기타	114	13.2	61.4	25.4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28.3	43.0	28.7	100.0
	특허담당자	218	16.1	56.4	27.5	100.0
	일반사무	169	9.5	63.3	27.2	100.0
	연구·개발	138	22.5	52.9	24.6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20.2	52.1	27.7	100.0
	10~50개 미만	64	21.9	51.6	26.6	100.0
	50~100개 미만	25	20.0	60.0	20.0	100.0
	100개 이상	18	5.6	66.7	27.8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22.2	50.6	27.2	100.0
	없다	326	16.9	55.5	27.6	100.0

【표】 Q1_4) 귀사에서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원·청구료 등 수수료)

		사례수	미흡하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합계]
		N	%	%	%	%
[전체]		804	14.3	57.5	28.2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14.7	56.2	29.2	100.0
	중견기업	46	10.9	65.2	23.9	100.0
	대기업	18	16.7	55.6	27.8	100.0
	공공·연구기관	37	10.8	73.0	16.2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12.7	60.4	26.9	100.0
	소재분야	41	4.9	68.3	26.8	100.0
	건설분야	67	14.9	50.7	34.3	100.0
	전기·전자분야	127	15.0	52.8	32.3	100.0
	정보통신분야	105	19.0	53.3	27.6	100.0
	화학분야	43	14.0	58.1	27.9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10.7	62.7	26.7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5.9	64.7	29.4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22.2	53.1	24.7	100.0
	기타	114	12.3	61.4	26.3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18.3	55.6	26.2	100.0
	특허담당자	218	11.9	57.3	30.7	100.0
	일반사무	169	12.4	60.9	26.6	100.0
	연구·개발	138	12.3	57.2	30.4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14.6	57.2	28.1	100.0
	10~50개 미만	64	12.5	57.8	29.7	100.0
	50~100개 미만	25	12.0	56.0	32.0	100.0
	100개 이상	18	11.1	66.7	22.2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14.2	56.3	29.5	100.0
	없다	326	14.4	59.2	26.4	100.0

【표】 Q2) 귀사에서 느끼는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진행 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심사대기 기간	심사 결과의 정확도	출원인 면담 등 고객과의 소통	출원· 청구료 등 수수료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804	62.1	12.3	11.3	11.8	2.5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63.7	11.1	11.1	11.9	2.1	100.0
	중견기업	46	52.2	28.3	8.7	8.7	2.2	100.0
	대기업	18	38.9	22.2	22.2	11.1	5.6	100.0
	공공·연구기관	37	54.1	10.8	13.5	13.5	8.1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58.2	11.9	12.7	12.7	4.5	100.0
	소재분야	41	53.7	26.8	9.8	9.8	0.0	100.0
	건설분야	67	64.2	6.0	14.9	13.4	1.5	100.0
	전기·전자분야	127	61.4	11.8	13.4	11.0	2.4	100.0
	정보통신분야	105	63.8	7.6	8.6	17.1	2.9	100.0
	화학분야	43	62.8	20.9	7.0	9.3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68.0	17.3	6.7	5.3	2.7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82.4	11.8	5.9	0.0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69.1	9.9	7.4	11.1	2.5	100.0
	기타	114	55.3	11.4	16.7	14.0	2.6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67.0	11.5	10.4	9.0	2.2	100.0
	특허담당자	218	56.9	20.2	9.2	11.5	2.3	100.0
	일반사무	169	56.8	4.7	16.6	17.8	4.1	100.0
	연구·개발	138	66.7	10.9	10.1	10.9	1.4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64.4	10.5	10.8	12.1	2.3	100.0
	10~50개 미만	64	50.0	23.4	17.2	7.8	1.6	100.0
	50~100개 미만	25	44.0	32.0	8.0	12.0	4.0	100.0
	100개 이상	18	38.9	16.7	16.7	16.7	11.1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59.8	14.9	10.9	11.9	2.5	100.0
	없다	326	65.3	8.6	12.0	11.7	2.5	100.0

【표】 Q3) 최근 특허 청구물량의 증가로 인해 현재의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할 경우 23년까지 심사 대기기간이 소폭 지연(1~3개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 심사정책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사례수	심사대기 기간의 추가 단축을 위해 심사 품질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다소 늘려야 한다	심사대기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품질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소폭 늘려야 한다	심사대기 기간이 소폭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대기 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합계]	
		N	%	%	%	%	%
[전체]	804	27.6	21.6	30.8	19.9	100.0	
[기업 유형]	중소기업	703	28.9	20.9	30.7	19.5	100.0
	중견기업	46	19.6	26.1	28.3	26.1	100.0
	대기업	18	27.8	16.7	33.3	22.2	100.0
	공공·연구기관	37	13.5	32.4	35.1	18.9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23.1	21.6	30.6	24.6	100.0
	소재분야	41	19.5	29.3	36.6	14.6	100.0
	건설분야	67	29.9	19.4	29.9	20.9	100.0
	전기·전자분야	127	31.5	18.9	31.5	18.1	100.0
	정보통신분야	105	23.8	21.9	33.3	21.0	100.0
	화학분야	43	34.9	18.6	30.2	16.3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28.0	18.7	28.0	25.3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41.2	29.4	5.9	23.5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33.3	17.3	27.2	22.2	100.0
	기타	114	24.6	28.1	35.1	12.3	100.0
[응답자 현황]	경영진	279	37.3	18.3	27.6	16.8	100.0
	특허담당자	218	21.6	22.0	30.7	25.7	100.0
	일반사무	169	19.5	27.8	32.5	20.1	100.0
	연구·개발	138	27.5	20.3	35.5	16.7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29.4	21.7	30.0	18.9	100.0
	10~50개 미만	64	17.2	25.0	37.5	20.3	100.0
	50~100개 미만	25	16.0	16.0	28.0	40.0	100.0
	100개 이상	18	11.1	16.7	44.4	27.8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27.0	20.7	32.2	20.1	100.0
	없다	326	28.5	23.0	28.8	19.6	100.0

【표】 Q4) 귀사에서는 가장 적절한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허 심사대기기간 현황)○ 현재 한국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은 2015년 평균 10개월대 도달 후, 안정적으로 10개월대 관리 중 (우선심사 3개월대, 일반심사 13개월대 → 평균 10개월대)

		사례수	7~9 개월대	10~12 개월대	13개월대 (현수준)	14~16 개월대	17~18 개월대	[합계]
		N	%	%	%	%	%	%
[전체]		804	64.3	24.8	8.8	1.1	1.0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65.7	24.5	7.8	1.0	1.0	100.0
	중견기업	46	63.0	23.9	8.7	4.3	0.0	100.0
	대기업	18	44.4	27.8	22.2	0.0	5.6	100.0
	공공·연구기관	37	48.6	29.7	21.6	0.0	0.0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63.4	25.4	8.2	3.0	0.0	100.0
	소재분야	41	51.2	39.0	9.8	0.0	0.0	100.0
	건설분야	67	70.1	17.9	9.0	1.5	1.5	100.0
	전기·전자분야	127	67.7	21.3	9.4	1.6	0.0	100.0
	정보통신분야	105	67.6	20.0	11.4	0.0	1.0	100.0
	화학분야	43	58.1	32.6	9.3	0.0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65.3	24.0	8.0	1.3	1.3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70.6	29.4	0.0	0.0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54.3	29.6	11.1	0.0	4.9	100.0
	기타	114	67.5	24.6	6.1	0.9	0.9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72.8	19.0	5.4	1.1	1.8	100.0
	특허담당자	218	56.9	31.2	10.1	0.9	0.9	100.0
	일반사무	169	63.3	21.3	13.6	1.2	0.6	100.0
	연구·개발	138	60.1	30.4	8.0	1.4	0.0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67.4	23.5	7.2	0.7	1.1	100.0
	10~50개 미만	64	48.4	26.6	18.8	6.3	0.0	100.0
	50~100개 미만	25	48.0	40.0	12.0	0.0	0.0	100.0
	100개 이상	18	22.2	44.4	33.3	0.0	0.0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65.3	23.8	8.2	1.7	1.0	100.0
	없다	326	62.9	26.1	9.8	0.3	0.9	100.0

【표】 Q5) 귀사는 빠른 특허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모방에 대응하는 등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신기술 보유 사실을 제품홍보, 투자유치, 원청업체 요구 등 사업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과제 입찰 또는 신기술 인증 등 정부의 인증을 빠르게 받기 위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기술의 우수성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804	34.1	47.1	11.4	6.7	0.6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32.7	49.4	11.9	5.5	0.4	100.0
	중견기업	46	47.8	26.1	6.5	17.4	2.2	100.0
	대기업	18	50.0	22.2	5.6	16.7	5.6	100.0
	공공·연구기관	37	35.1	43.2	10.8	10.8	0.0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32.1	50.0	8.2	9.0	0.7	100.0
	소재분야	41	51.2	36.6	2.4	9.8	0.0	100.0
	건설분야	67	31.3	50.7	14.9	3.0	0.0	100.0
	전기·전자분야	127	34.6	42.5	13.4	7.1	2.4	100.0
	정보통신분야	105	33.3	44.8	15.2	6.7	0.0	100.0
	화학분야	43	46.5	41.9	7.0	4.7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32.0	44.0	12.0	12.0	0.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23.5	70.6	5.9	0.0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30.9	54.3	11.1	2.5	1.2	100.0
기타	114	32.5	48.2	13.2	6.1	0.0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31.9	52.3	12.9	2.9	0.0	100.0
	특허담당자	218	37.6	41.7	8.7	9.6	2.3	100.0
	일반사무	169	34.9	44.4	13.0	7.7	0.0	100.0
	연구·개발	138	31.9	48.6	10.9	8.7	0.0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32.3	49.4	12.2	6.2	0.0	100.0
	10~50개 미만	64	48.4	34.4	4.7	9.4	3.1	100.0
	50~100개 미만	25	36.0	32.0	12.0	12.0	8.0	100.0
	100개 이상	18	50.0	27.8	5.6	11.1	5.6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36.6	44.8	11.1	6.5	1.0	100.0
	없다	326	30.4	50.6	12.0	7.1	0.0	100.0

【표】 Q6) 현재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귀사는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단축하기 위해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처리기간 1개월에 대한 사회적 비용 도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수수료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수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상	[합계]
		N	%	%	%	%	%	%
[전체]		804	66.0	18.4	12.2	0.4	3.0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65.6	18.1	12.9	0.3	3.1	100.0
	중견기업	46	69.6	21.7	8.7	0.0	0.0	100.0
	대기업	18	66.7	22.2	11.1	0.0	0.0	100.0
	공공·연구기관	37	70.3	18.9	2.7	2.7	5.4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66.4	15.7	14.9	0.7	2.2	100.0
	소재분야	41	63.4	19.5	14.6	0.0	2.4	100.0
	건설분야	67	52.2	22.4	23.9	0.0	1.5	100.0
	전기·전자분야	127	63.0	23.6	11.8	0.0	1.6	100.0
	정보통신분야	105	66.7	14.3	9.5	1.0	8.6	100.0
	화학분야	43	67.4	23.3	9.3	0.0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70.7	18.7	9.3	0.0	1.3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70.6	11.8	11.8	0.0	5.9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69.1	16.0	11.1	1.2	2.5	100.0
	기타	114	71.1	17.5	7.9	0.0	3.5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68.8	15.4	11.1	0.7	3.9	100.0
	특허담당자	218	64.2	22.9	10.1	0.5	2.3	100.0
	일반사무	169	69.8	16.6	11.8	0.0	1.8	100.0
	연구·개발	138	58.7	19.6	18.1	0.0	3.6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64.7	18.7	13.3	0.3	3.0	100.0
	10~50개 미만	64	73.4	18.8	4.7	0.0	3.1	100.0
	50~100개 미만	25	72.0	20.0	8.0	0.0	0.0	100.0
	100개 이상	18	83.3	5.6	0.0	5.6	5.6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63.8	18.8	13.2	0.4	3.8	100.0
	없다	326	69.3	17.8	10.7	0.3	1.8	100.0

【표】 Q7) 현재,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소정의 비용을 들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사는 이와 같은 우선심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일반심사의 심사 대기기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것은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되므로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는 없다	우선심사 활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심사투입시간을 줄여서라도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합계]
		N			%
[전체]		803	37.0	63.0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37.0	63.0	100.0
	중견기업	46	37.0	63.0	100.0
	대기업	18	55.6	44.4	100.0
	공공·연구기관	36	27.8	72.2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38.1	61.9	100.0
	소재분야	41	43.9	56.1	100.0
	건설분야	67	41.8	58.2	100.0
	전기·전자분야	127	35.4	64.6	100.0
	정보통신분야	105	37.1	62.9	100.0
	화학분야	43	34.9	65.1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38.7	61.3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23.5	76.5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39.5	60.5	100.0
기타	113	31.9	68.1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30.8	69.2	100.0
	특허담당자	217	37.3	62.7	100.0
	일반사무	169	46.7	53.3	100.0
	연구·개발	138	37.0	63.0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35.6	64.4	100.0
	10~50개 미만	63	50.8	49.2	100.0
	50~100개 미만	25	36.0	64.0	100.0
	100개 이상	18	44.4	55.6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7	36.9	63.1	100.0
	없다	326	37.1	62.9	100.0

【표】 Q8) 귀사가 보유한 특허 중에서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특허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사례수	권리 범위가 협소함	시장성이 부족함	경쟁사에 의해 무효 가능성이 있음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특허는 없음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804	29.6	22.4	16.4	29.1	2.5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28.3	21.9	17.2	30.0	2.6	100.0
	중견기업	46	50.0	13.0	13.0	23.9	0.0	100.0
	대기업	18	44.4	27.8	5.6	16.7	5.6	100.0
	공공·연구기관	37	21.6	40.5	10.8	24.3	2.7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26.9	19.4	21.6	29.1	3.0	100.0
	소재분야	41	39.0	17.1	24.4	19.5	0.0	100.0
	건설분야	67	20.9	29.9	13.4	32.8	3.0	100.0
	전기·전자분야	127	34.6	22.0	12.6	27.6	3.1	100.0
	정보통신분야	105	25.7	24.8	12.4	36.2	1.0	100.0
	화학분야	43	39.5	16.3	9.3	34.9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33.3	17.3	14.7	32.0	2.7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29.4	17.6	17.6	29.4	5.9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35.8	19.8	21.0	19.8	3.7	100.0
	기타	114	21.9	29.8	17.5	28.1	2.6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33.0	17.9	15.4	29.4	4.3	100.0
	특허담당자	218	34.9	21.1	17.0	24.8	2.3	100.0
	일반사무	169	17.8	29.0	16.6	35.5	1.2	100.0
	연구·개발	138	29.0	25.4	17.4	27.5	0.7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27.5	22.7	15.9	31.3	2.6	100.0
	10~50개 미만	64	42.2	15.6	21.9	17.2	3.1	100.0
	50~100개 미만	25	52.0	24.0	20.0	4.0	0.0	100.0
	100개 이상	18	33.3	33.3	11.1	22.2	0.0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34.1	22.2	15.3	26.4	2.1	100.0
	없다	326	23.0	22.7	18.1	33.1	3.1	100.0

【표】 Q8) 귀사가 보유한 특허 중에서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특허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

		사례수	권리 범위가 협소함	시장성이 부족함	경쟁사에 의해 무효 가능성이 있음	특허권 행사가 곤란한 특허는 없음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804	39.6	33.0	25.9	33.2	3.1	134.7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38.5	31.7	25.6	34.6	3.0	133.4
	중견기업	46	58.7	30.4	39.1	23.9	2.2	154.3
	대기업	18	44.4	33.3	27.8	16.7	11.1	133.3
	공공·연구기관	37	32.4	59.5	13.5	27.0	2.7	135.1
[업종]	기계분야	134	37.3	27.6	32.8	29.9	3.0	130.6
	소재분야	41	51.2	26.8	39.0	19.5	0.0	136.6
	건설분야	67	29.9	35.8	19.4	37.3	4.5	126.9
	전기·전자분야	127	41.7	36.2	22.8	35.4	5.5	141.7
	정보통신분야	105	33.3	37.1	18.1	38.1	1.0	127.6
	화학분야	43	44.2	34.9	27.9	37.2	2.3	146.5
	바이오·의료분야	75	48.0	28.0	22.7	36.0	2.7	137.3
	에너지·자원분야	17	47.1	29.4	29.4	35.3	5.9	147.1
	지식서비스분야	81	48.1	28.4	32.1	29.6	3.7	142.0
	기타	114	32.5	38.6	23.7	31.6	2.6	128.9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41.6	30.8	26.2	34.1	4.7	137.3
	특허담당자	218	45.9	32.6	28.9	28.9	4.1	140.4
	일반사무	169	24.9	37.3	19.5	39.1	1.2	121.9
	연구·개발	138	43.5	32.6	28.3	31.2	0.7	136.2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37.3	32.4	24.7	35.6	2.9	132.9
	10~50개 미만	64	54.7	31.3	34.4	18.8	4.7	143.8
	50~100개 미만	25	64.0	36.0	44.0	4.0	8.0	156.0
	100개 이상	18	38.9	55.6	16.7	33.3	0.0	144.4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44.6	34.1	27.2	30.8	2.9	139.5
	없다	326	32.2	31.3	23.9	36.8	3.4	127.6

【표】 Q9x1) 귀하는 우선심사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N	%	%	%
[전체]		804	59.5	40.5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57.5	42.5	100.0
	중견기업	46	65.2	34.8	100.0
	대기업	18	66.7	33.3	100.0
	공공·연구기관	37	86.5	13.5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57.5	42.5	100.0
	소재분야	41	65.9	34.1	100.0
	건설분야	67	80.6	19.4	100.0
	전기·전자분야	127	59.8	40.2	100.0
	정보통신분야	105	51.4	48.6	100.0
	화학분야	43	65.1	34.9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50.7	49.3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58.8	41.2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64.2	35.8	100.0
	기타	114	54.4	45.6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61.6	38.4	100.0
	특허담당자	218	74.8	25.2	100.0
	일반사무	169	40.8	59.2	100.0
	연구·개발	138	53.6	46.4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55.2	44.8	100.0
	10~50개 미만	64	82.8	17.2	100.0
	50~100개 미만	25	92.0	8.0	100.0
	100개 이상	18	94.4	5.6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100.0	0.0	100.0
	없다	326	0.0	100.0	100.0

【표】 Q9(x1x1) 귀하가 주로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은 아래 중 어떤 것입니까?

		사례수	벤처 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 기업	제3자 실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기 실시 (준비)중	전문 기관 선행 기술 조사	직무 발명 보상 우수 기업
		N	%	%	%	%	%	%	%
[전체]		478	45.6	20.3	16.7	12.3	11.7	11.5	6.3
[기업유형]	중소기업	404	52.5	22.8	15.8	8.7	11.1	8.9	5.2
	중견기업	30	10.0	13.3	20.0	16.7	13.3	26.7	30.0
	대기업	12	0.0	0.0	41.7	8.3	50.0	33.3	0.0
	공공·연구기관	32	9.4	3.1	15.6	56.3	3.1	21.9	0.0
[업종]	기계분야	77	44.2	23.4	16.9	10.4	10.4	10.4	7.8
	소재분야	27	29.6	11.1	25.9	14.8	14.8	14.8	0.0
	건설분야	54	42.6	25.9	24.1	9.3	11.1	3.7	5.6
	전기·전자분야	76	52.6	23.7	17.1	10.5	3.9	9.2	9.2
	정보통신분야	54	59.3	25.9	16.7	3.7	5.6	5.6	3.7
	화학분야	28	35.7	32.1	14.3	14.3	21.4	17.9	10.7
	바이오·의료분야	38	50.0	5.3	15.8	15.8	13.2	10.5	5.3
	에너지·자원분야	10	60.0	10.0	30.0	10.0	10.0	20.0	0.0
	지식서비스분야	52	55.8	13.5	9.6	15.4	21.2	19.2	5.8
	기타	62	27.4	17.7	11.3	21.0	14.5	16.1	6.5
[응답자현황]	경영진	172	58.7	21.5	12.8	5.8	11.0	7.6	4.7
	특허담당자	163	32.5	16.0	18.4	12.3	19.0	18.4	11.0
	일반사무	69	49.3	31.9	23.2	15.9	0.0	2.9	1.4
	연구·개발	74	40.5	16.2	16.2	24.3	8.1	13.5	4.1
[출원 현황]	10개 미만	385	49.6	23.1	16.9	9.4	9.4	8.3	5.2
	10~50개 미만	53	34.0	13.2	15.1	18.9	17.0	17.0	15.1
	50~100개 미만	23	17.4	0.0	21.7	26.1	21.7	26.1	8.7
	100개 이상	17	29.4	5.9	11.8	41.2	35.3	47.1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45.6	20.3	16.7	12.3	11.7	11.5	6.3

【표】 Q9(x1x1) 귀하가 주로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은 아래 중 어떤 것입니까?

		지식 재산 경영인 증기업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	녹색 기술	지역 특화 사업 (지역 특구법)	수출 촉진	국가· 지자체	한국 PCT 국제 조사후 국내 단계 진입	조약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
		%	%	%	%	%	%	%	%
[전체]		5.6	5.2	4.6	3.3	3.3	2.3	2.1	1.7
[기업유형]	중소기업	5.7	5.7	5.0	3.7	3.7	2.2	1.0	1.2
	중견기업	6.7	0.0	3.3	0.0	3.3	3.3	6.7	6.7
	대기업	0.0	0.0	0.0	0.0	0.0	0.0	0.0	0.0
	공공·연구기관	6.3	6.3	3.1	3.1	0.0	3.1	12.5	3.1
[업종]	기계분야	3.9	2.6	3.9	5.2	5.2	3.9	0.0	0.0
	소재분야	0.0	0.0	3.7	0.0	3.7	0.0	7.4	0.0
	건설분야	3.7	1.9	9.3	3.7	1.9	1.9	1.9	0.0
	전기·전자분야	5.3	10.5	6.6	3.9	2.6	1.3	1.3	1.3
	정보통신분야	3.7	13.0	0.0	0.0	3.7	1.9	0.0	1.9
	화학분야	10.7	0.0	10.7	3.6	0.0	0.0	0.0	3.6
	바이오·의료분야	5.3	2.6	0.0	0.0	2.6	0.0	2.6	7.9
	에너지·자원분야	10.0	0.0	1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1.9	9.6	0.0	0.0	0.0	5.8	5.8	1.9
	기타	14.5	1.6	6.5	9.7	8.1	3.2	3.2	1.6
[응답자현황]	경영진	4.7	9.3	2.9	4.7	2.9	1.2	0.6	1.7
	특허담당자	6.1	3.1	4.3	1.8	3.1	1.2	3.1	1.8
	일반사무	2.9	0.0	0.0	0.0	7.2	4.3	1.4	1.4
	연구·개발	9.5	5.4	13.5	6.8	1.4	5.4	4.1	1.4
[출원 현황]	10개 미만	5.2	5.5	5.2	3.9	3.6	2.3	1.6	1.6
	10~50개 미만	9.4	3.8	1.9	0.0	1.9	1.9	1.9	1.9
	50~100개 미만	8.7	4.3	4.3	4.3	0.0	0.0	0.0	0.0
	100개 이상	0.0	5.9	0.0	0.0	5.9	5.9	17.6	5.9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5.6	5.2	4.6	3.3	3.3	2.3	2.1	1.7

【표】 Q9x1x1) 귀하가 주로 신청하는 우선심사 요건은 아래 중 어떤 것입니까?

		방위산업	65세이상 또는 시한부환자	첨단의료복합 단지내 연구개발(첨단 의료단지법)	[합계]
		%	%	%	%
[전체]		0.6	0.4	0.2	154.0
[기업유형]	중소기업	0.5	0.5	0.0	154.2
	중견기업	0.0	0.0	0.0	160.0
	대기업	0.0	0.0	0.0	133.3
	공공·연구기관	3.1	0.0	3.1	153.1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148.1
	소재분야	0.0	0.0	0.0	125.9
	건설분야	0.0	0.0	0.0	146.3
	전기·전자분야	1.3	0.0	0.0	160.5
	정보통신분야	0.0	0.0	0.0	144.4
	화학분야	0.0	0.0	0.0	175.0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136.8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160.0
	지식서비스분야	1.9	3.8	0.0	171.2
	기타	1.6	0.0	1.6	166.1
[응답자현황]	경영진	0.6	0.0	0.0	150.6
	특허담당자	0.6	0.6	0.6	154.0
	일반사무	0.0	1.4	0.0	143.5
	연구·개발	1.4	0.0	0.0	171.6
[출원 현황]	10개 미만	0.5	0.0	0.0	151.2
	10~50개 미만	0.0	1.9	0.0	154.7
	50~100개 미만	0.0	0.0	4.3	147.8
	100개 이상	5.9	5.9	0.0	223.5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6	0.4	0.2	154.0

【표】 Q9x1x2) 귀하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제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맞춰 빠르게 사업화 하기 위해	경쟁사의 기술 모방을 늦추고 사업의 장벽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 전에 각종 정부정책 자금, 기술보증 기금 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실적제출용	출원기술의 우수성과 선행기술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	회피 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하기 위해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478	61.3	35.4	24.5	16.3	12.8	100.0	151.7	
[기업유형]	중소기업	404	65.1	36.6	25.5	13.4	11.6	100.0	153.0
	중견기업	30	36.7	36.7	16.7	33.3	26.7	-	150.0
	대기업	12	66.7	50.0	8.3	41.7	33.3	-	200.0
	공공·연구기관	32	34.4	12.5	25.0	28.1	6.3	100.0	118.8
[업종]	기계분야	77	62.3	50.6	28.6	13.0	11.7	100.0	167.5
	소재분야	27	70.4	33.3	18.5	25.9	18.5	-	166.7
	건설분야	54	75.9	22.2	5.6	13.0	9.3	-	125.9
	전기·전자분야	76	55.3	30.3	28.9	18.4	14.5	100.0	148.7
	정보통신분야	54	64.8	42.6	27.8	11.1	14.8	-	161.1
	화학분야	28	64.3	35.7	21.4	25.0	17.9	-	164.3
	바이오·의료분야	38	65.8	39.5	13.2	13.2	7.9	-	139.5
	에너지·자원분야	10	90.0	30.0	20.0	10.0	10.0	-	160.0
	지식서비스분야	52	48.1	36.5	42.3	13.5	13.5	100.0	155.8
	기타	62	50.0	25.8	24.2	22.6	11.3	100.0	140.3
[응답자현황]	경영진	172	66.9	39.5	26.7	11.6	11.0	-	155.8
	특허담당자	163	53.4	33.1	18.4	23.9	16.0	100.0	148.5
	일반사무	69	60.9	31.9	29.0	13.0	1.4	-	136.2
	연구·개발	74	66.2	33.8	28.4	13.5	20.3	100.0	163.5
[출원 현황]	10개 미만	385	64.9	33.5	24.2	14.0	11.4	100.0	148.8
	10~50개 미만	53	47.2	52.8	24.5	18.9	17.0	100.0	162.3
	50~100개 미만	23	43.5	34.8	17.4	43.5	26.1	100.0	169.6
	100개 이상	17	47.1	23.5	41.2	23.5	11.8	100.0	158.8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61.3	35.4	24.5	16.3	12.8	100.0	151.7

【표】 Q9x1x3) 귀하가 기대하는 우선심사의 심사착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례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기타	[합계]
		N	%	%	%	%	%	%	%
[전체]		478	31.4	28.2	34.7	1.7	3.8	0.2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404	33.9	27.2	32.9	1.7	4.0	0.2	100.0
	중견기업	30	16.7	20.0	53.3	3.3	6.7	0.0	100.0
	대기업	12	16.7	41.7	41.7	0.0	0.0	0.0	100.0
	공공·연구기관	32	18.8	43.8	37.5	0.0	0.0	0.0	100.0
[업종]	기계분야	77	15.6	31.2	41.6	3.9	7.8	0.0	100.0
	소재분야	27	14.8	37.0	40.7	7.4	0.0	0.0	100.0
	건설분야	54	29.6	31.5	35.2	0.0	3.7	0.0	100.0
	전기·전자분야	76	39.5	22.4	31.6	0.0	5.3	1.3	100.0
	정보통신분야	54	40.7	20.4	35.2	3.7	0.0	0.0	100.0
	화학분야	28	25.0	35.7	32.1	0.0	7.1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38	42.1	28.9	26.3	0.0	2.6	0.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0	20.0	40.0	30.0	0.0	10.0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52	34.6	26.9	34.6	0.0	3.8	0.0	100.0
	기타	62	37.1	27.4	33.9	1.6	0.0	0.0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172	41.3	27.3	28.5	1.2	1.7	0.0	100.0
	특허담당자	163	27.0	27.6	40.5	1.8	3.1	0.0	100.0
	일반사무	69	29.0	31.9	29.0	1.4	8.7	0.0	100.0
	연구·개발	74	20.3	28.4	41.9	2.7	5.4	1.4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385	33.0	28.1	33.5	2.1	3.1	0.3	100.0
	10~50개 미만	53	26.4	22.6	41.5	0.0	9.4	0.0	100.0
	50~100개 미만	23	26.1	30.4	39.1	0.0	4.3	0.0	100.0
	100개 이상	17	17.6	47.1	35.3	0.0	0.0	0.0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31.4	28.2	34.7	1.7	3.8	0.2	100.0

【표】 Q9x1x4) 심사품질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앞에서 답변((Q9x1x3)하신 기간만큼 빠른 처리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귀하가 지불하실 의사가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례수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기타	[합계]
		N	%	%	%	%	%	%	%
[전체]		478	68.6	17.6	5.4	1.0	1.0	6.3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404	68.3	18.1	5.0	1.0	1.2	6.4	100.0
	중견기업	30	66.7	20.0	10.0	0.0	0.0	3.3	100.0
	대기업	12	83.3	16.7	0.0	0.0	0.0	0.0	100.0
	공공·연구기관	32	68.8	9.4	9.4	3.1	0.0	9.4	100.0
[업종]	기계분야	77	63.6	22.1	6.5	0.0	0.0	7.8	100.0
	소재분야	27	85.2	11.1	0.0	3.7	0.0	0.0	100.0
	건설분야	54	64.8	18.5	9.3	3.7	1.9	1.9	100.0
	전기·전자분야	76	73.7	17.1	3.9	0.0	1.3	3.9	100.0
	정보통신분야	54	66.7	22.2	7.4	0.0	1.9	1.9	100.0
	화학분야	28	71.4	17.9	3.6	0.0	0.0	7.1	100.0
	바이오·의료분야	38	68.4	10.5	7.9	0.0	5.3	7.9	100.0
	에너지·자원분야	10	50.0	30.0	10.0	10.0	0.0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52	76.9	7.7	3.8	0.0	0.0	11.5	100.0
	기타	62	61.3	21.0	3.2	1.6	0.0	12.9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172	72.7	16.3	3.5	0.0	1.2	6.4	100.0
	특허담당자	163	67.5	17.2	5.5	1.8	0.6	7.4	100.0
	일반사무	69	73.9	13.0	5.8	2.9	0.0	4.3	100.0
	연구·개발	74	56.8	25.7	9.5	0.0	2.7	5.4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385	68.3	18.2	5.5	1.0	1.0	6.0	100.0
	10~50개 미만	53	73.6	15.1	3.8	1.9	1.9	3.8	100.0
	50~100개 미만	23	52.2	26.1	8.7	0.0	0.0	13.0	100.0
	100개 이상	17	82.4	0.0	5.9	0.0	0.0	11.8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68.6	17.6	5.4	1.0	1.0	6.3	100.0

【표】 Q9x1x5) 귀하께서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우선심사 신청료가 부담이 되어서	연차가 늘어날 수록 상승하는 연차 등록료 부담 때문	기술 공개가 빨리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한 우려	특히 여부의 결정이 빠르게 되어 국내 우선권 주장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	빠르게 심사받 아야할 필요성이 없는 산업 분야에 해당	기타	[합계]	
								N	%
[전체]	326	36.8	14.4	8.3	7.1	25.5	8.0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299	37.1	15.1	8.4	7.0	26.1	6.4	100.0
	중견기업	16	50.0	6.3	12.5	6.3	18.8	6.3	100.0
	대기업	6	0.0	16.7	0.0	16.7	16.7	50.0	100.0
	공공·연구기관	5	20.0	0.0	0.0	0.0	20.0	60.0	100.0
[업종]	기계분야	57	38.6	15.8	1.8	7.0	26.3	10.5	100.0
	소재분야	14	21.4	28.6	14.3	0.0	28.6	7.1	100.0
	건설분야	13	23.1	15.4	0.0	15.4	38.5	7.7	100.0
	전기·전자분야	51	35.3	9.8	9.8	11.8	25.5	7.8	100.0
	정보통신분야	51	41.2	5.9	13.7	3.9	25.5	9.8	100.0
	화학분야	15	33.3	13.3	6.7	0.0	46.7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37	37.8	16.2	21.6	8.1	8.1	8.1	100.0
	에너지·자원분야	7	28.6	0.0	14.3	0.0	57.1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29	51.7	17.2	3.4	0.0	17.2	10.3	100.0
	기타	52	32.7	21.2	1.9	11.5	26.9	5.8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107	40.2	11.2	8.4	8.4	22.4	9.3	100.0
	특허담당자	55	34.5	10.9	12.7	5.5	29.1	7.3	100.0
	일반사무	100	37.0	15.0	5.0	9.0	26.0	8.0	100.0
	연구·개발	64	32.8	21.9	9.4	3.1	26.6	6.3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312	37.2	14.4	8.3	6.4	25.6	8.0	100.0
	10~50개 미만	11	27.3	18.2	9.1	27.3	18.2	0.0	100.0
	50~100개 미만	2	50.0	0.0	0.0	0.0	0.0	50.0	100.0
	100개 이상	1	0.0	0.0	0.0	0.0	100.0	0.0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없다	326	36.8	14.4	8.3	7.1	25.5	8.0	100.0

【표】 Q9x2) 귀하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건에 대해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없다]	[보통]
		N	%	%	%	%	%	%	%
[전체]		804	0.5	1.6	15.5	37.7	44.7	2.1	15.5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0.6	1.4	15.6	36.3	46.1	2.0	15.6
	중견기업	46	0.0	2.2	21.7	52.2	23.9	2.2	21.7
	대기업	18	0.0	5.6	11.1	38.9	44.4	5.6	11.1
	공공·연구기관	37	0.0	2.7	8.1	45.9	43.2	2.7	8.1
[업종]	기계분야	134	0.0	3.0	16.4	40.3	40.3	3.0	16.4
	소재분야	41	0.0	2.4	14.6	41.5	41.5	2.4	14.6
	건설분야	67	0.0	3.0	3.0	44.8	49.3	3.0	3.0
	전기·전자분야	127	1.6	0.8	15.0	41.7	40.9	2.4	15.0
	정보통신분야	105	0.0	1.9	17.1	41.0	40.0	1.9	17.1
	화학분야	43	0.0	0.0	18.6	30.2	51.2	0.0	18.6
	바이오·의료분야	75	1.3	2.7	14.7	28.0	53.3	4.0	14.7
	에너지·자원분야	17	0.0	0.0	23.5	41.2	35.3	0.0	23.5
	지식서비스분야	81	1.2	0.0	21.0	21.0	56.8	1.2	21.0
	기타	114	0.0	0.9	15.8	42.1	41.2	0.9	15.8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0.4	1.4	10.8	29.0	58.4	1.8	10.8
	특허담당자	218	0.5	1.4	13.8	41.7	42.7	1.8	13.8
	일반사무	169	0.0	2.4	23.7	44.4	29.6	2.4	23.7
	연구·개발	138	1.4	1.4	18.1	40.6	38.4	2.9	18.1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0.6	1.6	16.1	37.2	44.6	2.2	16.1
	10~50개 미만	64	0.0	3.1	12.5	43.8	40.6	3.1	12.5
	50~100개 미만	25	0.0	0.0	12.0	36.0	52.0	0.0	12.0
	100개 이상	18	0.0	0.0	11.1	38.9	50.0	0.0	11.1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0.4	0.8	5.2	33.3	60.3	1.3	5.2
	없다	326	0.6	2.8	30.7	44.2	21.8	3.4	30.7

【표】 Q9x2) 귀하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건에 대해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합계]	[평균]
		%	%	Mean
[전체]		82.3	100.0	4.24
[기업유형]	중소기업	82.4	100.0	4.26
	중견기업	76.1	100.0	3.98
	대기업	83.3	100.0	4.22
	공공·연구기관	89.2	100.0	4.30
[업종]	기계분야	80.6	100.0	4.18
	소재분야	82.9	100.0	4.22
	건설분야	94.0	100.0	4.40
	전기·전자분야	82.7	100.0	4.20
	정보통신분야	81.0	100.0	4.19
	화학분야	81.4	100.0	4.33
	바이오·의료분야	81.3	100.0	4.29
	에너지·자원분야	76.5	100.0	4.12
	지식서비스분야	77.8	100.0	4.32
	기타	83.3	100.0	4.24
[응답자현황]	경영진	87.5	100.0	4.44
	특허담당자	84.4	100.0	4.25
	일반사무	74.0	100.0	4.01
	연구·개발	79.0	100.0	4.13
[출원 현황]	10개 미만	81.8	100.0	4.24
	10~50개 미만	84.4	100.0	4.22
	50~100개 미만	88.0	100.0	4.40
	100개 이상	88.9	100.0	4.39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93.5	100.0	4.52
	없다	66.0	100.0	3.84

【표】 Q9x2x1_1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건)

		사례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N	%	%	%	%	%	%	%
[전체]		804	5.2	30.7	22.5	12.6	5.6	6.8	1.2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5.4	34.0	24.6	12.5	6.3	7.1	1.3
	중견기업	46	2.2	10.9	15.2	17.4	2.2	4.3	0.0
	대기업	18	11.1	0.0	0.0	11.1	0.0	5.6	0.0
	공공·연구기관	37	2.7	8.1	2.7	8.1	0.0	5.4	2.7
[업종]	기계분야	134	6.0	38.1	20.1	8.2	3.7	10.4	1.5
	소재분야	41	9.8	12.2	26.8	14.6	2.4	7.3	2.4
	건설분야	67	3.0	32.8	22.4	11.9	7.5	6.0	1.5
	전기·전자분야	127	3.1	32.3	22.0	11.8	7.9	6.3	2.4
	정보통신분야	105	6.7	31.4	30.5	14.3	3.8	6.7	1.0
	화학분야	43	0.0	32.6	16.3	20.9	11.6	2.3	0.0
	바이오·의료분야	75	4.0	29.3	25.3	9.3	6.7	8.0	0.0
	에너지·자원분야	17	0.0	11.8	52.9	11.8	11.8	5.9	0.0
	지식서비스분야	81	4.9	25.9	14.8	17.3	6.2	2.5	0.0
	기타	114	8.8	31.6	18.4	12.3	2.6	7.9	1.8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3.2	34.4	28.0	13.6	7.5	7.9	1.8
	특허담당자	218	2.8	20.2	17.0	10.1	3.7	7.8	1.8
	일반사무	169	13.6	33.7	19.5	11.8	5.9	2.4	0.0
	연구·개발	138	2.9	36.2	23.9	15.2	4.3	8.7	0.7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6.0	35.0	25.7	13.9	6.5	7.6	1.3
	10~50개 미만	64	0.0	4.7	1.6	4.7	0.0	1.6	1.6
	50~100개 미만	25	0.0	0.0	0.0	4.0	0.0	4.0	0.0
	100개 이상	18	0.0	0.0	5.6	0.0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1.5	23.8	23.8	12.1	6.5	8.2	1.7
	없다	326	10.7	40.8	20.6	13.2	4.3	4.9	0.6

【표】 Q9x2x1_1)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건)

		7건	8건	10건	11건	12건	15건	17건	20건
		%	%	%	%	%	%	%	%
[전체]		1.0	0.6	4.5	0.1	0.1	0.6	0.2	0.7
[기업유형]	중소기업	1.1	0.6	3.6	0.0	0.1	0.6	0.1	0.3
	중견기업	0.0	2.2	17.4	0.0	0.0	2.2	2.2	2.2
	대기업	0.0	0.0	5.6	5.6	0.0	0.0	0.0	5.6
	공공·연구기관	0.0	0.0	5.4	0.0	0.0	0.0	0.0	5.4
[업종]	기계분야	0.7	0.7	6.0	0.0	0.0	0.0	0.0	1.5
	소재분야	0.0	0.0	9.8	0.0	2.4	2.4	0.0	2.4
	건설분야	1.5	0.0	7.5	0.0	0.0	0.0	0.0	1.5
	전기·전자분야	0.8	0.8	6.3	0.8	0.0	0.8	0.0	0.0
	정보통신분야	0.0	2.9	1.9	0.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0.0	2.3	0.0	0.0	0.0	2.3	0.0
	바이오·의료분야	2.7	0.0	8.0	0.0	0.0	1.3	1.3	0.0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2.5	0.0	0.0	0.0	0.0	1.2	0.0	2.5
	기타	0.9	0.0	1.8	0.0	0.0	0.9	0.0	0.0
[응답자현황]	경영진	0.7	0.0	2.2	0.0	0.0	0.0	0.0	0.4
	특허담당자	0.5	1.8	7.3	0.0	0.5	1.8	0.5	1.8
	일반사무	1.2	0.6	5.3	0.6	0.0	0.6	0.6	0.6
	연구·개발	2.2	0.0	3.6	0.0	0.0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1.1	0.7	1.7	0.0	0.0	0.3	0.0	0.0
	10~50개 미만	0.0	0.0	37.5	1.6	1.6	4.7	3.1	7.8
	50~10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0개 이상	0.0	0.0	0.0	0.0	0.0	0.0	0.0	5.6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1.5	1.0	6.1	0.0	0.0	0.6	0.2	1.3
	없다	0.3	0.0	2.1	0.3	0.3	0.6	0.3	0.0

【표】 Q9x2x1_1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건)

		22건	30건	38건	40건	50건	60건	70건	80건
		%	%	%	%	%	%	%	%
[전체]		0.4	1.4	0.1	0.2	1.1	0.2	0.6	0.7
[기업유형]	중소기업	0.1	0.7	0.0	0.0	0.6	0.1	0.0	0.0
	중견기업	2.2	4.3	2.2	2.2	4.3	0.0	2.2	4.3
	대기업	0.0	11.1	0.0	5.6	16.7	0.0	5.6	5.6
	공공·연구기관	2.7	5.4	0.0	0.0	0.0	2.7	8.1	8.1
[업종]	기계분야	0.7	0.7	0.0	0.0	0.7	0.0	0.0	0.7
	소재분야	0.0	2.4	0.0	0.0	2.4	0.0	0.0	2.4
	건설분야	1.5	1.5	0.0	1.5	0.0	0.0	0.0	0.0
	전기·전자분야	0.0	1.6	0.8	0.0	1.6	0.0	0.8	0.0
	정보통신분야	0.0	1.0	0.0	0.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0.0	0.0	2.3	2.3	0.0	2.3	0.0
	바이오·의료분야	0.0	1.3	0.0	0.0	0.0	0.0	0.0	1.3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5.9	0.0	0.0
	지식서비스분야	0.0	2.5	0.0	0.0	4.9	1.2	1.2	2.5
기타	0.9	1.8	0.0	0.0	0.0	0.0	1.8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4	0.0	0.0	0.0	0.0	0.0	0.0
	특허담당자	1.4	3.7	0.0	0.9	2.8	0.9	2.3	2.8
	일반사무	0.0	0.6	0.0	0.0	1.2	0.0	0.0	0.0
	연구·개발	0.0	0.7	0.7	0.0	0.7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0.1	0.0	0.0	0.0
	10~50개 미만	4.7	17.2	0.0	3.1	3.1	0.0	0.0	0.0
	50~100개 미만	0.0	0.0	4.0	0.0	24.0	8.0	20.0	24.0
	100개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6	2.3	0.0	0.4	1.7	0.4	1.0	1.3
	없다	0.0	0.0	0.3	0.0	0.3	0.0	0.0	0.0

【표】 Q9x2x1_1)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건)

		87건	88건	90건	100건	120건	130건	150건	200건
		%	%	%	%	%	%	%	%
[전체]		0.1	0.1	0.1	0.4	0.1	0.1	0.4	0.1
[기업유형]	중소기업	0.1	0.0	0.0	0.1	0.1	0.0	0.0	0.1
	중견기업	0.0	0.0	0.0	0.0	0.0	0.0	0.0	0.0
	대기업	0.0	0.0	0.0	0.0	0.0	5.6	5.6	0.0
	공공·연구기관	0.0	2.7	2.7	5.4	0.0	0.0	5.4	0.0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소재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정보통신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분야	0.0	0.0	0.0	0.0	0.0	2.3	0.0	0.0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0.0	0.0	0.0	1.3	0.0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1.2	0.0	0.0	1.2	1.2	0.0	1.2	0.0
	기타	0.0	0.9	0.9	1.8	0.0	0.0	0.9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0	0.0	0.0	0.0	0.0	0.0	0.0
	특허담당자	0.5	0.5	0.5	1.4	0.5	0.5	1.4	0.5
	일반사무	0.0	0.0	0.0	0.0	0.0	0.0	0.0	0.0
	연구·개발	0.0	0.0	0.0	0.0	0.0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50개 미만	0.0	0.0	0.0	0.0	0.0	0.0	1.6	0.0
	50~100개 미만	4.0	4.0	4.0	0.0	0.0	0.0	0.0	0.0
	100개 이상	0.0	0.0	0.0	16.7	5.6	5.6	11.1	5.6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2	0.2	0.2	0.6	0.2	0.2	0.6	0.2
	없다	0.0	0.0	0.0	0.0	0.0	0.0	0.0	0.0

【표】 Q9x2x1_1)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건)

		300건	310건	500건	667건	[합계]	[평균]
		%	%	%	%	%	Mean
[전체]		0.4	0.1	0.1	0.1	99.8	9.84
[기업유형]	중소기업	0.1	0.0	0.1	0.0	100.0	5.03
	중견기업	0.0	0.0	0.0	0.0	100.0	14.93
	대기업	0.0	0.0	0.0	0.0	100.0	40.67
	공공·연구기관	5.4	2.7	0.0	2.7	94.6	83.91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0.0	100.0	4.16
	소재분야	0.0	0.0	0.0	0.0	100.0	7.73
	건설분야	0.0	0.0	0.0	0.0	100.0	4.34
	전기·전자분야	0.0	0.0	0.0	0.0	100.0	4.95
	정보통신분야	0.0	0.0	0.0	0.0	100.0	2.60
	화학분야	0.0	0.0	0.0	2.3	100.0	24.74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0.0	100.0	6.63
	에너지·자원분야	0.0	0.0	0.0	0.0	100.0	5.82
	지식서비스분야	1.2	0.0	1.2	0.0	97.5	25.23
	기타	1.8	0.9	0.0	0.0	100.0	19.04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0	0.0	0.0	100.0	2.56
	특허담당자	0.9	0.5	0.5	0.0	99.5	23.98
	일반사무	0.6	0.0	0.0	0.6	99.4	9.02
	연구·개발	0.0	0.0	0.0	0.0	100.0	3.32
[출원 현황]	10개 미만	0.0	0.0	0.0	0.0	100.0	2.42
	10~50개 미만	0.0	0.0	0.0	0.0	100.0	18.64
	50~100개 미만	0.0	0.0	0.0	0.0	100.0	62.44
	100개 이상	16.7	5.6	5.6	5.6	88.9	215.56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6	0.0	0.2	0.2	99.6	14.29
	없다	0.0	0.3	0.0	0.0	100.0	3.34

【표】 Q9x2x1_2)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

		사례수	0%	1%	2%	3%	5%	6%	7%
		N	%	%	%	%	%	%	%
[전체]		804	24.0	0.5	0.4	0.9	2.0	0.1	0.1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24.9	0.4	0.3	0.4	0.6	0.0	0.0
	중견기업	46	30.4	0.0	0.0	0.0	8.7	2.2	2.2
	대기업	18	16.7	0.0	0.0	11.1	0.0	0.0	0.0
	공공·연구기관	37	2.7	2.7	2.7	5.4	21.6	0.0	0.0
[업종]	기계분야	134	20.1	0.7	0.0	0.0	2.2	0.7	0.0
	소재분야	41	22.0	0.0	2.4	0.0	0.0	0.0	0.0
	건설분야	67	7.5	1.5	0.0	1.5	0.0	0.0	0.0
	전기·전자분야	127	30.7	0.0	0.0	1.6	1.6	0.0	0.0
	정보통신분야	105	32.4	1.0	0.0	0.0	0.0	0.0	0.0
	화학분야	43	20.9	2.3	0.0	0.0	4.7	0.0	0.0
	바이오·의료분야	75	21.3	0.0	0.0	0.0	1.3	0.0	0.0
	에너지·자원분야	17	17.6	0.0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81	19.8	0.0	2.5	2.5	3.7	0.0	0.0
	기타	114	30.7	0.0	0.0	1.8	4.4	0.0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19.0	0.7	0.0	0.7	0.4	0.0	0.0
	특허담당자	218	19.7	0.0	0.9	1.8	6.0	0.5	0.5
	일반사무	169	33.1	1.2	0.0	0.0	1.2	0.0	0.0
	연구·개발	138	29.7	0.0	0.7	0.7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26.7	0.4	0.3	0.0	0.3	0.0	0.1
	10~50개 미만	64	7.8	0.0	0.0	7.8	3.1	0.0	0.0
	50~100개 미만	25	8.0	0.0	0.0	4.0	28.0	4.0	0.0
	100개 이상	18	0.0	5.6	5.6	5.6	27.8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4.8	0.8	0.6	1.5	2.9	0.2	0.0
	없다	326	52.1	0.0	0.0	0.0	0.6	0.0	0.3

【표】 Q9x2x1_2)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

		8%	9%	10%	12%	13%	15%	20%	25%
		%	%	%	%	%	%	%	%
[전체]		0.1	0.1	8.3	0.2	0.1	0.5	6.5	1.6
[기업유형]	중소기업	0.0	0.1	5.8	0.1	0.1	0.3	6.5	1.7
	중견기업	0.0	0.0	19.6	0.0	0.0	0.0	2.2	2.2
	대기업	0.0	0.0	44.4	0.0	0.0	5.6	0.0	0.0
	공공·연구기관	2.7	0.0	24.3	2.7	0.0	2.7	13.5	0.0
[업종]	기계분야	0.7	0.0	3.7	0.0	0.0	0.0	11.2	1.5
	소재분야	0.0	0.0	14.6	0.0	0.0	0.0	4.9	0.0
	건설분야	0.0	0.0	4.5	0.0	0.0	1.5	6.0	3.0
	전기·전자분야	0.0	0.8	7.1	0.0	0.0	0.0	4.7	1.6
	정보통신분야	0.0	0.0	4.8	0.0	0.0	0.0	3.8	1.9
	화학분야	0.0	0.0	16.3	0.0	0.0	0.0	0.0	4.7
	바이오·의료분야	0.0	0.0	16.0	0.0	1.3	1.3	9.3	1.3
	에너지·자원분야	0.0	0.0	11.8	0.0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0.0	0.0	6.2	1.2	0.0	1.2	8.6	1.2
	기타	0.0	0.0	11.4	0.9	0.0	0.9	6.1	0.9
[응답자현황]	경영진	0.0	0.0	4.3	0.0	0.0	0.4	2.9	2.2
	특허담당자	0.0	0.5	14.2	0.5	0.5	0.9	9.6	0.0
	일반사무	0.0	0.0	11.2	0.6	0.0	0.0	4.1	3.0
	연구·개발	0.7	0.0	3.6	0.0	0.0	0.7	11.6	1.4
[출원 현황]	10개 미만	0.1	0.0	4.7	0.1	0.0	0.1	5.9	1.6
	10~50개 미만	0.0	1.6	37.5	0.0	1.6	1.6	9.4	1.6
	50~100개 미만	0.0	0.0	32.0	0.0	0.0	4.0	8.0	4.0
	100개 이상	0.0	0.0	11.1	5.6	0.0	5.6	16.7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0	0.2	9.6	0.2	0.2	0.8	7.7	2.1
	없다	0.3	0.0	6.4	0.3	0.0	0.0	4.6	0.9

【표】 Q9x2x1_2)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

		30%	33%	40%	50%	60%	64%	65%	66%
		%	%	%	%	%	%	%	%
[전체]		6.1	1.9	0.6	19.2	1.5	0.1	0.1	0.1
[기업유형]	중소기업	6.3	2.0	0.4	20.9	1.4	0.1	0.1	0.1
	중견기업	6.5	2.2	4.3	8.7	2.2	0.0	0.0	0.0
	대기업	5.6	0.0	0.0	0.0	5.6	0.0	0.0	0.0
	공공·연구기관	2.7	0.0	0.0	8.1	0.0	0.0	0.0	0.0
[업종]	기계분야	6.7	0.7	0.7	21.6	2.2	0.0	0.0	0.0
	소재분야	7.3	0.0	0.0	17.1	4.9	0.0	0.0	0.0
	건설분야	9.0	3.0	3.0	14.9	1.5	0.0	0.0	0.0
	전기·전자분야	3.9	3.1	0.8	26.0	0.0	0.0	0.8	0.0
	정보통신분야	8.6	2.9	0.0	15.2	1.0	0.0	0.0	0.0
	화학분야	4.7	7.0	2.3	7.0	0.0	0.0	0.0	2.3
	바이오·의료분야	5.3	0.0	0.0	25.3	2.7	0.0	0.0	0.0
	에너지·자원분야	11.8	0.0	0.0	29.4	0.0	0.0	0.0	0.0
	지식서비스분야	9.9	0.0	0.0	18.5	1.2	1.2	0.0	0.0
	기타	0.9	1.8	0.0	14.9	1.8	0.0	0.0	0.0
[응답자현황]	경영진	7.9	1.8	0.7	30.5	0.7	0.0	0.0	0.0
	특허담당자	7.8	0.5	0.9	8.3	0.9	0.5	0.5	0.5
	일반사무	3.0	1.8	0.6	16.0	3.0	0.0	0.0	0.0
	연구·개발	3.6	4.3	0.0	17.4	2.2	0.0	0.0	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3	2.2	0.7	21.5	1.3	0.0	0.1	0.1
	10~50개 미만	7.8	0.0	0.0	6.3	3.1	0.0	0.0	0.0
	50~100개 미만	0.0	0.0	0.0	0.0	0.0	4.0	0.0	0.0
	100개 이상	0.0	0.0	0.0	0.0	5.6	0.0	0.0	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6.3	2.3	0.8	22.8	1.9	0.2	0.2	0.2
	없다	5.8	1.2	0.3	13.8	0.9	0.0	0.0	0.0

【표】 Q9x2x1_2) 귀사에서 현재 1년에 출원하는 출원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은 몇 % 정도입니까? ▶ (%)

		67%	70%	75%	80%	90%	100%	[합계]	[평균]
		%	%	%	%	%	%	%	Mean
[전체]		0.2	0.4	0.1	1.2	0.5	22.4	100.0	40.59
[기업유형]	중소기업	0.3	0.4	0.1	1.3	0.6	24.5	100.0	43.35
	중견기업	0.0	0.0	0.0	0.0	0.0	8.7	100.0	22.41
	대기업	0.0	0.0	0.0	0.0	0.0	11.1	100.0	21.72
	공공·연구기관	0.0	0.0	0.0	2.7	0.0	5.4	100.0	19.84
[업종]	기계분야	0.0	0.0	0.0	0.0	0.0	26.9	100.0	44.80
	소재분야	0.0	0.0	0.0	0.0	0.0	26.8	100.0	42.98
	건설분야	0.0	0.0	0.0	3.0	0.0	40.3	100.0	58.58
	전기·전자분야	0.8	0.0	0.0	0.0	0.0	16.5	100.0	35.35
	정보통신분야	1.0	1.0	1.0	1.9	0.0	23.8	100.0	40.78
	화학분야	0.0	0.0	0.0	0.0	2.3	25.6	100.0	40.37
	바이오·의료분야	0.0	0.0	0.0	2.7	0.0	12.0	100.0	34.24
	에너지·자원분야	0.0	5.9	0.0	0.0	0.0	23.5	100.0	47.06
	지식서비스분야	0.0	1.2	0.0	0.0	1.2	19.8	100.0	38.78
	기타	0.0	0.0	0.0	3.5	1.8	17.5	100.0	34.44
[응답자현황]	경영진	0.7	0.0	0.4	0.4	0.0	26.5	100.0	48.11
	특허담당자	0.0	0.9	0.0	2.3	1.4	20.2	100.0	36.40
	일반사무	0.0	0.6	0.0	2.4	0.0	18.3	100.0	34.96
	연구·개발	0.0	0.0	0.0	0.0	0.7	22.5	100.0	38.88
[출원 현황]	10개 미만	0.3	0.4	0.1	1.1	0.3	25.0	100.0	43.48
	10~50개 미만	0.0	0.0	0.0	1.6	0.0	9.4	100.0	24.95
	50~100개 미만	0.0	0.0	0.0	0.0	4.0	0.0	100.0	14.32
	100개 이상	0.0	0.0	0.0	5.6	5.6	0.0	100.0	20.44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0.2	0.6	0.2	1.5	0.8	30.1	100.0	52.16
	없다	0.3	0.0	0.0	0.9	0.0	11.0	100.0	23.62

【표】 Q9x2x2)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누구나 소정의 비용(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비용 약 40만원)을 들여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사례수	긴급 처리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우선심사를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심사의 취지에 어긋난다	기타	[합계]
		N	%	%	%	%
[전체]		804	82.3	15.8	1.9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82.5	16.1	1.4	100.0
	중견기업	46	89.1	8.7	2.2	100.0
	대기업	18	77.8	16.7	5.6	100.0
	공공·연구기관	37	73.0	18.9	8.1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86.6	11.2	2.2	100.0
	소재분야	41	95.1	4.9	0.0	100.0
	건설분야	67	82.1	17.9	0.0	100.0
	전기·전자분야	127	81.9	16.5	1.6	100.0
	정보통신분야	105	77.1	20.0	2.9	100.0
	화학분야	43	83.7	16.3	0.0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85.3	14.7	0.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88.2	11.8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75.3	22.2	2.5	100.0
	기타	114	79.8	15.8	4.4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82.8	15.1	2.2
특허담당자		218	82.6	15.1	2.3	100.0
일반사무		169	78.7	20.7	0.6	100.0
연구·개발		138	85.5	12.3	2.2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82.2	15.8	2.0	100.0
	10~50개 미만	64	84.4	15.6	0.0	100.0
	50~100개 미만	25	84.0	16.0	0.0	100.0
	100개 이상	18	77.8	16.7	5.6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87.0	11.9	1.0	100.0
	없다	326	75.5	21.5	3.1	100.0

【표】 Q9x3)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면 한정된 심사 인력의 처리부담으로 심사품질이 하락할 수 있고, 다른 일반심사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심사 청구 중에 우선 심사 신청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10% 늘어나면 일반 심사의 처리기간은 약 1.1개월이 지연됩니다.

		사례수	10% 이하	10~19%	20~29%	30~39%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804	45.3	33.3	15.7	4.6	1.1	100.0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45.1	32.4	16.4	5.0	1.1	100.0
	중견기업	46	47.8	41.3	8.7	2.2	0.0	100.0
	대기업	18	38.9	38.9	22.2	0.0	0.0	100.0
	공공·연구기관	37	48.6	37.8	8.1	2.7	2.7	100.0
[업종]	기계분야	134	41.8	37.3	13.4	5.2	2.2	100.0
	소재분야	41	46.3	34.1	19.5	0.0	0.0	100.0
	건설분야	67	32.8	35.8	17.9	13.4	0.0	100.0
	전기·전자분야	127	40.9	37.8	15.7	4.7	0.8	100.0
	정보통신분야	105	52.4	23.8	18.1	4.8	1.0	100.0
	화학분야	43	44.2	34.9	16.3	2.3	2.3	100.0
	바이오·의료분야	75	50.7	29.3	14.7	1.3	4.0	100.0
	에너지·자원분야	17	41.2	41.2	11.8	5.9	0.0	100.0
	지식서비스분야	81	46.9	29.6	17.3	6.2	0.0	100.0
	기타	114	50.9	34.2	13.2	1.8	0.0	100.0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42.3	30.5	19.0	6.5	1.8	100.0
	특허담당자	218	43.6	38.5	12.8	4.1	0.9	100.0
	일반사무	169	49.7	32.0	14.8	3.6	0.0	100.0
	연구·개발	138	48.6	32.6	14.5	2.9	1.4	100.0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45.5	31.9	16.9	4.6	1.1	100.0
	10~50개 미만	64	43.8	43.8	9.4	1.6	1.6	100.0
	50~100개 미만	25	40.0	48.0	4.0	8.0	0.0	100.0
	100개 이상	18	50.0	33.3	5.6	11.1	0.0	100.0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36.4	36.8	18.4	6.9	1.5	100.0
	없다	326	58.3	28.2	11.7	1.2	0.6	100.0


【표】 Q9x3x1) 심사품질의 하락을 방지하고 우선심사와 일반심사 처리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 비율을 낮춰야만 한다면, 귀하께서 다음 중 수용 가능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 한을 세분화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	우선심사 신청건수를 총량제로 운영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	기타	[합계]
		N	%	%	%	%	%	%
[전체]		804	42.0	37.8	20.3	18.2	2.5	120.8
[기업유형]	중소기업	703	42.5	38.0	20.8	17.8	2.7	121.8
	중견기업	46	39.1	43.5	19.6	13.0	0.0	115.2
	대기업	18	27.8	38.9	16.7	27.8	0.0	111.1
	공공·연구기관	37	43.2	27.0	13.5	27.0	2.7	113.5
[업종]	기계분야	134	40.3	41.0	21.6	17.9	1.5	122.4
	소재분야	41	51.2	36.6	17.1	19.5	0.0	124.4
	건설분야	67	37.3	35.8	13.4	25.4	4.5	116.4
	전기·전자분야	127	44.1	33.9	22.0	15.7	3.1	118.9
	정보통신분야	105	41.0	37.1	20.0	21.9	2.9	122.9
	화학분야	43	44.2	37.2	20.9	14.0	2.3	118.6
	바이오·의료분야	75	38.7	48.0	16.0	13.3	2.7	118.7
	에너지·자원분야	17	35.3	47.1	41.2	0.0	0.0	123.5
	지식서비스분야	81	39.5	39.5	21.0	18.5	1.2	119.8
	기타	114	46.5	31.6	21.1	20.2	3.5	122.8
[응답자현황]	경영진	279	45.5	38.0	21.1	13.3	2.5	120.4
	특허담당자	218	42.7	37.6	14.7	22.0	2.8	119.7
	일반사무	169	34.3	39.1	22.5	21.9	0.6	118.3
	연구·개발	138	43.5	36.2	24.6	17.4	4.3	126.1
[출원 현황]	10개 미만	697	41.9	38.2	20.9	18.1	2.3	121.4
	10~50개 미만	64	45.3	39.1	15.6	17.2	3.1	120.3
	50~100개 미만	25	36.0	32.0	24.0	12.0	4.0	108.0
	100개 이상	18	44.4	27.8	5.6	33.3	5.6	116.7
[우선심사 이용 경험]	있다	478	45.6	37.0	18.8	16.1	3.3	120.9
	없다	326	36.8	39.0	22.4	21.2	1.2	120.6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대안 마련 연구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특허청
 수 행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 쇄 처 예송미디어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740-01
 I S B N 979-11-89854-89-8
 D O I 10.8080/P9791189854898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